

- 2021년도 충청남도 -

# 세출예산안 사업설명서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충청남도  
(재난안전실)



# 목 차

## < 일반 회 계 >

○ 안 전 정 책 과	-----	1
○ 사 회 재 난 과	-----	97
○ 자 연 재 난 과	-----	141
○ 하 천 과	-----	197



# 안 전 정 책 과



## 안전정책과

1.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운영 ..... 6
2. 안전충남비전 업무추진 ..... 8
3. 이통장 재난안전 대응 및 현장조치 매뉴얼 제작 ..... 10
4. 충남 재난안전 전문기관 설립 타당성 용역 ..... 12
5. 재난안전산업 아이디어 공모전 ..... 14
6. 재난안전센터 운영 ..... 16
7. 충청남도 도민안전보험 ..... 18
8. 도민 안전사고 예방 동영상 업데이트 ..... 20
9. 재난안전 선도사업 추진 ..... 22
10. 영유아 교통안전용품 지원 ..... 24
11. 지역안전지수 개선 우수시군 인센티브 ..... 26
12. 안전문화 교육 및 홍보물 제작 ..... 28
13. 안전문화 홍보 및 캠페인 ..... 30

14.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운영 .....	32
15. 어르신 교통안전교육 및 야간 안전용품 보급 ...	34
16. 도민안전문화대학 운영 등 .....	36
17. 안전보안관 활동 지원 등 .....	38
18. 재난안전 골든벨 .....	40
19. 안전취약계층 맞춤형 교육등 지원 .....	42
20. 민방위 교육 운영비 .....	44
21. 민방위대 창설기념행사 경비 .....	46
22. 국민 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 .....	48
23. 민방위의 날 훈련참석자 급식비 .....	50
24. 도 단위 민방위 시범훈련 .....	52
25. 민방위 실기실습용품 구입 .....	54
26. 민방위 사이버교육 지원 .....	56
27.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보급 .....	58
28. 인력동원 훈련보상금 지급 .....	60
29. 을지태극연습 및 통합방위 운영 .....	62

30. 총무시설 상황실 운영 및 유지보수 .....	64
31. 지역통합방위회의 등 행사운영 .....	66
32. 시군 평가관 여비 등 .....	68
33. 통합방위협의회 업무추진 .....	70
34. 을지태극연습 참가자 급식비 .....	72
35. 전술헬기장 노후시설 보강 .....	74
36. 통합방위 C4I시스템 연계 기능 개선 .....	76
37. 지역예비군 육성지원(경상) .....	78
38. 지역예비군 육성지원(자본) .....	80
39. 경보통제소 및 경보시설 운영(사무관리비) ...	82
40. 경보통제소 및 경보시설 운영(공공운영비) ...	84
41. 민방위경보 및 다중이용시설 업무추진(여비) ...	86
42. 민방위경보 사각지역 해소사업 .....	88
43. 노후 민방위 경보시설 교체 .....	90
44. 경보통제소 장비보강 .....	92
45. 안전감찰 특별사법경찰 수사활동비 .....	94

	정책사업	도민안전 및 재난 예방
	단위사업	도민체감 안전정책 구현
	세부사업	재난안전 통합지원 및 관리체계 구축
	통 계 목	사무관리비 (201-01)

##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지역실정에 맞는 재난 및 안전관리계획 수립
- 사업 위치 : 충청남도
- 사업 기간 : 2021. 1. 1. ~ 2021. 12. 31.(다년도 계속사업)
- 예 산 액 : **17,000천원**
- 사 업 량 :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운영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
- 사업 내용 :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책자 제작, 안전관리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및 운영
- 지원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조, 제24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4조(시·도안전관리계획의 수립)

③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수립지침과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을 종합하여 시·도안전관리계획을 작성하고 시·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	비 고
산출 기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무관리비 : 17,000천원</li> <li>○ 안전관리계획 책자 인쇄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0,000원×180부=9,000천원</li> </ul> </li> <li>○ 안전관리위원 참석수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00,000원×20명×1회=2,000천원</li> </ul> </li> <li>○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운영 : 6,000천원</li> </ul>	
총사업비	17,000천원(도비 17,000)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본예산(A)	전년도본예산(B)	증감(A-B)		
계	17,000	-	17,000	18,000	△1,000	-	
국 비	-	-	-	-	-	-	
도 비	17,000	-	17,000	18,000	△1,000	-	
시군비	-	-	-	-	-	-	
기 타	-	-	-	-	-	-	

\* :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A)	집행액(B)	집행잔액(C=A-B)	집행률(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18,000	16,874	1,126	93.7%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1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재난안전실	안전정책과	안전정책팀	최천재 (행) 2170	최명규 (행) 5611	유기철 (행) 5622

	정책사업	도민안전 및 재난예방
	단위사업	도민체감 안전정책 구현
	세부사업	재난안전 통합지원 및 관리체계 구축
	통 계 목	사무관리비 (201-01)

##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안전충남비전 실행력 담보 및 재난안전산업 진흥을 위한 업무추진
- 사업 위치 : 충청남도
- 사업 기간 : 2021.1.1.~2021.12.31.(다년도 계속사업)
- 예 산 액 : **17,000천원**
- 사 업 량 : 『안전충남 2050』 실행과제 1식, 재난안전산업 진흥 1식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
- 사업 내용 : 『안전충남 2050』 실행과제 및 재난안전산업 진흥을 위한 사업 추진
- 지원 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 제73조의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 4(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의 추진)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 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문화 활동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3조의 2(재난안전기술의 사업화 지원 등)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 등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각종 기술(이하 "재난안전기술"이라 한다)의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전충남비전 업무추진 : 17,000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전충남비전 자문위원 수당 : 100,000원 x 20명 x 2회 = 4,000천원</li> <li>○ 재난안전산업육성위원회 참석수당 : 100,000원 x 10명 x 4회 = 4,000천원</li> <li>○ 재난안전산업육성위원회 운영 : 5,000천원</li> <li>○ 안전신분증 제작 : 2,000부 x 500원 = 1,000천원</li> <li>○ 사전안전영향평가 안전점검 자문수당 : 100,000원 x 2명 x 15회 = 3,000천원</li> </ul> </li> </ul>	
총사업비	17,000천원(도비 17,0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예산액(A)	전년도 당초예산액(B)	증감(A-B)		
계	17,000	-	17,000	18,000	△1,000	-	계속
국 비	-	-	-	-	-	-	-
도 비	17,000	-	17,000	18,000	△1,000	-	-
시군비	-	-	-	-	-	-	-
기 타	-	-	-	-	-	-	-

\* :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18,000	15,759	2,241	88%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1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재난안전실	안전정책과	안전산업팀	최천재 (행) 2170	이은석 (행) 5612	이진호 (행) 2173

<b>이통장 재난안전 대응 및 현장조치 매뉴얼 제작</b>	정책사업	도민안전 및 재난사업
	단위사업	도민체감 안전정책 구현
	세부사업	재난안전 통합지원 및 관리체계 구축
	통 계 목	일반운영비 (201-01)

##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도내 이통장들이 마을 재난·사고 발생에 신속 대응할 수 있는 「이통장 재난안전 대응 및 현장조치 매뉴얼」 제작
- 사업 대상 : 도내 15개 시군
- 사업 기간 : 2021. 1. 1. ~ 2021. 12. 31.(신규사업)
- 예 산 액 : 20,000천원
- 사 업 량 : 1식(6,300여부)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
- 사업 내용 : 이통장 재난안전 대응 및 현장조치 매뉴얼 제작
- 지원 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10조의4

<p>&lt;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gt;</p> <p>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p>&lt;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10조의4(소방안전교부세의 교부기준 등)&gt;</p> <p>② 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교부세를 사용할 수 있는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소방분야 :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소방 인력 운용 나. 소방시설(소방장비를 포함한다.) 확충 및 소방안전관리 강화</li> <li>2. 안전분야 : 안전시설 확충 및 안전관리 강화</li> </ol>
--

##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분	산 출 액	비 고
산출 기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통장 재난안전 대응 및 현장조치 매뉴얼 : 20,000천원</li> <li>○ 3,174원 × 6,300부 = 20,000천원</li> <li>- 재난·사고 발생시 단계별 대응요령</li> <li>- 재난유형별(풍수해 등 자연재난 / 화재, 코로나 등 사회재난) 역할 및 방송안내문</li> <li>- 마을 내 협업체계·대피시설수록, 신규 재난안전 컨텐츠 추가 등(소방안전교부세 활용)</li> </ul>	
총사업비	20,000천원(소방안전교부세 20,000)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본예산(A)	전년도본예산(B)	증감(A-B)		
계	20,000	-	20,000	-	20,000	-	신규
국 비	20,000	-	20,000	-	20,000	-	소방안전교부세
도 비	-	-	-	-	-	-	
시군비	-	-	-	-	-	-	
기 타	-	-	-	-	-	-	

\* : ( )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A)	집행액(B)	집행잔액(C=A-B)	집행률(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	-	-	-	-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학술용역비사전심사	물품정수취득	홍보물사전심의	공공기관출연금의회의결	신규 행사성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1년(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재난안전실	안전정책과	안전정책팀	최천재(행) 2170	최명규(행) 5611	유기철(행) 5622

	정책사업	도민안전 및 재난예방
	단위사업	도민체감 안전정책 구현
	세부사업	재난안전 통합지원 및 관리체계 구축
	통 계 목	연구용역비 (207-01)

##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중앙부처의 재난안전 R&D 투자정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충남의 재난안전 정책 개발 및 산업육성 방향을 제시하고 체계적으로 담당할 전담조직 설립 검토 필요
- 사업 위치 : 충청남도
- 사업 기간 : 2021년 2월~8월(계속사업)
- 예 산 액 : 70,000천원
- 사 업 량 : 용역 1식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
- 사업 내용 : 충청남도 재난안전 전문기관 설립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
- 지원 근거
  -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타당성 검토 및 검토 결과 공개)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출자·출연 기관의 설립·운영의 타당성 검토와 설립 전 협의 등)

- ① 지방자치단체는 출자·출연 기관(제2항제2호에 따라 협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출자·출연 기관을 포함한다)을 설립하려는 경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금액 이상을 추가로 출자하거나 전년보다 증액하여 출연하려는 경우에는 출자·출연 기관의 설립·운영의 타당성 등에 대하여 검토한 후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는 출자·출연 기관을 설립하려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의 설립 타당성 등에 대한 검토를 전문 인력 및 조사·연구 능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충남 재난안전 전문기관 설립 타당성 용역 : 70,000천원</li> <li>○ 인건비 : 연구원 및 보조원 4명 = 48,387천원</li> <li>○ 경 비 : 7,784천원</li> <li>○ 일반관리비 + 이윤 + 부가가치세: 13,829천원</li> </ul>	
총사업비	70,000천원(도비 70,0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예산액(A)	전년도 당초예산액(B)	증감(A-B)		
계	70,000	-	70,000	50,000	20,000	-	계속
국 비	-	-	-	-	-	-	
도 비	70,000	-	70,000	50,000	20,000	-	
시군비	-	-	-	-	-	-	
기 타	-	-	-	-	-	-	

\* :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	-	-	-%	-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심사중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1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재난안전실	안전정책과	안전산업팀	최천재 (행) 2170	이은석 (행) 5612	임장욱 (행) 5624

	정책사업	도민안전 및 재난사업
	단위사업	도민체감 안전정책 구현
	세부사업	재난안전 통합지원 및 관리체계 구축
	통 계 목	기타보상금 (301-12)

##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재난안전산업 창의적 아이디어 활용한 안전관리 개선·강화 및 도민 관심 제고
- 사업 위치 : 도내 15개 시군
- 사업 기간 : 2021.4월 ~ 2021.7월(신규사업)
- 예 산 액 : **20,000천원**
- 사 업 량 : 아이디어 공모전 1식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
- 사업 내용 : 도민(기업·단체 포함) 대상 안전분야 전반의 정책 및 사업화 분야 아이디어 공모
- 지원 근거 : 충청남도 재난안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충청남도 재난안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재난안전산업 활성화 사업)

도지사는 재난안전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재난안전산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제품 및 서비스 기술 개발
4. 관련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재난안전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	비 고
산출 기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난안전산업 아이디어 공모전</li> <li>○ 수상자 포상금 : 20,000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책아이디어: 대상 3,000(1명), 최우수상 2,000(1명), 우수상 1,000(2명), 장려상 500(4명)</li> <li>· 사업화 아이디어 : 대상 5,000(1명), 최우수상 3,000(1명), 우수상 2,000(1명), 장려상 1,000(1명)</li> </ul> </li> </ul>	
총사업비	20,000천원(도비 20,0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본예산(A)	전년도본예산(B)	증감(A-B)		
계	20,000	-	20,000	-	20,000	-	신규
국 비	-	-	-	-	-	-	-
도 비	20,000	-	20,000	-	20,000	-	-
시군비	-	-	-	-	-	-	-
기 타	-	-	-	-	-	-	-

\* :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A)	집행액(B)	집행잔액(C=A-B)	집행률(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	-	-	-%	-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학술용역비사전심사	물품정수취득	홍보물사전심의	공공기관출연금의회의결	신규 행사성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1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재난안전실	안전정책과	안전산업팀	최천재 (행) 2170	이은석 (행) 5612	임장욱 (행) 5624

	정책사업	도민안전 및 재난사업
	단위사업	도민체감 안전정책 구현
	세부사업	재난안전 통합지원 및 관리체계 구축
	통 계 목	민간위탁금 (307-05)

##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각종 재난과 사고로부터 안전한 충남 실현을 위한 체계적 연구활동 수행
- 사업 위치 : 충남연구원(민간위탁)
- 사업 기간 : 2021. 1. 1. ~ 2021. 12. 31.
- 예 산 액 : 300,000천원
- 사 업 량 : 전문연구인력(3명)운용 및 센터 운영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재난안전연구센터
- 사업 내용 : 도 각종 재난·안전사고 조사·분석, 지역안전지수 컨설팅, 안전충남2050 사업 추진
- 지원 근거 : 충청남도재난안전연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충청남도재난안전연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재정지원)

도지사는 연구센터의 설치·운영과사업수행등에 필요한 재정을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원해야 한다.

- 충청남도 재난안전연구센터 운영 위수탁 협약 체결(12월) / 2021.1.1.~2021.12.31.

##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	비 고
산출 기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충청남도재난안전연구센터 운영 : 300,000천원</li> <li>○ 연구원(석·박사급)인건비 : 196,000천원</li> <li>○ 충청남도 재난안전 연구 : 65,000천원</li> <li>○ 재난안전 기반강화 : 12,400천원</li> <li>○ 경상경비(운영비) 등 : 26,600천원</li> </ul>	
총사업비	300,000천원(도비 300,00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본예산(A)	전년도본예산(B)	증감(A-B)		
계	1,800,000	1,500,000	300,000	300,000	-	-	
국 비	-	-	-	-	-	-	
도 비	1,800,000	1,500,000	300,000	300,000	-	-	
시군비	-	-	-	-	-	-	
기 타	-	-	-	-	-	-	

\* :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A)	집행액(B)	집행잔액(C=A-B)	집행률(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300,000	300,000	-	100%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학술용역비사전심사	물품정수취득	홍보물사전심의	공공기관출연금의회결	신규 행사성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1년(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재난안전실	안전정책과	안전산업팀	최천재(행) 2170	이은석(행) 5612	임장욱(행) 5624

<b>충청남도 도민안전보험</b>	정책사업	도민안전 및 재난사업
	단위사업	도민체감 안전정책 구현
	세부사업	재난안전 통합지원 및 관리체계 구축
	통 계 목	자치단체경상보조 (308-01)

##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재난 및 각종 사고에 따른 도민 불안감 가중, 모든 도민에게 특성에 맞는 보험 혜택 제공
- 사업 대상 : 도내 15개 시군
- 사업 기간 : 2021. 1. 1. ~ 2021. 12. 31.(다년도 계속사업)
- 예 산 액 : **810,511천원**
- 사 업 량 : 충남에 주민등록을 한 모든 도민(등록 외국인 포함)
-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
- 사업 내용 : 모든 도민에게 특성에 맞는 안전보험 가입
- 지원 근거 : 도지사 공약사항 이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
  - 민선 7기 도지사 공약사항 이행(중점과제 1-2-1) / 재난안전 통합관리체계 구축을 통한 안전복지 실현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충청남도 도민안전보험 가입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2018. 12.)

##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분	산출액	비고
산출 기초	■ 충청남도 도민안전보험 : 1,621,022천원 ○ 800원 × 2,026,277명 ≒ 1,621,022천원 - 6개 항목(재난, 대중교통, 스쿨존, 자연재해, 강도) 평균 가입금액 500원 + 추가담보금액 (추가담보 : 농기계 사고, 뺑소나무형차, 익사, 미아 찾기 지원금 등(한국지방재정공제회 기준)) ※ 당진시 도민안전보험 가입 지원조례 폐지에 따른 지원 불가(인구 : 17만명)	
총사업비	1,621,022천원(도비 810,511, 시군비 810,511)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본예산(A)	전년도본예산(B)	증감(A-B)		
계	1,621,022	-	1,621,022	1,760,000	△138,978	-	다년도 계속사업
국 비	-	-	-	-	-	-	
도 비	810,511	-	810,511	880,000	△69,489	-	
시군비	810,511	-	810,511	880,000	△69,489	-	
기 타	-	-	-	-	-	-	

\* : 50%, 5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A)	집행액(B)	집행잔액(C=A-B)	집행률(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	-	-	-	-%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1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재난안전실	안전정책과	안전정책팀	최천재 (행) 2170	최명규 (행)5611	유기설 (행)5622

	정책사업	도민안전 및 재난예방
	단위사업	도민체감 안전정책 구현
	세부사업	재난안전 통합지원 및 관리체계 구축
	통 계 목	공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308-10)

##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도민 안전사고 예방 동영상에 시기에 맞는 통계수치 및 외국어 자막 지원 등으로 누구나 안전한 충남 조성
- 사업 위치 : 충청남도
- 사업 기간 : 2021. 1. 1.~2021. 12. 31.(단년도 사업)
- 예 산 액 : **3,000천원**
- 사 업 량 : 동영상 내용 수정 및 다국어 언어 자막 추가
- 사업시행방법 : 공기관 위탁
- 사업시행주체 : 충남 재난안전연구센터
- 사업 내용 : 도민 안전사고 예방 동영상 내용 업데이트 및 다국어 자막 지원
- 지원근거 : 국민안전교육진흥기본법 제9조, 충청남도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조례 제45조

국민 안전교육진흥 기본법 제9조(안전교육에 관한 시책의 추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안전교육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안전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2. 안전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3. 학교 및 그 밖의 교육기관의 안전교육에 대한 지원
4. 그 밖에 안전교육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충청남도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조례 제45조(안전문화활동의 육성·지원)

- ① 도지사는 도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도지사는 도민이 지역사회의 안전문화활동에 참여하고 안전문화를 증진할 수 있도록 안전문화 관련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 ③ 도지사는 도민이 재난 발생 시 구조·구호활동에 참여하고 일상생활에서 안전문화를 실천할 수 있도록 재난 및 안전과 관련된 민간단체의 활동을 육성·지원할 수 있다.

##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민 안전사고 예방교육 동영상 업데이트 : 3,000천원</li> <li>○ 도민 안전사고 예방교육 동영상 내용 수정 및 업데이트 : 3,000천원</li> <li>· 3,000,000원 × 1식 = 3,000천원</li> </ul>	
총사업비	3,000천원(도비)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예산액(A)	전년도 당초예산액(B)	증감(A-B)		
계	3,000	-	3,000	20,000	17,000	-	계속
국 비	-	-	-	-	-	-	-
도 비	3,000	-	3,000	20,000	△17,000	-	-
시군비	-	-	-	-	-	-	-
기 타	-	-	-	-	-	-	-

\* :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	-	-	-	-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재난안전실	안전정책과	안전문화팀	최천재 (행) 2170	김경희 (행) 5616	이주미 (행) 2172

	정책사업	도민안전 및 재난사업
	단위사업	도민체감 안전정책 구현
	세부사업	재난안전 통합지원 및 관리체계 구축
	통 계 목	자치단체자본보조 (403-01)

## □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 재난안전 사업 추진방법을 Top-Down방식에서 현장의 소리를 반영한 Bottom-Up 방식으로 전환하여 도민체감이 높은 사업 선도적 추진
- 사업 위치 : 15개 시군
- 사업 기간 : 21.2월~12월.(단년도 사업)
- 예 산 액 : **1,000,000천원**
- 사 업 량 : 시군 공모에 따른 사업 선정
-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
- 사업 내용 : 안전무시 관행 개선 및 지역안전지수 향상사업 등
- 지 원 근 거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5조의 2(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예방조치)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5조의 2(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예방조치 등)

-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소관 관리대상 업무의 분야에서 재난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안전교육 및 안전훈련(응급상황시의 대처요령을 포함한다)
  2.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 및 홍보
- 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재난예방조치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명 : 2,000,000천원(도비 1,000,000, 시군비 1,000,000)</li> <li>○ 사업성과 및 예방효과 등 효과성이 높고, 지역 여건 고려 주민체감도 등 필요성과 시급성이 높은 사업 최우선 선정</li> <li>○ 우리도 지역안전지수 개선방안과 연계, 안전분야 대상(30) 中 지역안전지수 향상 대책사업 우선 지원 ※교통사고, 자연재해, 안전사고, 감염병, 화재, 자살, 범죄 등 7개 분야</li> <li>○ 전체 인구 중 사고 사망자수 매년 감소, 반면 65세 이상 노인계층 사고 지원 중점 ※ 통계청사망원인통계 : '13년 1,732명(65세이상 783명) → '17년 1,625명(65세이상 832명)</li> <li>○ 소방안전교부세 대상(30개)과 관련된 사업 등</li> </ul>	시군 공모
총사업비	2,000,000천원(도비 1,000,000, 시군비 1,000,000)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예산액(A)	전년도 당초예산액(B)	증감(A-B)		
계	2,000,000	-	2,000,000	2,000,000	-	-	-
국 비	1,000,000	-	1,000,000	1,000,000	-	-	소방 안전교부세
도 비	-	-	-	-	-	-	-
시군비	1,000,000	-	1,000,000	1,000,000	-	-	-

\* : 50%, 5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	-	-	-	-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재난안전실 (안전정책과)	안전정책과	안전정책팀	최천재 (행) 2170	최명규 (행) 5611	송현준 (행) 2171

	정책사업	도민안전 및 재난예방
	단위사업	도민체감 안전정책 구현
	세부사업	재난안전 통합지원 및 관리체계 구축
	통 계 목	자치단체자본보조 (403-01)

##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교통사고시 어린이의 부상을 최소화하기 위한 카시트 장착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어린이 안전 확보 및 지역 육아 환경 개선
- 사업 위치 : 충청남도
- 사업 기간 : 2021.1.1.~2021.12.31.(신규사업)
- 예 산 액 : **815,000천원**
- 사 업 량 : 2021년 **전** 출생아(13,000명) 중 8,150명 지급 ※ '16~'18년도 출생아 기준 추계  
- 나머지 4,850명은 2021년 추가경정예산에 확보 조치 예정
-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
- 사업 내용 : 2021년 **전** 출생아 대상 교통안전용품(카시트) 보급
- 지원 근거 : 충청남도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조례 제45조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5조의 2(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예방조치 등)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소관 관리대상 업무의 분야에서 재난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안전교육 및 안전훈련(응급상황시의 대처요령을 포함한다)
2.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 및 홍보

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재난예방조치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유아 교통안전용품 지원 : 1,630,000천원(도비 815,000, 시군비 815,000)</li> <li>○ 2021년 출생아 카시트 보급 ·200,000원 × 8,150명* = 1,630,000천원</li> <li>※ 최근 3년 출생아 수 : 17년(15,670명)-18년(14,380명)-19년(13,257명)</li> </ul>	
총사업비	1,630,000천원(도비 815,000, 시군비 815,000)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예산액(A)	전년도 당초예산액(B)	증감(A-B)		
계	1,630,000	-	1,630,000	1,330,000	300,000	-	계속
국 비	-	-	-	-	-	-	
도 비	815,000	-	815,000	665,000	150,000	-	
시군비	815,000	-	815,000	665,000	150,000	-	
기 타	-	-	-	-	-	-	

\* : 50%, 5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	-	-	-	-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	-	-	-	-	-	-	-
2021년 (2021~2025)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재난안전실	안전정책과	안전관리팀	최천재 (행) 2170	최명규 (행) 5616	송현준 (행) 2171

<b>지역안전지수 개선 우수시군 인센티브</b>	정책사업	도민안전 및 재난사업
	단위사업	도민체감 안전정책 구현
	세부사업	재난안전 통합지원 및 관리체계 구축
	통 계 목	자치단체자본보조 (403-01)

##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지역안전지수 향상을 위해 분야별 우수 시군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 사업 대상 : 도내 15개 시군
- 사업 기간 : 2021. 1. 1. ~ 2021. 12. 31.(신규사업)
- 예 산 액 : 300,000천원
- 사 업 량 : 지역안전지수 6개 분야 우수 시군(분야별 50,000천원)
-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
- 사업 내용 : 지역안전지수 6개 분야 우수시군 인센티브 제공
- 지원 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10조의4

<p>&lt;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gt;</p> <p>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p>&lt;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10조의4(소방안전교부세의 교부기준 등)&gt;</p> <p>② 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교부세를 사용할 수 있는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소방분야 :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소방 인력 운용 나. 소방시설(소방장비를 포함한다.) 확충 및 소방안전관리 강화</p> <p>2. 안전분야 : 안전시설 확충 및 안전관리 강화</p>
---

##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	비 고
산출 기초	<p>■ 지역안전지수 6개 분야 우수시군 인센티브 제공 : 300,000천원</p> <p>○ 50,000천원 × 6개 분야 = 300,000천원</p> <p>- 6개 분야(교통, 자살, 화재, 생활안전, 감염병, 범죄) 우수시군 지원 : 분야당 50,000천원</p> <p>- 안전시설 확충,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사업지원(소방안전교부세 활용)</p> <p>※ 2020년 행안부 지역안전지수 공표 결과(12월)에 따라 2021년 지원대상 시군 선정</p>	
총사업비	300,000천원(소방안전교부세 300,000)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본예산(A)	전년도본예산(B)	증감(A-B)		
계	300,000	-	300,000	-	300,000	-	신규
국 비	300,000	-	300,000	-	300,000	-	소방안전교부세
도 비	-	-	-	-	-	-	
시군비	-	-	-	-	-	-	
기 타	-	-	-	-	-	-	

\* : ( ) 100%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A)	집행액(B)	집행잔액(C=A-B)	집행률(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	-	-	-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1년 (2021~2025)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재난안전실	안전정책과	안전정책팀	최천재 (행) 2170	최명규 (행) 5611	유기설 (행) 5622

	정책사업	도민안저 및 재난예방
	단위사업	도민체감 안전정책 구현
	세부사업	도민안전문화의식 고취
	통 계 목	사무관리비 (201-01)

##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도민의 안전문화 의식 제고 및 안전문화 생활화를 위한 교육자료 및 홍보물 제작
- 사업 위치 : 전 시·군
- 사업 기간 : 2021. 1. 1. ~ 2021. 12. 31.(단년도 사업)
- 예 산 액 : **17,000천원**
- 사 업 량 : 안전문화 교육자료 및 홍보물 제작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
- 사업 내용 : 안전문화 홍보용 사진전시회 개최, 안전문화 의식 제고를 위한 리플릿 및 홍보물 제작
- 지원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제

제66조의4(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의 추진)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안전문화활동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1. 안전교육 및 안전훈련(응급상황시의 대처요령을 포함한다)
2.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 및 홍보
3. 안전행동요령 및 기준·절차 등에 관한 지침의 개발·보급
4. 안전문화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
5. 안전 관련 통계 현황의 관리·활용 및 공개
6. 안전에 관한 각종 조사 및 분석
7. 그 밖에 안전문화를 진흥하기 위한 활동

##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	비 고
산출 기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전문화 교육자료 및 홍보물 제작 17,000천원</li> <li>○ 안전문화 홍보용 사진 전시회 개최 : 10,000,000원 × 1식 = 10,000,000원</li> <li>○ 안전문화 교육 리플릿 및 포스터 등 제작 : 1,000원 × 3,500부 = 3,500,000원</li> <li>○ 안전문화 의식 고취를 위한 홍보물 제작 : 3,500원 × 1,000개 = 3,500,000원</li> </ul>	
총사업비	17,000천원(도비)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본예산(A)	전년도본예산(B)	증감(A-B)		
계	17,000	-	17,000	27,000	△10,000	-	계속
국 비	-	-	-	-	-	-	-
도 비	17,000	-	17,000	27,000	△10,000	-	-
시군비	-	-	-	-	-	-	-
기 타	-	-	-	-	-	-	-

\* : 100%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A)	집행액(B)	집행잔액(C=A-B)	집행률(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1년 (2021~2025)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재난안전실	안전정책과	안전문화팀	최천재 (행) 5611	김경희 (행) 5616	이주미 (행) 2172

	정책사업	도민안저 및 재난예방
	단위사업	도민체감 안전정책 구현
	세부사업	도민안전문화의식 고취
	통 계 목	사무관리비 (201-01)

##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도민의 안전문화 의식 제고 및 안전문화 생활화를 위한 언론 홍보
- 사업 위치 : 전 시·군
- 사업 기간 : 2021. 1. 1. ~ 2021. 12. 31.(단년도 사업)
- 예 산 액 : **50,000천원**
- 사 업 량 : 언론사 기획홍보(10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
- 사업 내용 : 시기별·계절별 안전사고 관련 주제 선별을 통해 언론 홍보
- 지원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

제66조의4(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의 추진)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안전문화활동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1. 안전교육 및 안전훈련(응급상황시의 대처요령을 포함한다)

**2.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 및 홍보**

3. 안전행동요령 및 기준·절차 등에 관한 지침의 개발·보급

##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	비 고
산출 기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언론사 협력 사업비 50,000천원</li> <li>○ 안전문화 생활화 언론 홍보 캠페인 50,000천원 → 5,000,000원 × 10회 = 50,000,000원</li> </ul>	
총사업비	50,000천원(도비)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본예산(A)	전년도본예산(B)	증감(A-B)		
계	50,000	-	50,000	50,000	-	-	계속
국 비	-	-	-	-	-	-	-
도 비	50,000	-	50,000	50,000	-	-	-
시군비	-	-	-	-	-	-	-
기 타	-	-	-	-	-	-	-

\* :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A)	집행액(B)	집행잔액(C=A-B)	집행률(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	-	-	-	-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학술용역비사전심사	물품정수취득	홍보물사전심의	공공기관출연금의회의결	신규 행사성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1년(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재난안전실	안전정책과	안전문화팀	최천재(행) 5611	김경희(행) 5616	이주미(행) 2172

	정책사업	도민안저 및 재난예방
	단위사업	도민체감 안전정책 구현
	세부사업	도민안전문화의식 고취
	통 계 목	사무관리비 (201-01)

##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확산으로 안전의식 고취
- 사업 위치 : 전 시·군
- 사업 기간 : 2021. 1. 1. ~ 2021. 12. 31.(단년도 사업)
- 예 산 액 : **8,500천원**
- 사 업 량 : 안전문화운동 협의회 운영(2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
- 사업 내용 :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 정기총회 및 분과위원회 참석수당과 운영경비
- 지원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3조의5

제73조의5(안전문화활동에 대한 총괄·조정)

① 행정안전부 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6조의4제1항제2호·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안전문화활동과 그 밖에 안전문화의 진흥에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안전문화 관련 기관 및 단체로 구성된 중앙협의체 또는 지역협의체를 각각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중앙협의체 또는 지역협의체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각각 정한다. [개정 2014.11.19 제2575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	비 고
산출 기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운영(2회) 8,500천원</li> <li>○ 회의 참석수당 5,400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50,000원 × 18명 × 2회 = 5,400,000원</li> </ul> </li> <li>○ 기타 운영비(회의자료 인쇄 및 물품구입 등) : 3,100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100,000원 × 1식 = 3,100,000원</li> </ul> </li> </ul>	
총사업비	8,500천원(도비)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본예산(A)	전년도본예산(B)	증감(A-B)		
계	8,500	-	8,500	9,000	△500	-	계속
국 비	-	-	-	-	-	-	
도 비	8,500	-	8,500	9,000	△500	-	
시군비	-	-	-	-	-	-	
기 타	-	-	-	-	-	-	

\* : 100%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A)	집행액(B)	집행잔액(C=A-B)	집행률(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	-	-	-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1년 (2021~2025)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재난안전실	안전정책과	안전문화팀	최천재 (행) 5611	김경희 (행) 5616	권준애 (행) 5630

	정책사업	도민안전 및 재난예방
	단위사업	도민체감 안전정책 구현
	세부사업	도민안전문화의식 고취
	통 계 목	사무관리비 (201-01)

##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어르신 교통안전에 대한 중점교육과 보행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야간 안전용품 제공으로 안전한 보행 문화 조성
- 사업 위치 : 충청남도
- 사업 기간 : 2021.1.1.~2021.12.31.(신규사업)
- 예 산 액 : **34,000천원**
- 사 업 량 : 3,400명(교통안전교육 참여 어르신)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
- 사업 내용 : 어르신 교통안전교육 및 야간 안전용품 보급
- 지원근거 : 국민안전교육진흥기본법 제9조, 충청남도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조례 제45조

국민 안전교육진흥 기본법 제9조(안전교육에 관한 시책의 추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안전교육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안전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2. 안전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3. 학교 및 그 밖의 교육기관의 안전교육에 대한 지원
4. 그 밖에 안전교육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충청남도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조례 제45조(안전문화활동의 육성·지원)

- ① 도지사는 도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도지사는 도민이 지역사회의 안전문화활동에 참여하고 안전문화를 증진할 수 있도록 안전문화 관련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 ③ 도지사는 도민이 재난 발생 시 구조·구호활동에 참여하고 일상생활에서 안전문화를 실천할 수 있도록 재난 및 안전과 관련된 민간단체의 활동을 육성·지원할 수 있다.

##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르신 교통안전교육 및 야간 안전용품 보급 : 34,000천원</li> <li>○ 안전용품 보급 : 10,000원 × 3,400명 = 34,000,000원</li> </ul>	
총사업비	34,000천원(도비)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예산액(A)	전년도 당초예산액(B)	증감(A-B)		
계	34,000	-	34,000	-	34,000	-	신규
국 비	-	-	-	-	-	-	-
도 비	34,000	-	34,000	-	34,000	-	
시군비	-	-	-	-	-	-	-
기 타	-	-	-	-	-	-	-

\* :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	-	-	-	-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1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재난안전실	안전정책과	안전문화팀	최천재 (행) 2170	김경희 (행) 5616	이주미 (행) 2172

	정책사업	도민안전 및 재난예방
	단위사업	도민체감 안전정책 구현
	세부사업	도민안전문화의식 고취
	통 계 목	행사운영비 (201-03)

##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도민 스스로 생존능력 배양 제고 및 안전의식 체질화
- 사업 위치 : 전 시·군
- 사업 기간 : 2021. 1. 1. ~ 2021. 12. 31.(단년도 사업)
- 예 산 액 : **250,000천원**
- 사 업 량 : 3,000명(체험교육 인원)
- 사업시행방법 : 위탁운영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
- 사업 내용 : 지진대피, 버스비상탈출, 건물탈출체험(완강기 이용법) 등 응급상황시 대처요령 교육
- 지원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

제66조의4(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의 추진)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안전문화활동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1. 안전교육 및 안전훈련(응급상황시의 대처요령을 포함한다)
2.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 및 홍보
3. 안전행동요령 및 기준·절차 등에 관한 지침의 개발·보급
4. 안전문화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
5. 안전 관련 통계 현황의 관리·활용 및 공개
6. 안전에 관한 각종 조사 및 분석
7. 그 밖에 안전문화를 진흥하기 위한 활동

##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	비 고
산출 기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민안전문화대학 운영 250,000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전교육 체험료 50,000원 × 3,000명 = 150,000천원</li> <li>○ 안전교육 강사료 17,500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문강사 150천원×2명×25회=7,500천원, 보조강사 80천원×5명×25회=10,000천원</li> </ul> </li> <li>○ 여행자 보험료 2,000원 × 3,000명 = 6,000천원</li> <li>○ 교육생 중식비 8,000원 × 3,000명 = 24,000천원</li> <li>○ 버스 임차료 500,000원 × 65회 = 32,500천원</li> <li>○ 기타운영경비 20,000천원</li> </ul> </li> </ul>	
총사업비	250,000천원(도비)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본예산(A)	전년도본예산(B)	증감(A-B)		
계	250,000	-	250,000	200,000	50,000	-	계속
국 비	-	-	-	-	-	-	
도 비	250,000	-	250,000	200,000	50,000	-	
시군비	-	-	-	-	-	-	-
기 타	-	-	-	-	-	-	-

\* :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A)	집행액(B)	집행잔액(C=A-B)	집행률(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	-	-	-	-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1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재난안전실	안전정책과	안전문화팀	최천재 (행) 2170	김경희 (행) 5616	권준애 (행) 5630

	정책사업	도민안전 및 재난예방
	단위사업	도민체감 안전정책 구현
	세부사업	도민안전문화의식 고취
	통 계 목	행사실비보상금 (301-09)

##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도민의 안전문화 의식 제고 및 안전문화 진흥
- 사업 위치 : 충청남도
- 사업 기간 : 2021. 1. 1. ~ 2021. 12. 31.(신규사업)
- 예 산 액 : **1,800천원**
- 사 업 량 : 안전보안관 신규 및 보수교육 추진 1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
- 사업 내용 : 지역 안전 위험요소 신고 활동을 위한 안전보안관을 양성 및 교육 참석자 실비 보상
- 지원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

제66조의4(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의 추진)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안전문화활동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1. 안전교육 및 안전훈련(응급상황시의 대처요령을 포함한다)
2.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 및 홍보
3. 안전행동요령 및 기준·절차 등에 관한 지침의 개발·보급
4. 안전문화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
5. 안전 관련 통계 현황의 관리·활용 및 공개
6. 안전에 관한 각종 조사 및 분석
7. 그 밖에 안전문화를 진흥하기 위한 활동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안전문화활동의 추진에 관한 총괄·조정 업무를 관장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안전문화를 실천하고 체험할 수 있는 안전체험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④ 국가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기관·단체에서 추진하는 안전문화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	비 고
산출 기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전보안관 활동 지원 등 1,800천원</li> <li>○ 안전보안관 교육 : 18,000원 × 100명 = 1,800,000원</li> </ul>	
총사업비	1,800천원(도비)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본예산(A)	전년도본예산(B)	증감(A-B)		
계	1,800	-	1,800	-	1,800	-	계속
국 비	-	-	-	-	-	-	
도 비	1,800	-	1,800	-	1,800	-	
시군비	-	-	-	-	-	-	-
기 타	-	-	-	-	-	-	-

\* :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A)	집행액(B)	집행잔액(C=A-B)	집행률(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	-	-	-	-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학술용역비사전심사	물품정수취득	홍보물사전심의	공공기관출연금의회의결	신규 행사성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반영
2021년(2021~2025)	-	-	-	-	-	-	2020.10.13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재난안전실	안전정책과	안전문화팀	최천재(행) 5611	김경희(행) 5616	이주미(행) 2172

	정책사업	도민안저 및 재난예방
	단위사업	도민체감 안전정책 구현
	세부사업	도민안전문화의식 고취
	통 계 목	민간행사사업보조 (307-04)

##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학교 및 생활안전의 행동요령에 관한 퀴즈대회를 통해 학생들의 안전의식 고취
- 사업 위치 : 전 시·군
- 사업 기간 : 2021. 1. 1. ~ 2021. 12. 31.(단년도 사업)
- 예 산 액 : **26,000천원**
- 사 업 량 : 재난안전 골든벨 개최(1회)
- 사업시행방법 : 위탁운영
- 사업시행주체 : 민간단체
- 사업 내용 : 재난 및 안전 관련에 대한 문제풀이
- 지원근거 : 국민 안전교육 진흥기본법 제9조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9조(안전교육에 관한 시책의 추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안전교육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안전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2. 안전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3. 학교 및 그 밖의 교육기관의 안전교육에 대한 지원

##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	비 고
산출 기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난안전 골든벨 개최 26,000천원</li> <li>○ 인건비(사회자 및 진행요원) : 3,250천원</li> <li>○ 문제출제 및 검증 : 1,000천원</li> <li>○ 참가자 실비보상(중식 및 교통비) 30천원 × 200명 = 6,000천원</li> <li>○ 기타운영경비 15,750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행사물품 구입비 40천원 × 200명 = 8,000,000원</li> <li>- 참가자 기념품 10천원 × 200명 = 2,000,000원</li> <li>- 임차료(노트북, 방송장비, 현수막, 배너 등) : 3,110천원 × 1식 = 3,110,000원</li> <li>- 시상비 : 1,540천원(1위 500천원, 2위 300천원, 3위 200천원, 본선진출 540천원/20천원×27명)</li> <li>- 공연비 500천원 × 1회 = 500,000원</li> <li>- 다과비 3천원 × 200명 = 600,000원</li> </ul> </li> </ul>	
총사업비	26,000천원(도비)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본예산(A)	전년도본예산(B)	증감(A-B)		
계	26,000	-	26,000	26,000	-	-	계속
국 비	-	-	-	-	-	-	
도 비	26,000	-	26,000	26,000	-	-	
시군비	-	-	-	-	-	-	-
기 타	-	-	-	-	-	-	-

\* :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A)	집행액(B)	집행잔액(C=A-B)	집행률(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	-	-	-	-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학술용역비사전심사	물품정수취득	홍보물사전심의	공공기관출연금의회의결	신규 행사성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1년(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재난안전실	안전정책과	안전문화팀	최천재(행) 5611	김경희(행) 5616	권준애(행) 5630

	정책사업	도민안저 및 재난예방
	단위사업	도민체감 안전정책 구현
	세부사업	도민안전문화의식 고취
	통 계 목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08-01)

##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찾아가는 안전교육 등 지원
- 사업 위치 : 전 시·군
- 사업 기간 : 2021. 1. 1. ~ 2021. 12. 31.(단년도 사업)
- 예 산 액 : **60,000천원**
- 사 업 량 :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300회) 및 안전문화운동 캠페인( 등)
- 사업시행방법 : 시·군 시행
- 사업시행주체 : 시장·군수
- 사업 내용 : 찾아가는 안전취약계층 맞춤형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운동 전개 등
  -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운동 캠페인 등을 위한 교육자료, 홍보물 및 홍보용품 제작
- 지원근거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66조의 4

<p>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66조의4(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의 추진)</p> <p>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안전문화활동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p> <p>1. 안전교육 및 안전훈련(응급상황시의 대처요령을 포함한다)</p> <p>6의2. 안전취약계층의 안전관리 강화</p> <p>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3조의6(안전점검의 날 등)</p> <p>① 법 제66조의7에 따른 안전점검의 날은 매월 4일로 하고, 방재의 날은 매년 5월 25일로 한다.</p> <p>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은 안전점검의 날에는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일제점검, 안전의식 고취 등 안전 관련 행사를 실시하고, 방재의 날에는 자연재난에 대한 주민의 방재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재난에 대한 교육·홍보 등의 관련 행사를 실시한다.</p> <p>③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점검의 날 및 방재의 날 행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각각 정한다.</p>
---

##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	비 고
산출 기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전취약계층 맞춤형 교육 등 200,000천원</li> <li>○ 찾아가는 안전취약계층 안전교육 60,000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강사료 : 200천원 × 20회 × 15개 시군 = 60,000,000원</li> </ul> </li> <li>○ 안전문화운동 캠페인 지원 등 140,000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전문화운동 캠페인 홍보물 및 홍보용품 제작 9,334천원 × 15개 시군 = 140,010,000원</li> </ul> </li> </ul>	
총사업비	200,000천원(도비 60,000천원, 시군비 140,0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본예산(A)	전년도본예산(B)	증감(A-B)		
계	200,000	-	200,000	200,000	-	-	계속
국 비	-	-	-	-	-	-	
도 비	60,000	-	60,000	60,000	-	-	
시군비	140,000	-	140,000	140,000	-	-	
기 타	-	-	-	-	-	-	-

\* : 30%, 7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A)	집행액(B)	집행잔액(C=A-B)	집행률(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	-	-	-	-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학술용역비사전심사	물품정수취득	홍보물사전심의	공공기관출연금의회의결	신규 행사성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1년(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재난안전실	안전정책과	안전문화팀	최천재(행) 5611	김경희(행) 5616	이주미(행) 2172

<b>민방위 교육 운영비</b>	정책사업	민방위 및 비상대비 운영
	단위사업	민방위 운영 및 기반 확충
	세부사업	민방위 교육 운영비
	통 계 목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08-01)

##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민방위대원 대상 교육을 통한 민방위대 역량 제고 및 대응 능력 함양
- 사업 위치 : 15개 시·군
- 사업 기간 : 2021. 1. 1. ~ 2021. 12. 31.(다년도 계속사업)
- 예 산 액 : **72,071천원**
- 사 업 량 : 민방위 교육 6개 사업
-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시장·군수
- 사업 내용 : 기술지원대 전문교육 및 민방위 리더 양성을 위한 교육비 등 지원
- 지원 근거 : 민방위기본법 제4조

민방위기본법 제4조(재정상의 조치)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방위사태의 예방과 신속한 수습 및 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②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조치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는 등 재정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	비 고
산출 기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방위 교육 운영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전훈련 교관수당 : 3,000천원 - 100천원 × 30명 = 3,000천원</li> <li>○ 기술지원대 등 전문교육 지원 : 24,468천원 - 10천원 × 2,446명 ÷ 24,468천원</li> <li>○ 민방위 리더양성과정 지원(민방위대장,민방위강사 등) : 19,686천원 - 180천원 × 109명 ÷ 19,686천원</li> <li>○ 교육강사 수당 : 37,832천원 ※ 250천원 × 151회 ÷ 37,832천원 ※ 충청남도공무원교육원 강사수당 기준에 의거 2급 일반강사로 지급 (최초 1시간 14만원 초과 매시간 8만원, 원고료 장당 5,000원)</li> <li>○ 지원민방위대 육성 지원 : 37,495천원</li> <li>○ 마을단위 소집단 훈련경비 : 9,609천원(국비 100%)</li> </ul> </li> </ul>	
총사업비	132,090천원(국비 46,353, 도비 25,718, 시군비 60,019)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본예산(A)	전년도본예산(B)	증감(A-B)		
계	132,090	-	132,090	97,336	34,754	-	계속
국 비	46,353	-	46,353	36,047	10,306	-	국고
도 비	25,718	-	25,718	18,385	7,333	-	
시군비	60,019	-	60,019	42,904	17,115	-	
기 타	-	-	-	-	-	-	

\* : 30%, 21%, 49%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A)	집행액(B)	집행잔액(C=A-B)	집행률(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54,258	42,528	-	78.3%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학술용역비사전심사	물품정수취득	홍보물사전심의	공공기관출연금의회의결	신규 행사성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1년(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재난안전실	안전정책과	민방위비상대비팀	최천재(행) 2170	이수용(행) 5613	박유리(행) 5628

<b>민방위대 창설기념행사 경비</b>	정책사업	민방위 및 비상대비 운영
	단위사업	민방위 운영 및 기반 확충
	세부사업	민방위대 창설기념행사 경비
	통 계 목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08-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민방위대 창설기념행사 관련 경비 지원으로 민방위대원의 역량강화 및 자긍심 고취
- 사업 위치 : 15개 시·군
- 사업 기간 : 2021. 1. 1. ~ 2021. 12. 31.(다년도 계속사업)
- 예 산 액 : **5,000천원**
- 사 업 량 : 연 1회
-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시장·군수
- 사업 내용 : 행사 참석에 따른 민방위대원 경비 지원
- 지원 근거 : 민방위기본법 제4조

민방위기본법 제4조(재정상의 조치)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방위사태의 예방과 신속한 수습 및 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조치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는 등 재정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	비 고
산출 기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방위대 창설기념행사 경비</li> <li>○ 행사 참석 민방위대원 경비 : 333천원 x 15개 시군 ≙ 5,000천원</li> </ul>	
총사업비	5,000천원(국비 5,000)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본예산(A)	전년도본예산(B)	증감(A-B)		
계	5,000	-	5,000	5,600	△600	-	계속
국 비	5,000	-	5,000	5,600	△600	-	국고
도 비	-	-	-	-	-	-	
시군비	-	-	-	-	-	-	
기 타	-	-	-	-	-	-	

\* : 100%,

'2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A)	집행액(B)	집행잔액(C=A-B)	집행률(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5,600	3,667	-	65.4%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학술용역비사전심사	물품정수취득	홍보물사전심의	공공기관출연금의회의결	신규 행사성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1년(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재난안전실	안전정책과	민방위비상대비팀	최천재(행) 2170	이수용(행) 5613	박유리(행) 5628

## 국민 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

정책사업	민방위 및 비상대비 운영
단위사업	민방위 운영 및 기반 확충
세부사업	국민 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
통 계 목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08-01)

###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적의 침공이나 재난 발생시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및 효율적인 사태 수습 능력 배양을 위해 민방위의 날 훈련운영비 지원
- 사업 위치 : 15개 시·군
- 사업 기간 : 2021. 1. 1. ~ 2021. 12. 31.(다년도 계속사업)
- 예 산 액 : **14,535천원**
- 사 업 량 : 연 3회
-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시장·군수
- 사업 내용 : 국민 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 운영비 지원
- 지원 근거 : 민방위기본법 제4조

민방위기본법 제4조(재정상의 조치)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방위사태의 예방과 신속한 수습 및 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②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조치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는 등 재정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	비 고
산출 기초	■ 국민 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 ○ 국민 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 : 1,900천원 × 15개 시군 = 28,500천원	
총사업비	28,500천원(국비 8,550, 도비 5,985, 시군비 13,965)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본예산(A)	전년도본예산(B)	증감(A-B)		
계	28,500	-	28,500	28,500	-	-	계속
국 비	8,550	-	8,550	8,550	-	-	국고
도 비	5,985	-	5,985	5,985	-	-	
시군비	13,965	-	13,965	13,965	-	-	
기 타	-	-	-	-	-	-	

\* : 30%, 21%, 49%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A)	집행액(B)	집행잔액(C=A-B)	집행률(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14,535	12,826	-	88.2%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1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재난안전실	안전정책과	민방위비상대비팀	최천재 (행) 2170	이수용 (행) 5613	조주현 (행) 5626

<b>민방위의 날 훈련참석자 급식비</b>	정책사업	민방위 및 비상대비 운영
	단위사업	민방위 운영 및 기반 확충
	세부사업	민방위 운영 및 육성지원
	통 계 목	행사실비지원금 (301-09)

##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도 단위 민방위 시범훈련 참석자를 대상으로 급식비를 지원함으로써 훈련 참가율 제고
- 사업 위치 : 도 단위 민방위 시범훈련 대상 1개 시·군
- 사업 기간 : 2021. 1. 1. ~ 2021. 12. 31.(다년도 계속사업)
- 예 산 액 : **2,700천원**
- 사 업 량 : 훈련참석자 급식제공 337명
-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도내 시범훈련 대상 1개 시장·군수(추후 선정)
- 사업 내용 : 을지태극연습 기간 중 실시되는 도 단위 민방위 실제훈련 참석자 급식비 지원
- 지원 근거 : 민방위기본법 제4조

민방위기본법 제4조(재정상의 조치)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방위사태의 예방과 신속한 수습 및 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②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조치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는 등 재정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	비 고
산출 기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방위의 날 훈련참석자 급식비</li> <li>○ 민방위의 날 훈련참석자 급식비 : 8천원 X 337명 ≙ 2,700천원</li> </ul>	
총사업비	2,700천원(도비 2,700)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본예산(A)	전년도본예산(B)	증감(A-B)		
계	2,700	-	2,700	2,700	-	-	계속
국 비	-	-	-	-	-	-	
도 비	2,700	-	2,700	2,700	-	-	
시군비	-	-	-	-	-	-	
기 타	-	-	-	-	-	-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A)	집행액(B)	집행잔액(C=A-B)	집행률(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2,700	2,700	-	100%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학술용역비사전심사	물품정수취득	홍보물사전심의	공공기관출연금의회의결	신규 행사성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1년(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재난안전실	안전정책과	민방위비상대비팀	최천재(행) 2170	이수용(행) 5613	조주현(행) 5626

<b>도 단위 민방위 시범훈련</b>	정책사업	민방위 및 비상대비 운영
	단위사업	민방위 운영 및 기반 확충
	세부사업	민방위 운영 및 육성지원
	통 계 목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08-01)

##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도 단위 민방위 시범훈련을 통한 민방위 대원의 재난대응 능력 향상
- 사업 위치 : 도내 시범훈련 대상 1개 시·군(추후선정)
- 사업 기간 : 2021. 1. 1. ~ 2021. 12. 31.(다년도 계속사업)
- 예 산 액 : **8,500천원**
- 사 업 량 : 민방위 훈련 1회
-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도내 시범훈련 대상 1개 시장·군수(추후선정)
- 사업 내용 : 을지태극연습 기간 중 실시되는 도 단위 시범훈련비 지원으로 훈련절차 숙달 및 민·관·군·경 통합방위 태세 구축
- 지원 근거 : 민방위기본법 제4조

민방위기본법 제4조(재정상의 조치)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방위사태의 예방과 신속한 수습 및 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②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조치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는 등 재정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	비 고
산출 기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단위 민방위 시범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훈련장 설치(무대차량 등) : 3,000천원</li> <li>○ 훈련장 음향 및 방송시스템 설치 : 2,000천원</li> <li>○ 현수막, 상황판 등 제작 : 1,000천원</li> <li>○ 훈련소모품(연막탄, 음료, 기타) : 2,500천원</li> </ul> </li> </ul>	
총사업비	8,500천원(도비 8,500)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본예산(A)	전년도본예산(B)	증감(A-B)		
계	8,500	-	8,500	9,500	△1,000	-	계속
국 비	-	-	-	-	-	-	
도 비	8,500	-	8,500	9,500	△1,000	-	
시군비	-	-	-	-	-	-	
기 타	-	-	-	-	-	-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A)	집행액(B)	집행잔액(C=A-B)	집행률(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10,000	9,800	200	98.0%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1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재난안전실	안전정책과	민방위비상대비팀	최천재 (행) 2170	이수용 (행) 5613	조주현 (행) 5626

<b>민방위 실기실습용품 구입</b>	정책사업	민방위 및 비상대비 운영
	단위사업	민방위 운영 및 기반 확충
	세부사업	민방위 운영 및 육성지원
	통 계 목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08-01)

##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민방위 실기실습용품 지원을 통한 민방위 대원의 재난대응 능력 향상
- 사업 위치 : 15개 시·군
- 사업 기간 : 2021. 1. 1. ~ 2021. 12. 31.(다년도 계속사업)
- 예 산 액 : 30,600천원
- 사 업 량 : 실습 기자재 3종 구입(심폐소생술 마네킹, 방독면, 제세동기)
-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시장·군수
- 사업 내용 : 민방위 실기실습용품 구입비 지원을 통한 참여형 교육 추진
- 지원 근거 : 민방위기본법 제4조

민방위기본법 제4조(재정상의 조치)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방위사태의 예방과 신속한 수습 및 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②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조치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는 등 재정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	비 고
산출 기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방위 실기실습용품 구입</li> <li>○ 민방위 실기실습용품 구입 : 6,800천원 X 15개 시군 = 102,000천원</li> <li>※ 실기실습용품 종류 : 심폐소생술 마네킹, 방독면, 제세동기</li> </ul>	
총사업비	102,000천원(도비 30,600, 시군비 71,400)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본예산(A)	전년도본예산(B)	증감(A-B)		
계	102,000	-	102,000	114,000	△12,000	-	계속
국 비	-	-	-	-	-	-	
도 비	30,600	-	30,600	34,200	△3,600	-	
시군비	71,400	-	71,400	79,800	△8,400	-	
기 타	-	-	-	-	-	-	

\* : 30%, 7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A)	집행액(B)	집행잔액(C=A-B)	집행률(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36,000	33,437	2,563	92.8%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학술용역비사전심사	물품정수취득	홍보물사전심의	공공기관출연금의회의결	신규 행사성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1년(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재난안전실	안전정책과	민방위비상대비팀	최천재(행) 2170	이수용(행) 5613	박유리(행) 5628

<b>민방위 사이버교육 지원</b>	정책사업	민방위 및 비상대비 운영
	단위사업	민방위 운영 및 기반 확충
	세부사업	민방위 운영 및 육성지원
	통 계 목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08-01)

##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체계적인 교육을 통한 민방위 대원의 재난대응 능력 향상
- 사업 위치 : 15개 시·군
- 사업 기간 : 2021. 1. 1. ~ 2021. 12. 31.(다년도 계속사업)
- 예 산 액 : **30,000천원**
- 사 업 량 : 5년차 이상 민방위대원 80,647명(2020. 1. 10.기준)
-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시장·군수
- 사업 내용 : 시·군 5년차 이상 민방위대원 사이버교육 도비보조금 지원
- 지원 근거 : 민방위기본법 제4조

민방위기본법 제4조(재정상의 조치)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방위사태의 예방과 신속한 수습 및 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②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조치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는 등 재정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	비 고
산출 기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방위 사이버교육 지원</li> <li>○ 민방위 사이버교육 지원 : 6,660천원 × 15개 시군 ≙ 100,000,000원</li> </ul>	
총사업비	100,000천원(도비 30,000, 시군비 70,000)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본예산(A)	전년도본예산(B)	증감(A-B)		
계	100,000	-	100,000	100,000	-	-	계속
국 비	-	-	-	-	-	-	
도 비	30,000	-	30,000	30,000	-	-	
시군비	70,000	-	70,000	70,000	-	-	
기 타	-	-	-	-	-	-	

\* : 30%, 7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A)	집행액(B)	집행잔액(C=A-B)	집행률(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	-	-	-	-	'20년 신규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1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재난안전실	안전정책과	민방위비상대비팀	최천재 (행) 2170	이수용 (행) 5613	박유리 (행) 5628

<b>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보급(자체)</b>	정책사업	민방위 및 비상대비 운영
	단위사업	민방위 운영 및 기반 확충
	세부사업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보급
	통 계 목	자치단체자본보조 (403-01)

##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민방위 사태 발생 시 핵 및 화생방 피해에 대한 최소한의 장비 보급으로 민방위대원 활동 보장
- 사업 위치 : 3개 시·군(천안, 공주, 예산)
- 사업 기간 : 2018. 1. 1. ~ 2021. 12. 31.(다년도 계속사업)
- 예 산 액 : **124,950천원**
- 사 업 량 : 화생방 방독면 5,950개 구입
-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3개 시장·군수(천안, 공주, 예산)
- 사업 내용 : 민방위 대원 대상 화생방 방독면 보급
- 지원 근거 : 민방위기본법 제4조

민방위기본법 제4조(재정상의 조치)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방위사태의 예방과 신속한 수습 및 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②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조치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는 등 재정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	비 고
산출 기초	■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보급 ○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보급 : 42천원 × 5,950개 = 249,900천원 ※ 확보율 100% 시군은 제외	
총사업비	249,900천원(도비 124,950, 시군비 124,950)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본예산(A)	전년도본예산(B)	증감(A-B)		
계	3,948,000	2,478,000	249,900	798,000	△548,100	-	계속
국 비	-	-	-	-	-	-	
도 비	1,974,000	1,239,000	124,950	399,000	△274,050	-	
시군비	1,974,000	1,239,000	124,950	399,000	△274,050	-	
기 타	-	-	-	-	-	-	

\* : 50%, 5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A)	집행액(B)	집행잔액(C=A-B)	집행률(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420,000	403,567	16,433	96.0%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학술용역비사전심사	물품정수취득	홍보물사전심의	공공기관출연금의회의결	신규 행사성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1년(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재난안전실	안전정책과	민방위비상대비팀	최천재(행) 2170	이수용(행) 5613	조주현(행) 5626

<b>인력동원 훈련보상금 지급</b>	정책사업	민방위 및 비상대비 운영
	단위사업	비상대비 운영
	세부사업	인력동원 훈련보상금 지급
	통 계 목	행사실비지원금 (301-09)

##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동원대상자에 대한 소집·점검을 통한 충무계획의 실효성 검증 및 비상대비태세 확립
- 사업 위치 : 15개 시·군
- 사업 기간 : 2021. 1. 1. ~ 2021. 12. 31.(다년도 계속사업)
- 예 산 액 : **7,700천원**
- 사 업 량 : 전시 기술인력 동원대상자 110명
-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시장·군수
- 사업 내용 : 전시 기술인력 동원대상자에 대한 소집 점검을 통한 동원절차 연습
- 지원 근거 :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제14조

제14조(훈련의 실시)

① 정부는 비상대비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국 또는 지역이나 부문별로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	비 고
산출 기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술인력 동원훈련 보상금</li> <li>- 70천원 × 110명(전시 기술인력 동원대상자) = 7,700천원</li> </ul>	
총사업비	7,700천원(국비 7,700)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본예산(A)	전년도본예산(B)	증감(A-B)		
계	7,700	-	7,700	-	7,700	-	신규
국 비	7,700	-	7,700	-	7,700	-	국고
도 비	-	-	-	-	-	-	
시군비	-	-	-	-	-	-	
기 타	-	-	-	-	-	-	

\* :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A)	집행액(B)	집행잔액(C=A-B)	집행률(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6,300	6,300	-	100%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학술용역비사전심사	물품정수취득	홍보물사전심의	공공기관출연금의회의결	신규 행사성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1년(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재난안전실	안전정책과	민방위비상대비팀	최천재(행) 2170	이수용(행) 5613	조주현(행) 5626

<b>을지태극연습 및 통합방위 운영</b>	정책사업	민방위 및 비상대비 운영
	단위사업	비상대비 운영
	세부사업	을지태극연습 및 통합방위 운영
	통 계 목	사무관리비 (201-01)

##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비상대비훈련(을지태극연습, 화랑훈련) 준비 및 원활한 비상대비업무 운영
- 사업 위치 : 충청남도
- 사업 기간 : 2021. 1. 1. ~ 2021. 12. 31.(다년도 계속사업)
- 예 산 액 : **46,000천원**
- 사 업 량 : 비상대비훈련을 위한 사무용품 구입, 훈련참여 근무자(공무원) 급식비 지원 등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도지사
- 사업 내용 : 원활한 비상대비훈련 준비 및 분기별 통합방위협의회 개최를 위한 사무관리비
- 지원 근거 :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제13조의 4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제13조의 4(보상)  
 제13조의2에 따른 인력의 참여 및 물자의 사용, 제13조의3에 따른 비축물자의 사용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	비 고
산출 기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을지태극연습·화랑훈련 및 통합방위 운영 : 46,000천원</li> <li>○ 사무용품 구입 등 : 9,000천원</li> <li>○ 총무계획 등 인쇄비 : 9,000천원</li> <li>○ 비상대비훈련(을지태극, 화랑) 관련 구입 및 임차 : 5,000천원</li> <li>○ 비상대비훈련(을지태극, 화랑) 참가자 급량비 : 5,000천원</li> <li>○ 을지태극연습 외부평가관 수당 및 여비 : 12,000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당 : 100천원×15명×4일 = 6,000천원 ※ 근거 : 행정안전부 을지태극연습 평가계획</li> <li>- 여비(교통비, 식비, 숙박비) : 400천원×15명 = 6,000천원</li> </ul> </li> <li>○ 병역명문가 문패 제작 : 2,000천원</li> <li>○ 민방위강사 선발 수당 : 4,000천원</li> </ul>	
총사업비	46,000천원(도비 46,000)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본예산(A)	전년도본예산(B)	증감(A-B)		
계	46,000	-	46,000	41,400	4,600	-	계속
국 비	-	-	-	-	-	-	
도 비	46,000	-	46,000	41,400	4,600	-	
시군비	-	-	-	-	-	-	
기 타	-	-	-	-	-	-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A)	집행액(B)	집행잔액(C=A-B)	집행률(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37,260	37,076	184	99.5%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학술용역비사전심사	물품정수취득	홍보물사전심의	공공기관출연금의회결	신규 행사성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1년(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재난안전실	안전정책과	민방위비상대비팀	최천재(행) 2170	이수용(행) 5613	채필주(행) 5627

<b>충무시설 상황실 운영 및 유지보수</b>	정책사업	민방위 및 비상대비 운영
	단위사업	비상대비 운영
	세부사업	을지태극연습 및 통합방위 운영
	통 계 목	공공운영비 (201-02)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충무시설 상황실 영상·음향장비 수선·유지 및 전용회선 사용료
- 사업 위치 : 충무시설(본관 지하1층)
- 사업 기간 : 2021. 1. 1. ~ 2021. 12. 31.(다년도 계속사업)
- 예 산 액 : 15,000천원
- 사 업 량 : 장비 유지보수 및 회선 사용료 1식
- 사업시행방법 : 직접시행
- 사업시행주체 : 도지사
- 사업 내용 : 충무시설 상황실 영상·음향장비 수선 유지비(12개월)  
  - ※ C4I(관·군·경 영상회의)시스템 전용회선비용
- 지원 근거 : 통합방위법 제3조 제2항

통합방위법 제3조(통합방위태세의 확립 등)  
 ②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구역별 통합방위태세의 확립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	비 고
산출 기초	■ 충무시설 상황실 운영 및 유지보수 ○ 수선유지비 : 10,011천원 · 470,000천원(총 사업비) × 2.13%(년 유지보수 비율) × 1년(12개월) = 10,011천원  ○ C4I시스템(영상회의) 전용회선 비용 : 4,989천원 · 2회선 단기 전용회선 비용(32사단, 충남경찰청)	
총사업비	15,000천원(도비 15,000)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본예산(A)	전년도본예산(B)	증감(A-B)		
계	15,000	-	15,000	15,000	-	-	계속
국 비	-	-	-	-	-	-	
도 비	15,000	-	15,000	15,000	-	-	
시군비	-	-	-	-	-	-	
기 타	-	-	-	-	-	-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A)	집행액(B)	집행잔액(C=A-B)	집행률(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15,000	13,784	1,216	91.9%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1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재난안전실	안전정책과	민방위비상대비팀	최천재 (행) 2170	이수용 (행) 5613	노해선 (행) 5625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본예산(A)	전년도본예산(B)	증감(A-B)		
계	10,000	-	10,000	9,000	1,000	-	계속
국 비	-	-	-	-	-	-	
도 비	10,000	-	10,000	9,000	1,000	-	
시군비	-	-	-	-	-	-	
기 타	-	-	-	-	-	-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A)	집행액(B)	집행잔액(C=A-B)	집행률(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	-	-	-	-	20년 신규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학술용역비사전심사	물품정수취득	홍보물사전심의	공공기관출연금의회의결	신규 행사성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1년(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재난안전실	안전정책과	민방위비상대비팀	최천재(행) 2170	이수용(행) 5613	박유리(행) 5628

<b>시군 평가관 여비 등</b>	정책사업	민방위 및 비상대비 운영
	단위사업	비상대비 운영
	세부사업	을지태극연습 및 통합방위 운영
	통 계 목	국내여비 (202-01)

##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전시전환절차, 중무계획의 실효성, 위기관리 대응절차 등에 대한 시·군 평가로 비상대비 업무역량 강화
- 사업 위치 : 충청남도
- 사업 기간 : 2021. 1. 1. ~ 2021. 12. 31.(다년도 계속사업)
- 예 산 액 : **12,750천원**
- 사 업 량 : 시·군 평가관 15명 등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도지사
- 사업 내용 : 비상대비훈련 기간 중 15개 시·군으로 파견되는 평가관에게 실비 지급, 분야별 점검 등
- 지원 근거 : 민방위기본법 제15조의2(점검 등),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제25조의2(확인·점검), 행정안전부 을지태극연습 평가계획 등

민방위기본법 제15조의2(점검 등)

-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시설장비 또는 물자를 주시적으로 점검하여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이를 종합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	비 고
산출 기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군 평가관 여비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상대비훈련 시·군평가단(4일) : 4,500천원 - 300천원(일비, 식비, 숙박비) × 1명 × 15개 시군 = 4,500천원</li> <li>○ 비상대비 일제점검(자원조사, 비상대비태세 점검 등) : 450천원 - 50천원 × 3명 × 3회 = 450천원</li> <li>○ 통합방위분야 정기점검(전술헬기장 점검, 통합방위태세 점검 등) : 3,900천원 - 50천원 × 6명 × 13회 = 3,900천원</li> <li>○ 민방위분야 정기점검(비상급수시설 및 민방위교육·훈련 점검 등) : 3,900천원 - 50천원 × 6명 × 13회 = 3,900천원</li> </ul> </li> </ul>	
총사업비	12,750천원(도비 12,750)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본예산(A)	전년도본예산(B)	증감(A-B)		
계	12,750	-	12,750	13,500	△750	-	계속
국 비	-	-	-	-	-	-	
도 비	12,750	-	12,750	13,500	△750	-	
시군비	-	-	-	-	-	-	
기 타	-	-	-	-	-	-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A)	집행액(B)	집행잔액(C=A-B)	집행률(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12,150	10,905	1,245	89.8%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학술용역비사전심사	물품정수취득	홍보물사전심의	공공기관출연금의회결	신규 행사성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1년(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재난안전실	안전정책과	민방위비상대비팀	최천재(행) 2170	이수용(행) 5613	채필주(행) 5627

<b>통합방위협의회 업무추진</b>	정책사업	민방위 및 비상대비 운영
	단위사업	비상대비 운영
	세부사업	을지태극연습 및 통합방위 운영
	통 계 목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3-03)

##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군부대, 경찰, 예비군 등 국가방위요소 간 협업체계 구축
- 사업 위치 : 충청남도
- 사업 기간 : 2021. 1. 1. ~ 2021. 12. 31.(다년도 계속사업)
- 예 산 액 : **63,175천원**
- 사 업 량 :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및 국가방위요소 중추절, 연말연시 군경 위문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도지사
- 사업 내용 : 원활한 전시 임무수행 및 각급 행정기관 및 군부대와의 원활한 통합방위 작전의 수행을 위한 지원
- 지원 근거 : 통합방위법 제3조,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제13조의 4

<p>통합방위법 제3조(통합방위태세의 확립 등)</p> <p>②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구역별 통합방위태세의 확립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p> <p>③ 각급 행정기관 및 군부대의 장은 통합방위작전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서로 지원하고 협조하여야 한다.</p> <p>비상대비자원관리법 제13조의 4(보상)</p> <p>제13조의2에 따른 인력의 참여 및 물자의 사용, 제13조의3에 따른 비축물자의 사용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p>
---

##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	비 고
산출 기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합방위협의회 업무추진</li> <li>○ 설명절, 호국보훈의 달, 중추절, 연말연시 군경위문 : 46,675천원</li> <li>○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등 : 16,500천원</li> </ul>	
총사업비	63,175천원(도비 63,175)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본예산(A)	전년도본예산(B)	증감(A-B)		
계	63,175	-	63,175	63,175	-	-	계속
국 비	-	-	-	-	-	-	
도 비	63,175	-	63,175	63,175	-	-	
시군비	-	-	-	-	-	-	
기 타	-	-	-	-	-	-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A)	집행액(B)	집행잔액(C=A-B)	집행률(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60,016	59,552	464	99.2%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1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재난안전실	안전정책과	민방위비상대비팀	최천재 (행) 2170	이수용 (행) 5613	박찬호 (행) 2174

<b>을지태극연습 참가자 급식비</b>	정책사업	민방위 및 비상대비 운영
	단위사업	비상대비 운영
	세부사업	을지태극연습 및 통합방위 운영
	통 계 목	행사실비지원금 (301-09)

##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을지태극연습 및 화랑훈련 등 비상대비훈련 유관기관 참가자를 대상으로 급식비를 지원함으로써 훈련 참가율 제고
- 사업 위치 : 충청남도
- 사업 기간 : 2021. 1. 1. ~ 2021. 12. 31.(다년도 계속사업)
- 예 산 액 : **3,312천원**
- 사 업 량 : 훈련참석자 급식제공 414명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도지사
- 사업 내용 : 을지태극연습 등 비상대비훈련 참가자(유관기관) 급식비 지원
- 지원 근거 :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제13조의 4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제13조의 4(보상)  
 제13조의2에 따른 인력의 참여 및 물자의 사용, 제13조의3에 따른 비축물자의 사용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	비 고
산출 기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을지태극연습 및 화랑훈련 참가자 급식비</li> <li>○ 비상대비훈련 참가자 급식비 : 8천원 X 200명 X 2회(을지태극, 화랑) = 3,200천원</li> <li>○ 지상협동훈련, 통합방위작전 등 참가자 급식비: 8천원 X 14명 X 1식(수시) = 112천원</li> </ul>	
총사업비	3,312천원(도비 3,312)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본예산(A)	전년도본예산(B)	증감(A-B)		
계	3,312	-	3,312	3,312	-	-	계속
국 비	-	-	-	-	-	-	
도 비	3,312	-	3,312	3,312	-	-	
시군비	-	-	-	-	-	-	
기 타	-	-	-	-	-	-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A)	집행액(B)	집행잔액(C=A-B)	집행률(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2,430	2,424	6	99.8%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1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재난안전실	안전정책과	민방위비상대비팀	최천재 (행) 2170	이수용 (행) 5613	채필주 (행) 5627

<b>전술헬기장 노후시설 보강</b>	정책사업	민방위 및 비상대비 운영
	단위사업	비상대비 운영
	세부사업	을지태극연습 및 통합방위 운영
	통 계 목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08-01)

##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도내 헬기장 보수사업 실시로 원활한 통합방위태세 확립
- 사업 위치 : 15개 시군(전술헬기장 147개소)
- 사업 기간 : 2021. 1. 1. ~ 2021. 12. 31.(다년도 계속사업)
- 예 산 액 : **15,300천원**
- 사 업 량 : 147개소
-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시장·군수
- 사업 내용 : 헬기장패드 보수, 도색, 시야 확보, 바람자루·유도 등 설치 등
- 지원 근거 : 통합방위법 제3조

통합방위법 제3조(통합방위태세의 확립 등)

- ① 정부는 국가방위요소의 육성 및 통합방위태세의 확립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②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구역별 통합방위태세의 확립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③ 각급 행정기관 및 군부대의 장은 통합방위작전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서로 지원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 ④ 정부는 통합방위사태의 선포에 따른 국가방위요소의 동원 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	비 고
산출 기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술헬기장 노후시설 보강</li> <li>○ 헬기장 보수 : 15,000천원</li> <li>○ 도색, 시야확보 : 20,000천원</li> <li>○ 바람자루 유도 등 : 16,000천원</li> </ul>	
총사업비	51.000천원(도비 15,300 시군비 35,700)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본예산(A)	전년도본예산(B)	증감(A-B)		
계	51,000	-	51,000	57,000	△6,000	-	계속
국 비	-	-	-	-	-	-	
도 비	15,300	-	15,300	28,500	△13,200	-	
시군비	35,700	-	35,700	28,500	7,200	-	
기 타	-	-	-	-	-	-	

\* : 50%, 5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A)	집행액(B)	집행잔액(C=A-B)	집행률(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30,000	28,068	-	93.5%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1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재난안전실	안전정책과	민방위비상대비팀	최천재 (행) 2170	이수용 (행) 5613	노해선 (행) 5625

<b>통합방위 C4I시스템 연계 기능 개선</b>	정책사업	민방위 및 비상대비 운영
	단위사업	비상대비 운영
	세부사업	을지태극연습 및 통합방위 운영
	통 계 목	자산및물품취득비 (405-01)

##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통합방위 C4I시스템 연계기능 개선
- 사업 위치 : 충무시설(본관 지하1층)
- 사업 기간 : 2021. 1. 1. ~ 2021. 12. 31.(신규사업)
- 예 산 액 : 25,500천원
- 사 업 량 : 통합방위 C4I시스템 연계 기능 개선 장비 1식
- 사업시행방법 : 직접시행
- 사업시행주체 : 도지사
- 사업 내용 : HDMI 컨버터, 분배기, 광케이블 등 1식
- 지원 근거 : 통합방위법 제3조 제2항

통합방위법 제3조(통합방위태세의 확립 등)

②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구역별 통합방위태세의 확립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	비 고
산출 기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합방위 C4I시스템 연계 기능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상회의시스템 연계기능 개선 : 400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HDMI to USB 컨버터 등 : 400천원</li> </ul> </li> <li>○ 통합방위 C4I시스템 기능 개선 : 25,100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FULL HD카메라 : 8,500천원 X 2개 = 17,000천원</li> <li>- Seamless Matrix 4입력 4출력 : 5,500천원 X 1개 = 5,500천원</li> <li>- 제어프로그램수정 : 2,600천원 X 1개 = 2,600천원</li> </ul> </li> </ul> </li> </ul>	
총사업비	25,500천원(도비 25,500)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본예산(A)	전년도본예산(B)	증감(A-B)		
계	25,500	-	25,500	-	25,500	-	신규
국 비	-	-	-	-	-	-	
도 비	25,500	-	25,500	-	25,500	-	
시군비	-	-	-	-	-	-	
기 타	-	-	-	-	-	-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A)	집행액(B)	집행잔액(C=A-B)	집행률(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	-	-	-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1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재난안전실	안전정책과	민방위비상대비팀	최천재 (행) 2170	이수용 (행) 5613	노해선 (행) 5625

<b>지역예비군 육성지원(경상)</b>	정책사업	민방위 및 비상대비 운영
	단위사업	비상대비 운영
	세부사업	지역예비군 육성지원
	통 계 목	예비군육성지원경상보조 (308-09)

##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민·관·군 간의 협력체계 구축 및 지역통합방위 태세 확립
- 사업 위치 : 육군 제32보병사단
- 사업 기간 : 2021. 1. 1. ~ 2021. 12. 31.(다년도 계속사업)
- 예 산 액 : **2,480천원**
- 사 업 량 : 특전예비군 입영훈련 지원, 예비군훈련 장려 용품 구입
- 사업시행방법 : 군부대시행
- 사업시행주체 : 육군 제32보병사단
- 사업 내용 : 특전예비군 등 우수 예비군 육성지원
- 지원 근거 : 예비군 육성·지원에 관한 규칙 제4조

예비군 육성·지원에 관한 규칙 제4조(예비군 육성·지원의 책임)

「예비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의3제1항에 따른 예비군 육성 및 지원의 책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국방부장관: 예비군 육성·지원 정책의 총괄과 예비군 육성·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의 시행
2. 각급 국가기관의 장: 예비군의 육성을 위한 상호 협조·지원과 산하의 기관·단체 및 기업체 직장예비군의 육성·지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할 지역 안 지역예비군의 육성·지원
4. 직장예비군이 편성된 직장의 장[「예비군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5조제6항에 따라 직장예비군을 통합하여 편성·운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통합 직장예비군부대 안의 모든 직장의 장]: 소속 직장예비군의 육성·지원

##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	비 고
산출 기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예비군 육성지원</li> <li>○ 교육 훈련 지원 : 2,480천원</li> <li>- 특전예비군 입영훈련지원 700천원, 예비군훈련 장려 용품 구입 1,780천원</li> </ul>	
총사업비	2,480천원(도비 2,480)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본예산(A)	전년도본예산(B)	증감(A-B)		
계	2,480	-	2,480	6,700	△4,220	-	계속
국 비	-	-	-	-	-	-	
도 비	2,480	-	2,480	6,700	△4,220	-	
시군비	-	-	-	-	-	-	
기 타	-	-	-	-	-	-	

\* : 100%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A)	집행액(B)	집행잔액(C=A-B)	집행률(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0	0	-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1년 (2021~2025)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재난안전실	안전정책과	민방위비상대비팀	최천재 (행) 2170	이수용 (행) 5613	노해선 (행) 5625

<b>지역예비군 육성지원(자본)</b>	정책사업	민방위 및 비상대비 운영
	단위사업	비상대비 운영
	세부사업	지역예비군 육성지원
	통 계 목	예비군육성지원자본보조 (403-03)

##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민·관·군 간의 협력체계 구축 및 지역통합방위 태세 확립
- 사업 위치 : 육군 제32보병사단
- 사업 기간 : 2021. 1. 1. ~ 2021. 12. 31.(다년도 계속사업)
- 예 산 액 : **97,520천원**
- 사 업 량 : 예비군 훈련장비 구매, 부대 운영 지원 등
- 사업시행방법 : 군부대시행
- 사업시행주체 : 육군 제32보병사단
- 사업 내용 : 예비군 부대의 운영을 위한 장비 및 물자의 지원을 통해 정예 예비전력 양성
- 지원 근거 : 예비군 육성·지원에 관한 규칙 제4조

예비군 육성·지원에 관한 규칙 제4조(예비군 육성·지원의 책임)

「예비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의3제1항에 따른 예비군 육성 및 지원의 책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국방부장관: 예비군 육성·지원 정책의 총괄과 예비군 육성·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의 시행
2. 각급 국가기관의 장: 예비군의 육성을 위한 상호 협조·지원과 산하의 기관·단체 및 기업체 직장예비군의 육성·지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할 지역 안 지역예비군의 육성·지원
4. 직장예비군이 편성된 직장의 장[「예비군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5조제6항에 따라 직장예비군을 통합하여 편성·운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통합 직장예비군부대 안의 모든 직장의 장]: 소속 직장예비군의 육성·지원

##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	비 고
산출 기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예비군 육성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방위작전 지원 : 83,520천원</li> <li>- 야간조준경 구매 : 4,800천원 x 10개 = 48,000천원</li> <li>- 주·야간 감시장비 구매 : 5,170천원 x 6개 = 31,020천원</li> <li>- 쌍안경 구매 : 450천원 x 10개 = 4,500천원</li> <li>○ 부대운영 지원 : 14,000천원</li> <li>- 노후 컴퓨터 교체 : 1,000천원 x 14대 = 14,000천원</li> </ul> </li> </ul>	
총사업비	97,520천원(도비 97,520)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본예산(A)	전년도본예산(B)	증감(A-B)		
계	97,520	-	97,520	93,300	4,220	-	계속
국 비	-	-	-	-	-	-	
도 비	97,520	-	97,520	93,300	4,220	-	
시군비	-	-	-	-	-	-	
기 타	-	-	-	-	-	-	

\* :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A)	집행액(B)	집행잔액(C=A-B)	집행률(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100,000	98,562	1,438	98.5%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1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재난안전실	안전정책과	민방위비상대비팀	최천재 (행) 2170	이수용 (행) 5613	노해선 (행) 5625

<b>경보통제소 및 경보시설 운영(사무관리비)</b>	정책사업	민방위 및 비상대비 운영
	단위사업	경보통제 운영 및 시설 구축
	세부사업	경보통제소 및 경보시설 운영
	통 계 목	사무관리비 (201-01)

##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경보통제소 및 경보시설 운영 사무관리비
- 사업 위치 : 도 본청 경보통제소(7층)
- 사업 기간 : 2021.1.1.~2021.12.31.(다년도 계속사업)
- 예 산 액 : **8,415천원**
- 사 업 량 : 경보통제소 운영 1식
- 사업시행방법 : 직접시행
- 사업시행주체 : 도지사
- 사업 내용 : 24시간 상황유지를 위해 경보통제소 사무용품 및 소모품, 서버 백신 등을 구매하기 위한 운영경비
- 지원근거 : 민방위기본법 제33조 제2항

### 민방위기본법 제33조 제2항 (민방위경보)

②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신속한 민방위 경보발령과 전파를 위하여 민방위 경보 통제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보통제소 및 경보시설 운영 : 8,415천원</li> <li>○ 경보통제소 및 경보시설 운영 : 3,415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프린터 토너 교체 : 965천원</li> <li>· A4복사용지 25천원×10BOX=250천원</li> <li>· 일반사무용품 구입 : 400천원</li> <li>· 상황근무자 생활용품 : 400천원</li> <li>· 경보통제소 차 재료 100천원×3=300천원</li> <li>· 민방위 경보단말 실무운용 교육 교재제작 : 1,100천원</li> </ul> </li> <li>○ 민방위경보통제 서버 백신 구입 : 5,000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랩 AhnLab V3 Net for Windows Server 9.0</li> </ul> </li> </ul>	
총사업비	8,415천원(도비)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예산액(A)	전년도 당초예산액(B)	증감(A-B)		
계	8,415	-	8,415	8,910	△495	-	
국 비	-	-	-	-	-	-	
도 비	8,415	-	8,415	8,910	△495	-	
시군비	-	-	-	-	-	-	
기 타	-	-	-	-	-	-	

\* :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10,800	10,799	1	100%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1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재난안전실	안전정책과	경보통제팀	최천재 (행) 2170	최석장 (행) 5615	박도선 (행) 5536

<b>경보통제소 및 경보시설 운영(공공운영비)</b>	정책사업	민방위 및 비상대비 운영
	단위사업	경보통제 운영 및 시설 구축
	세부사업	경보통제소 및 경보시설 운영
	통 계 목	공공운영비 (201-02)

##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경보통제소 운영에 필요한 공공요금 및 소모품 교체비
- 사업 위치 : 도 본청 경보통제소(7층)
- 사업 기간 : 2021.1.1.~2021.12.31.(다년도 계속사업)
- 예 산 액 : **42,500천원**
- 사 업 량 : 경보통제소 운영 1식
- 사업시행방법 : 직접시행
- 사업시행주체 : 도지사
- 사업 내용 : 24시간 끊임없는 상황유지를 위해 민방위 전용 회선료, 장비 소모품 교체 경비
- 지원근거 : 민방위기본법 제33조 제2항

### 민방위기본법 제33조 제2항 (민방위경보)

②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신속한 민방위 경보발령과 전파를 위하여 민방위 경보 통제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보통제소 및 경보시설 운영 : 42,500천원</li> <li>○ 민방위경보통제소 전용 회선료 : 1,900천원 × 12개월 = 22,800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홍성-평택(중앙민방위경보통제소)</li> <li>· 홍성-대전(MBC 대전문화방송)</li> <li>· 홍성-대전(KBS 대전방송)</li> <li>· 홍성-세종(32사단), 홍성-보령(97연대), 홍성-홍성읍(98연대)</li> </ul> </li> <li>○ KBS, MBC대전방송사 재난방송 전용 회선료 : 900천원 × 12개월 = 10,800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홍성-대전시청-KBS/MBC 대전방송 간 연결</li> </ul> </li> <li>○ 경보통제소 시설장비 유지비 : 8,900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보통제소 비상발전기 연료비 및 무정전 전원장치 소모품 교체</li> <li>· 민방위 경보시스템 유지관리비용, 일제지령 오디오분배기 및 오디오 믹서</li> <li>· 방화벽, POE스위치, IP-PBX교환기, 이중화 제어반, 라우터</li> </ul> </li> </ul>	
총사업비	42,500천원(도비)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예산액(A)	전년도 당초예산액(B)	증감(A-B)		
계	42,500	-	42,500	44,200	△1,700	-	
국 비	-	-	-	-	-	-	
도 비	42,500	-	42,500	44,200	△1,700	-	
시군비	-	-	-	-	-	-	
기 타	-	-	-	-	-	-	

\* :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42,400	40,332	2,068	95%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1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재난안전실	안전정책과	경보통제팀	최천재 (행) 2170	최석장 (행) 5615	박도선 (행) 5536

<b>민방위경보 및 다중이용시설 업무추진(여비)</b>	정책사업	민방위 및 비상대비 운영
	단위사업	경보통제 운영 및 시설 구축
	세부사업	경보통제소 및 경보시설 운영
	통 계 목	국내여비 (202-01)

##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민방위경보 및 다중이용시설 업무추진
- 사업 위치 : 도 분청 경보통제소(7층)
- 사업 기간 : 2021.1.1.~2021.12.31.(다년도 계속사업)
- 예 산 액 : 2,295천원
- 사 업 량 : 경보통제소 운영 1식
- 사업시행방법 : 직접시행
- 사업시행주체 : 도지사
- 사업 내용 : 민방위 경보시설 및 다중이용시설 등 점검에 필요한 출장여비
- 지원근거 : 민방위 경보발령·전달 규정 제20조 제1항, 민방위경보전파 대상 건축물에서의 경보전달 방법 및 관리기준 제4조 제2항

**(행정안전부) 민방위 경보발령·전달 규정 제20조 제1항 (경보시설의 유지관리 및 점검)**

- ① 중앙경보통제소장, 시·도 경보통제소장(분배소포함), 시·군·구 경보시설 관리책임자는 경보가 언제든지 발령·전달될 수 있도록 민방위 경보시설을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한 장소에 설치하고 정기 및 수시로 점검·정비하여야 한다.

**민방위경보전파 대상 건축물에서의 경보전달 방법 및 관리기준 제4조 제2항 (민방위경보전달체계 관리)**

- ② 시·도지사는 관리주체에 대하여 제2조에 따른 경보전파책임자의 지정 및 민방위경보 전파계획 수립, 제3조에 따른 민방위경보단말 설치 및 정상작동 여부 등을 점검 할 수 있다.

##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방위경보 및 다중이용시설 점검 : 2,295천원</li> <li>○ 15개 시·군(186개소) 민방위경보시설 일제점검 4회 : 1,600천원</li> <li>○ 14개 시·군(90개소) 다중이용시설 점검 2회 : 695천원</li> </ul>	
총사업비	2,295천원(도비)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예산액(A)	전년도 당초예산액(B)	증감(A-B)		
계	2,295	-	2,295	2,430	△135	-	
국 비	-	-	-	-	-	-	
도 비	2,295	-	2,295	2,430	△135	-	
시군비	-	-	-	-	-	-	
기 타	-	-	-	-	-	-	

\* :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2,430	2,429	1	100%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1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재난안전실	안전정책과	경보통제팀	최천재 (행) 2170	최석장 (행) 5615	박도선 (행) 5536

## 민방위경보 사각지역 해소사업

정책사업	민방위 및 비상대비 운영
단위사업	경보통제 운영 및 시설 구축
세부사업	민방위경보 사각지역 해소
통 계 목	자치단체자본보조 (403-01)

###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국가 재난발생시 신속한 상황 전파로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 사업 위치 : 시·군
- 사업 기간 : 2021. 1. ~ 2021. 12.(다년도 계속사업)
- 예 산 액 : **204,000천원**(국비 120,000, 도비 84,000)
  - ※ 보조율 : 국비 30%, 도비 21%, 시군비 49%
- 사 업 량 : 민방위 경보단말 10개소
-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시장군수
- 사업 내용 : 시·군 민방위 경보시설 사각지역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
- 지원근거 : 민방위기본법 제4조, 제15조 제1항

#### 민방위기본법 제4조 (재정상의 조치)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방위사태의 예방과 신속한 수습 및 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②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조치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는 등 재정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민방위기본법 제15조 제1항 (민방위 준비)

- ① 중앙관서의 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0조에 따른 민방위 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민방위 준비를 하여야 한다.
  2. 소방과 방공장비의 비치 및 정비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자의 비축과 시설 및 장비의 설치·정비

###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	비 고
산출 기초	■ 민방위경보 사각지역 해소사업 ○ 사업비 : 10개소 × 40,000천원 = 400,000천원 · 국비 120,000, 도비 84,000, 시군비 196,000 ※ 부담비율 : 국비(30%), 도비(21%), 시군비(49%)	
총사업비	204,000천원(국비 120,000, 도비 84,000)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본예산(A)	전년도본예산(B)	증감(A-B)		
계	400,000	-	400,000	560,000	△160,000	-	
국 비	120,000	-	120,000	168,000	△48,000	-	국고
도 비	84,000	-	84,000	117,600	△33,600	-	
시군비	196,000	-	196,000	274,400	△78,400	-	
기 타	-	-	-	-	-	-	

\* : 30%, 21%, 49%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A)	집행액(B)	집행잔액(C=A-B)	집행률(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183,600	164,313	19,287	89.5%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1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재난안전실	안전정책과	경보통제팀	최천재 (행) 2170	최석장 (행) 5615	추완엽 (행) 5641

<b>노후 민방위 경보시설 교체</b>	정책사업	민방위 및 비상대비 운영
	단위사업	경보통제 운영 및 시설 구축
	세부사업	노후 민방위 경보시설 교체
	통 계 목	자치단체자본보조 (403-01)

##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국가 재난발생시 신속한 상황 전파로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 사업 위치 : 서산시
- 사업 기간 : 2021. 1. ~ 2021. 12.
- 예 산 액 : **60,000천원**(도비 60,000)
  - ※ 보조율 : 도비 50%
- 사 업 량 : 민방위 경보단말 3개소
-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시장군수
- 사업 내용 : 노후 민방위 경보시설('07년) 교체하기 위한 사업
- 지원근거 : 민방위기본법 제4조, 제15조 제1항

### 민방위기본법 제4조 (재정상의 조치)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방위사태의 예방과 신속한 수습 및 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②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조치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는 등 재정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민방위기본법 제15조 제1항 (민방위 준비)

- ① 중앙관서의 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0조에 따른 민방위 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민방위 준비를 하여야 한다.
  2. 소방과 방공장비의 비치 및 정비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자의 비축과 시설 및 장비의 설치·정비

##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	비 고
산출 기초	■ 노후 민방위 경보시설 교체사업 ○ 사업비 : 3개소 × 40,000천원 = 120,000천원 · 도비 60,000, 시군비 60,000 ※ 부담비율 : 도비(50%), 시군비(50%)	
총사업비	60,000천원(도비 60,000)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본예산(A)	전년도본예산(B)	증감(A-B)		
계	120,000	-	120,000	-	120,000	-	
국 비	-	-	-	-	-	-	
도 비	60,000	-	60,000	-	60,000	-	
시군비	60,000	-	60,000	-	60,000	-	
기 타	-	-	-	-	-	-	

\* : 50%, 50%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A)	집행액(B)	집행잔액(C=A-B)	집행률(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	-	-	-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1년 (2021~2025)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재난안전실	안전정책과	경보통제팀	최천재 (행) 2170	최석장 (행) 5615	추완엽 (행) 5641

<b>경보통제소 장비보강</b>	정책사업	민방위 및 비상대비 운영
	단위사업	경보통제 운영 및 시설 구축
	세부사업	민방위경보시설 구축
	통 계 목	자산취득비 (405-01)

##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경보통제시스템 24시간 무중단 운영을 위한 장비 교체 및 보강
- 사업 위치 : 도 본청 7층 경보통제소
- 사업 기간 : 2021. 1. ~ 2021. 12.
- 예 산 액 : **36,116천원**
- 사 업 량 : IP음성변환장치, 이중화제어반 등
- 사업시행방법 : 직접시행
- 사업시행주체 : 도지사
- 사업 내용 : 민방위경보통제소 내 노후 음성변환장치 등 네트워크 장비 장애 대비하여 교체
- 지원근거 : 민방위기본법 제15조 제1항, 민방위 경보발령·전달 규정 제20조 제1항

<p><b>민방위기본법 제15조 제1항 (민방위 준비)</b></p> <p>① 중앙관서의 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0조에 따른 민방위 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민방위 준비를 하여야 한다.</p> <p>2. 소방과 방공장비의 비치 및 정비</p> <p>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자의 비축과 시설 및 장비의 설치·정비</p> <p><b>(행정안전부) 민방위 경보발령·전달 규정 제20조 제1항 (경보시설의 유지관리 및 점검)</b></p> <p>① 중앙경보통제소장, 시·도 경보통제소장(분배소포함), 시·군·구 경보시설 관리책임자는 경보가 언제든지 발령·전달될 수 있도록 민방위 경보시설을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한 장소에 설치하고 정기 및 수시로 점검·정비하여야 한다.</p>
--

##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분	산 출 액	비 고
산출 기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보통제소 장비보강</li> <li>○ 이중화 제어반 NIU 카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개 × 650천원 = 3,250천원(최대 20port 수용)</li> <li>· 이중화제어, 다중화제어기, 전원부, 네트워크절체기 부품 등</li> </ul> </li> <li>○ IP음성변환장치 2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식 × 16,433천원 = 32,866천원(최대 40port 수용)</li> <li>· 민방위경보 음성발령 수신, 3GE, 5개 이상의 카드슬롯 등</li> </ul> </li> </ul>	
총사업비	36,116천원(도비)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본예산(A)	전년도본예산(B)	증감(A-B)			
계	161,864	125,748	36,116	40,500	△4,384	-		
국 비	-	-	-	-	-	-	-	
도 비	161,864	125,748	36,116	40,500	△4384	-		
시군비	-	-	-	-	-	-	-	
기 타	-	-	-	-	-	-	-	

\* :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A)	집행액(B)	집행잔액(C=A-B)	집행률(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40,500	40,500	-	100%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학술용역비사전심사	물품정수취득	홍보물사전심의	공공기관출연금의회의결	신규 행사성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1년(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재난안전실	안전정책과	경보통제팀	최천재(행) 2170	최석장(행) 5615	추완엽(행) 5641

<b>안전감찰 특별사법경찰 수사활동비</b>	정책사업	민생안전구현
	단위사업	안전감찰 지원 운영
	세부사업	안전부패 감찰 및 법질서 확립
	통 계 목	특정업무경비 (204-03)

##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안전감찰 대상 범위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과 사회단체 등 민간 분야까지 포함하고 있으며, 같은 법 30조에서 정한 긴급안전점검 업무 종사자로 특별사법경찰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안전감찰팀 신설 : 2018. 8.)
- 사업 위치 : 충청남도 전역
- 사업 기간 : 2021. 1. 1. ~ 2021. 12. 31..(다년도 계속사업)
- 예 산 액 : **7,200천원**
- 사 업 량 : 1 식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
- 사업 내용 :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안전감찰 직무수행자에 대한 조사활동비 지급(수당)
- 지원 근거 :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 43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30조에 따른 긴급안전점검 업무 종사자)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4조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4조(기준경비)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용과 지방자치단체간 재정운용의 균형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업무추진비의 기준경비는 별표 2와 같다.

[별표2] 업무추진비 중 6. 특정업무경비

- ① 경비성격 : 특수업무담당분야에 근무하는 자에 대한 활동비로 월정액으로 지급
- ② 지급대상 : 지급대상 범위에 해당되는 직무를 전담하는 부서(전담팀)의 담당공무원에게 지급
  - 공통필수항목(5종)은 기준액(③)에 따라 지급대상 및 월액 규모 결정
  - 지급대상 및 금액결정은 지방재정계획심의회 심의를 거쳐 결정(4년 단위 결정)
- ③ 기 준 액 : 공통필수항목 중 특사경수사활동비
  - 대상 : 특별사법경찰관 직무관련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담당공무원(시·도 5급 이하, 시·군·구 6급 이하) 또는 자치경찰공무원(경정 이하)
  - 월액 : 200,000원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고
산출 기초	■ 안전감찰 특별사법경찰 수사활동비 : 7,200천원 ○ 안전감찰 업무추진 : 7,200천원 · 200,000원 × 3명 × 12월 = 7,2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본예산(A)	전년도본예산(B)	증감(B-A)		
계	14,400	-	7,200	7,200	-	-	계속
국비	-	-	-	-	-	-	
도비	14,400	-	7,200	7,200	-	-	계속
시군비	-	-	-	-	-	-	
기타	-	-	-	-	-	-	

\* :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도	예산현액(A)	집행액(B)	집행잔액(C=A-B)	집행률(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고
2019년	-	-	-	-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학술용역비사전심사	물품정수취득	홍보물사전심의	공공기관출연금의회의결	신규행사성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1년(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재난안전실	안전정책과	안전감찰팀	최천재(행) 2170	오양숙(행) 5617	윤여국(행) 2175



# 사 회 재 난 과



# 사회재난과

1.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운영 ..... 102
2.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 104  
(광역·기초단위 현장종합훈련 지원)
3. 사회재난대응 및 대비훈련 ..... 106
4. 재난대비 종합대응훈련(시·군) ..... 108
5. 민관협력 기능별 재난예방 및 대응 활동 .... 110
6. 국가안전대진단 안전점검 내실화 ..... 112
7. 특별사법경찰 운영 및 홍보 ..... 114
8. 특별사법경찰 직무교육 및 워크숍 ..... 116
9. 특별사법경찰 업무수행여비 ..... 118

10. 특별사법경찰 시책지원 .....	120
11. 특별사법경찰 수사활동비 .....	122
12. 시설물 안전점검 교육 .....	124
13. 안전관리자문단 운영 .....	126
14. 시설물 안전점검 업무수행여비 .....	128
15. 안전점검 장비 구입 .....	130
16.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 .....	132
17.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인건비 .....	134
18.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 .....	136
19. 안전점검의 날 홍보물 구입 및 리플릿 인쇄 등 .....	138



##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운영

정책사업	사회재난 대응역량 강화
단위사업	재난관리체제 확립
세부사업	재난안전 민관협력체계 구축
통 계 목	사무관리비 (201-01)

###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충청남도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운영 지원으로 지역안전관리 전문성 강화
- 사업 위치 : 충청남도
- 사업 기간 : 2021.1.1. ~ 2021.12.31.(다년도 계속사업)
- 예 산 액 : **6,936천원**
- 사 업 량 : 재난 발생 시 또는 민관협력방안 협의 필요 시 수시 회의 개최 등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도지사
- 사업 내용 : 재난의 효과적인 예방·대응·복구를 위한 유기적인 민-관 협력방안 논의 및 재난 발생 시 신속하게 투입할 수 있는 인력 및 자원 발굴·육성
  - (평 시) 재난 시 단체별 협력방안 논의 및 역할 정립, 상시 재난·안전사고 예방활동 수행
  - (재난 시) 신속한 인명구조·수색, 현장 수습·복구 및 이재민 지원 등을 위한 재난대응 활동 전개
- 지원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2조의2 제2항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2조의2(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②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지역 차원의 민관 협력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시·도 또는 시·군·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지역민관협력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	비 고
산출 기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운영 : 6,936천원 (※정기 2회 기준)</li> <li>○ 위원회 참석수당 : 4,928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참석수당 : 100천원(기본 2시간) × 22명(위촉직) × 2회 = 4,400천원</li> <li>· 교통비 : 12천원(왕복) × 22명(위촉직) × 2회 = 528천원</li> </ul> </li> <li>○ 기타 : 2,008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회의자료 제작비 등 : 15천원 × 30부 × 2회 = 900천원</li> <li>· 사무용품 및 차재료 등 : 1,108천원</li> </ul> </li> </ul>	
총사업비	6,936천원(도비 6,936)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예산액(A)	전년도 당초예산액(B)	증감(A-B)		
계	6,936	-	6,936	8,100	△1,164	-	계속
국 비	-	-	-	-	-	-	
도 비	6,936	-	6,936	8,100	△1,164	-	
시군비	-	-	-	-	-	-	
기 타	-	-	-	-	-	-	

\* :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7,000	4,291	2,709	61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1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재난안전실	사회재난과	사회재난대응팀	김상태 (행) 2180	정병우 (행) 3271	이태현 (행) 3284

<b>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b> <b>(광역·기초단위 현장종합훈련 지원)</b>	정책사업	사회재난 대응역량 강화
	단위사업	재난관리체제 확립
	세부사업	광역 및 기초단위 현장종합훈련지원
	통 계 목	행사운영비(201-03)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08-01)

##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대규모 재난대비 실전훈련으로 범국가적 총력 재난대응체계 확립
- 사업 위치 : 충청남도 15시군
- 사업 기간 : 2021.1.1.~2021.12.31.(다년도 계속사업)
- 예 산 액 : **121,453천원**
- 사 업 량 : 토론기반훈련 및 실행기반훈련 실시(15 시군)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도지사, 시장군수
- 사업 내용 : 15 시군 / 지역별 대규모 재난대비 훈련실시로 범국가적 재난대응체계 종합점검
- 지원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5조

**제35조(재난대비훈련 실시)** ① 행정안전부장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및 긴급구조기관(이하 이 조에서 "훈련주관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재난관리 책임기관, 긴급구조지원기관 및 군부대 등 관계 기관(이하 이 조에서 "훈련참여기관"이라 한다)과 합동으로 재난대비 훈련(제34조의5에 따른 위기관리 매뉴얼의 숙달훈련을 포함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	비 고
산출 기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행사운영비 : 65,000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비 : 국비 32,500천원, 도비 32,500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앙-도 연계 합동훈련) 행사장비 임차, 인쇄비, 홍보물, 강사료(전문가 자문) 등</li> </ul> </li> </ul> </li> <li>■ 자치단체경상보조금 : 86,850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비 : 국비 43,425천원, 도비 13,028천원, 시군비 30,397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컨설팅 참석수당 : 100천원 × 5명 × 2회 = 1,000천원</li> <li>· 시설·장비 임차(천막 등) : 2,000천원 × 1식 = 2,000천원</li> <li>· 홍보물 제작(플래카드, 현수막, 입간판 등) : 350천원 × 1식 = 350천원</li> <li>· 인쇄비(책자) : 5천원 × 50부 × 4회 = 1,000천원</li> <li>· 훈련참가자 급식 : 8천원 × 40명 × 2회 = 640천원</li> <li>· 훈련참가자(민간) 실비보상금 : 20천원 × 40명 = 800천원 ∴ 5,790천원 × 15시군 = 86,850천원</li> </ul> </li> </ul> </li> </ul>	
총사업비	151,850천원(국비 75,925, 도비 45,528, 시군비 30,397)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예산액(A)	전년도 당초예산액(B)	증감(A-B)		
계	151,850	-	151,850	151,850	-	-	계속
국 비	75,925	-	75,925	75,925	-	-	
도 비	45,528	-	45,528	45,528	-	-	
시군비	30,397	-	30,397	30,397	-	-	
기 타	-	-	-	-	-	-	

\* : ( 50%, 50%), ( 50%, 15%, 35%)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121,453	106,434	15,019	87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1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재난안전실	사회재난과	사회재난대응팀	김상태 (행) 2180	정병우 (행) 3271	이영우 (행) 3285

<b>사회재난대응 및 대비훈련</b>	정책사업	사회재난 대응역량 강화
	단위사업	재난관리체제 확립
	세부사업	재난대응훈련
	통 계 목	사무관리비 (201-01)

##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대규모 재난대비 실전훈련 및 실제 사회재난대응·복구를 통한 재난대응체계 확립
- 사업 위치 : 충청남도
- 사업 기간 : 2021.1.1.~2021.12.31.(다년도 계속사업)
- 예 산 액 : **15,300천원**
- 사 업 량 : 사회재난대응 및 재난대비훈련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도지사
- 사업 내용 : 대규모 재난대비 범국가적 재난대응체계 종합점검
- 지원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5조

**제35조(재난대비훈련 실시)** ① 행정안전부장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및 긴급구조기관(이하 이 조에서 "훈련주관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재난관리 책임기관, 긴급구조지원기관 및 군부대 등 관계 기관(이하 이 조에서 "훈련참여기관"이라 한다)과 합동으로 재난대비 훈련(제34조의5에 따른 위기관리 매뉴얼의 숙달훈련을 포함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	비 고
산출 기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무관리비 : 15,300천원(도비 100%)</li> <li>- 전문가 자문료 : 300천원 × 1명 × 10회 = 3,000천원</li> <li>- 회의장 임차료 : 1,500천원 × 2회 = 3,000천원</li> <li>- 재난대응훈련 책자 제작 : 10천원 × 50부 × 2회 = 1,000천원</li> <li>- 홍보물 제작(플래카드, 배너 등) 제작 : 100천원 × 5개 × 10회 = 5,000천원</li> <li>- 사회재난대응복구 임차 등 : 550천원 × 6회 = 3,300천원</li> </ul>	
총사업비	15,300천원(도비 15,300)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예산액(A)	전년도 당초예산액(B)	증감(A-B)		
계	15,300	-	15,300	17,496	△2,196	-	
국 비	-	-	-	-	-	-	
도 비	15,300	-	15,300	17,496	△2,196	-	
시군비	-	-	-	-	-	-	
기 타	-	-	-	-	-	-	

\* :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19,440	18,929	-	97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1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재난안전실	사회재난과	사회재난대응팀	김상태 (행) 2180	정병우 (행) 3271	이영우 (행) 3285

<b>재난대비 종합대응훈련(시·군)</b>	정책사업	사회재난 대응역량 강화
	단위사업	재난관리체제 확립
	세부사업	재난대비 종합대응훈련 추진
	통 계 목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08-01)

##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소관 분야별 시군 연계 통합훈련 또는 시군 자체 종합훈련으로 재난대응 역량강화
- 사업 위치 : 충청남도
- 사업 기간 : 2021. 1. 1. ~ 2021. 12. 31.(다년도 계속사업)
- 예 산 액 : 45,000천원
- 사 업 량 : 15회(시군별 연 1회 이상)
-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시장군수
- 사업 내용 : 재난대비 민관합동 종합대응 현장훈련 실시
- 지원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5조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5조(재난대비훈련 실시)

- ① 행정안전부장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및 긴급구조기관(이하 이 조에서 "훈련주관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재난관리책임기관, 긴급구조지원기관 및 군부대 등 관계 기관(이하 이 조에서 "훈련참여기관"이라 한다)과 합동으로 재난대비훈련(제34조의5에 따른 위기관리 매뉴얼의 숙달훈련을 포함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	비 고
산출 기초	<b>▣ 자치단체경상보조금(도-시군 연계 훈련) : 150,000천원(교부세 45,000, 시·군비 105,000)</b> - 시설·장비 임차(천막 등) : 2,000천원 × 1식 = 2,000천원 - 홍보물 제작(플래카드, 입간판 등) : 350천원 × 1식 = 350천원 - 명찰, 상황판 등 기타 소모물품 : 500천원 × 1식 = 700천원 - 인쇄비(책자) : 5천원 × 155부 × 2회 = 1,550천원 - 훈련참가자 급식 : 8천원 × 150명 × 2회 = 2,400천원 - 훈련참가자(민간) 실비보상금 : 20천원 × 150명 = 3,000천원 ⇒ 총액 : 10,000천원(1개 시·군 산출기초 예시) ∴ 10,000천원 × 15시·군 = 150,000천원	
총사업비	150,000천원(도비 45,000, 시군비 105,000)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예산액(A)	전년도 당초예산액(B)	증감(A-B)		
계	150,000	-	150,000	150,000	-	-	계속
국 비	45,000	-	45,000	45,000	-	-	소방
도 비	-	-	-	-	-	-	
시군비	105,000	-	105,000	105,000	-	-	
기 타	-	-	-	-	-	-	

\* : 30%, 7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45,000	45,000	-	100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1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재난안전실	사회재난과	사회재난대응팀	김상태 (행) 2180	정병우 (행) 3271	이영우 (행) 3285

<b>민관협력 기능별 재난예방 및 대응 활동</b>	정책사업	사회재난 대응역량 강화
	단위사업	재난관리체제 확립
	세부사업	재난안전 네트워크 활성화
	통 계 목	사무관리비(201-01), 행사실비지원금(301-09)

##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민관협력 기능별 재난안전 교육·훈련 계획('16년 수립)에 따라, 재난 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상시 네트워크 활성화로 민·관 공동대응 협조체계 강화
- 사업 위치 : 충청남도
- 사업 기간 : 2021. 1. 1. ~ 2021. 12. 31.(다년도 계속사업)
- 예 산 액 : **22,400천원**
- 사 업 량 : 민관협력 기능별 교육·훈련 등 3회 이상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도지사
- 사업 내용 : 재난·안전사고 시 신속한 인명 구조 및 시설 응급복구 등을 위한 민관협력 기능 숙달을 위해 민간단체 등 교육·훈련(위기유형별 특성에 따른 현장·토론훈련 등) 실시
- 지원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 제1항 및 제4항

### 제66조의4(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의 추진)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안전문화활동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1. 안전교육 및 안전훈련(응급상황시의 대처요령을 포함한다)
2.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 및 홍보
3. 안전행동요령 및 기준·절차 등에 관한 지침의 개발·보급
4. 안전문화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
5. 안전 관련 통계 현황의 관리·활용 및 공개
6. 안전에 관한 각종 조사 및 분석
- 6의2. 안전취약계층의 안전관리 강화
7. 그 밖에 안전문화를 진흥하기 위한 활동 (②~③항 중략)

④ 국가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기관·단체에서 추진하는 안전문화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	비 고
산출 기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무관리비 : 18,800천원</li> <li>○ 위기유형별 재난대응훈련 2회 : 8,000천원 × 2회 = 16,000천원</li> <li>※ 주로 시설·장비 임차료, 소모품 구입비, 책자 인쇄비 등으로 구성</li> <li>○ 민관협력 기능별 전문교육·워크숍 등 1회 : 2,800천원 × 1회 = 2,800천원</li> <li>※ 주로 시설 임차료, 강사료, 자료 제작비 등으로 구성</li> <li>■ 행사실비보상금 : 3,600천원</li> <li>○ 민관협력 기능별 재난예방 및 대응 활동 참여자 급량비 : 8천원×150명×3회=3,600천원</li> </ul>	
총사업비	22,400천원(국비 22,400)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예산액(A)	전년도 당초예산액(B)	증감(A-B)		
계	22,400	-	22,400	23,000	△600	-	
국 비	22,400	-	22,400	23,000	△600	-	소방
도 비	-	-	-	-	-	-	
시군비	-	-	-	-	-	-	
기 타	-	-	-	-	-	-	

\* :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20,500	20,301	199	99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1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재난안전실	사회재난과	사회재난대응팀	김상태 (행) 2180	정병우 (행) 3271	이태현 (행) 3284

<b>국가안전대진단 안전점검 내실화</b>	정책사업	사회재난 대응역량 강화
	단위사업	재난관리체제 확립
	세부사업	국가안전대진단 안전점검 내실화
	통 계 목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08-01)

##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국가안전대진단 시 각 분야별 민간전문가 활용으로 안전점검 내실화
- 사업 위치 : 15개 시·군
- 사업 기간 : 2021.1.1.~2021.12.31.(다년도 계속사업)
- 예 산 액 : **30,000천원**
- 사 업 량 : 안전점검 125회
-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시장군수
- 사업 내용 : 국가안전대진단 시 각 분야별(건축, 전기, 기계, 가스 등) 민간전문가 안전점검비용 확보 지원, 민간전문가 활용으로 안전점검 전문성, 실효성 제고 및 내실화
- 지원근거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소규모 공공시설의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안전점검의 실시)

① 관리주체는 소관 시설물의 안전과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시설물의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소규모 공공시설의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소규모 공공시설의 안전점검 등)

① 관리청은 관할구역 안에 있는 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청인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도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할 경우에는 시설별 관계 전문가를 위촉하여 합동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	비 고
산출 기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안전대진단 안전점검 내실화</li> <li>○ 사업비 : 교부세 30,000천원(30%), 사군비 70,000천원(70%)</li> <li>○ 내용(민간전문가 점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간전문가 4명 × 125회(15 시·군) × 200천원 = 100,000천원</li> <li>※ 분야별 전문분야: 전기, 기계, 건축, 가스 등 / 1회당 5개소</li> </ul> </li> </ul>	
총사업비	100,000천원(국비 30,000, 시군비 70,000)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예산액(A)	전년도 당초예산액(B)	증감(A-B)		
계	100,000	-	100,000	100,000	-	-	
국 비	30,000	-	30,000	30,000	-	-	소방
도 비	-	-	-	-	-	-	
시군비	70,000	-	70,000	70,000	-	-	
기 타	-	-	-	-	-	-	

\* : 30%, 7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30,000	-	30,000	-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1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재난안전실	사회재난과	사회재난대응팀	김상태 (행) 2180	정병우 (행) 3271	신영택 (행) 3282

<b>특별사법경찰 운영 및 홍보</b>	정책사업	민생안전구현
	단위사업	민생사법경찰 지원단 운영
	세부사업	서민생활 보호 및 법질서 확립
	통 계 목	사무관리비(201-01)

##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민생 6대 분야에 대한 효율적인 단속 등으로 서민생활 안정 및 법질서 확립
- 사업 기간 : 2021. 1. 1. ~ 2021. 12. 31.(다년도 계속사업)
- 예 산 액 : **15,725천원**
- 사 업 량 : 매뉴얼 제작 등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도지사
- 사업 내용 : 특별사법경찰 활동 운영 및 단속 매뉴얼 제작 등
- 지원근거 : 충청남도과 대전지방검찰청 간 서민생활보호 및 법 질서 확립을 위한 협약서 제1호, 제3호, 제5호

### 충청남도와 대전지방검찰청 간 서민생활보호 및 법 질서 확립을 위한 협약서 제1호, 제3호, 제5호

1. 충청남도와 대전지방검찰청은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법과 질서를 지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법질서 확립이 국가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발전의 초석임을 인식하며 법질서 확립을 위한 각종 정책 수립 및 집행에 있어 상호 협력한다.
3. 충청남도와 관내 16개 사군은 특별사법경찰의 업무분야가 민생분야로 확대됨에 따라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도의 특별사법경찰지원단과 사군의 전담부서를 설치 운영한다.
5. 충청남도와 대전지방검찰청은 본 협약의 내실있는 이행과 협력강화를 위하여 사군과 관할 지청간의 실무협의체 구성, 지역별 특별사법경찰의 특화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적극 지원한다.

##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	비 고
산출 기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별사법경찰 홍보 및 운영 등 : 15,725천원</li> <li>○ 특별사법경찰 운영 및 홍보 : 9,115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별사법경찰 매뉴얼 제작 : 2,500천원</li> <li>- 특별사법경찰 운영 등 : 6,615천원</li> <li>• 일반 사무용품 구입 : 2,215천원</li> <li>• 차재료 구입 : 1,600천원</li> <li>• 복사용지(A4 및 A3) 구입 : 800천원</li> <li>• 토너 교체 등 = 2,000천원</li> </ul> </li> <li>○ 특별사법경찰 특근급식비 : 6,610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8천원 × 11.5일 × 6명 × 12개월 = 6,610천원</li> </ul> </li> </ul>	
총사업비	15,725천원(도비 15,725)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예산액(A)	전년도 당초예산액(B)	증감(A-B)		
계	15,725	-	15,725	27,306	△11,581	-	계속
국 비	15,725	-	15,725	27,306	△11,581	-	
도 비	-	-	-	-	-	-	
시군비	-	-	-	-	-	-	
기 타	-	-	-	-	-	-	

\* :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27,306	19,760	7,546	72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1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재난안전실	사회재난과	민생사법경찰팀	김상태 (행) 2180	송선희 (행) 3105	김성미 (행) 2184

<b>특별사법경찰 직무교육 및 워크숍</b>	정책사업	민생안전구현
	단위사업	민생사법경찰 지원단 운영
	세부사업	서민생활 보호 및 법질서 확립
	통 계 목	행사운영비(201-03)

##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대전지방검찰청 및 5개 지청 관계자와의 수사 공조체계 구축 및 도, 시·군 특사경 등과 단속사례 공유 및 수사 역량강화
- 사업 기간 : 2021. 1. 1. ~ 2021. 12. 31.(다년도 계속사업)
- 예 산 액 : 4,050천원
- 사 업 량 : 워크숍 1회 등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도지사
- 사업 내용 : 도 및 시·군의 특사경에게 연 1회 직무능력 향상교육 및 워크숍 실시
- 지원근거 : 충청남도과 대전지방검찰청 간 서민생활보호 및 법 질서 확립을 위한 협약서 제4호 및 제6호

### 충청남도과 대전지방검찰청 간 서민생활 보호 및 법 질서 확립을 위한 협약서 제4호 및 제5호

4. 대전지방검찰청과 관내 5개 지청은 충청남도 특별사법경찰의 단속활동이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특별사법경찰의 역량 제고 및 수사활동 강화에 적극 협력한다.
6. 충청남도과 대전지방검찰청은 본 협약의 실행에 따른 단속반 편성 운영, 교육 및 활동 계획, 검사파견, 단속활동 지휘 감독 등 특별사법경찰 활동 전반에 대하여 상호 협력한다.

##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	비 고
산출 기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별사법경찰 직무교육 및 워크숍 : 4,050천원</li> <li>○ 특별사법경찰 직무교육 및 워크숍 : 4,050천원</li> </ul>	
총사업비	4,050천원(도비 4,050)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예산액(A)	전년도 당초예산액(B)	증감(A-B)		
계	4,050	-	4,050	9,000	△4,950	-	계속
국 비	4,050	-	4,050	9,000	△4,950	-	
도 비	-	-	-	-	-	-	
시군비	-	-	-	-	-	-	
기 타	-	-	-	-	-	-	

\* :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9,000	5,372	3,628	60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1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재난안전실	사회재난과	민생사법경찰팀	김상태 (행) 2180	송선희 (행) 3105	허지연 (행) 3134

<b>특별사법경찰 업무수행여비</b>	정책사업	민생안전구현
	단위사업	민생사법경찰 지원단 운영
	세부사업	서민생활 보호 및 법질서 확립
	통 계 목	국내여비(202-01)

##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도 및 시·군 특사경의 효율적인 단속으로 서민생활 안정 및 법질서 확립
- 사업 기간 : 2021. 1. 1. ~ 2021. 12. 31.(다년도 계속사업)
- 예 산 액 : **13,770천원**
- 사 업 량 : 1식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도지사
- 사업 내용 : 민생6대 분야에 대한 테마별 시군교차 합동단속 추진
- 지원근거
  - 특별사법경찰관리 직무규칙 제4조 및 특별사법경찰관리 직무규칙 제10조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
  - 충청남도과 대전지방검찰청 간 서민생활보호 및 법 질서 확립을 위한 협약서 제2호

### 특별사법경찰관리 직무규칙 제4조(관할)

특별사법경찰관리는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관할구역 안에서 직무를 행한다.

### 특별사법경찰관리 직무규칙 제10조(합동단속반의 설치·운영 등)

① 지방검찰청 검사장이나 지청장은 특정사범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필요가 있거나 특정사범에 대한 일반사법경찰관리와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중복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특정사범에 대한 합동단속반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검사장의 지명에 의한 사법경찰관리)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자로서 그 소속 관서의 장의 제청에 의하여 그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검사장이 지명한 자 중 7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및 소방위 또는 지방소방위 이상의 소방공무원은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8급·9급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및 소방장 또는 지방소방장 이하의 소방공무원은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 충청남도과 대전지방검찰청 간 서민생활보호 및 법 질서 확립을 위한 협약서 제2호

2. 충청남도과 대전지방검찰청은 2008년 9월 1일 양기관간 체결한 협약정신을 계승발전시켜 2009년 7월부터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를 포함한 식품, 청소년 보호, 환경, 공중위생 등 민생분야에 대한 행정기관과 검찰간 협약체계를 더욱 확대강화한다.

##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	비 고
산출 기초	■ 특별사법경찰 업무수행여비 ○ 특별사법경찰 업무수행여비 : 13,770천원 • 1,148천원 × 12월 = 13,770천원	
총사업비	13,770천원(도비 13,770)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예산액(A)	전년도 당초예산액(B)	증감(A-B)		
계	13,770	-	13,770	16,200	△2,430	-	계속
국 비	13,770	-	13,770	16,200	△2,430	-	
도 비	-	-	-	-	-	-	
시군비	-	-	-	-	-	-	
기 타	-	-	-	-	-	-	

\* :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16,200	16,146	54	100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1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재난안전실	사회재난과	민생사법경찰팀	김상태 (행) 2180	송선희 (행) 3105	김성미 (행) 2184

<b>특별사법경찰 시책지원</b>	정책사업	민생안전구현
	단위사업	민생사법경찰 지원단 운영
	세부사업	서민생활 보호 및 법질서 확립
	통 계 목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3-03)

##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특사경 단속지도 및 수사관련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
- 사업 기간 : 2021. 1. 1. ~ 2021. 12. 31.(다년도 계속사업)
- 예 산 액 : **8,550천원**
- 사 업 량 : 1식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도지사
- 사업 내용 : 특사경 시책업무추진에 따른 간담회 개최 등
- 지원근거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4조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4조(기준경비)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용과 지방자치단체간 재정운용의 균형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업무추진비의 기준경비는 별표 2와 같다.

[별표2] 업무추진비 중 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① 편성방법 : 단체별 예산편성기준액을 상한액으로 하여 경비의 목적에 따라 해당부서의 정책사업에 포함하여 편성(일반 및 기타특별회계를 포함한 상한액)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44조제2항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집행

##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	비 고
산출 기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별사법경찰 시책지원 : 8,550천원</li> <li>○ 특별사법경찰 시책지원 : 8,550천원</li> <li>- 713천원 × 12월 = 8,550천원</li> </ul>	
총사업비	8,550천원(도비 8,550)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예산액(A)	전년도 당초예산액(B)	증감(A-B)		
계	8,550	-	8,550	11,400	△2,850	-	계속
국 비	8,550	-	8,550	11,400	△2,850	-	
도 비	-	-	-	-	-	-	
시군비	-	-	-	-	-	-	
기 타	-	-	-	-	-	-	

\* :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11,400	10,325	1,075	91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1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재난안전실	사회재난과	민생사법경찰팀	김상태 (행) 2180	송선희 (행) 3105	김성미 (행) 2184

<b>특별사법경찰 수사활동비</b>	정책사업	민생안전구현
	단위사업	민생사법경찰 지원단 운영
	세부사업	서민생활 보호 및 법질서 확립
	통 계 목	특정업무경비 (204-03)

##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특별사법경찰 수사업무 직무수행자에게 수사활동비 지급으로 사기진작 및 자긍심 고취
- 사업 기간 : 2021. 1. 1. ~ 2021. 12. 31.(다년도 계속사업)
- 예 산 액 : **14,400천원**
- 사 업 량 : 1식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도지사
- 사업 내용 : 민생사법경찰팀의 특별사법경찰 직무수행자에 대한 수사활동비 지급
- 지원근거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4조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4조(기준경비)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용과 지방자치단체간 재정운용의 균형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업무추진비의 기준경비는 별표 2와 같다.

[별표2] 업무추진비 중 6. 특정업무경비

- ① 경비성격 : 특수업무담당분야에 근무하는 자에 대한 활동비로 월정액으로 지급

##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	비 고
산출 기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별사법경찰 수사활동비 : 14,400천원</li> <li>○ 특별사법경찰 수사활동비: 14,400천원</li> <li style="padding-left: 20px;">- 200천원/월 × 6명 × 12월 = 14,400천원</li> </ul>	
총사업비	14,400천원(도비 14,400)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예산액(A)	전년도 당초예산액(B)	증감(A-B)		
계	14,400	-	14,400	14,400	-	-	계속
국 비	14,400	-	14,400	14,400	-	-	
도 비	-	-	-	-	-	-	
시군비	-	-	-	-	-	-	
기 타	-	-	-	-	-	-	

\* :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14,400	14,400	-	100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1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재난안전실	사회재난과	민생사법경찰팀	김상태 (행) 2180	송선희 (행) 3105	김성미 (행) 2184

<b>시설물 안전점검 교육</b>	정책사업	시설물재난예방
	단위사업	시설물안전관리
	세부사업	취약시설물 안전점검 등
	통 계 목	사무관리비 (201-01)

##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재난취약시기(해빙기, 우기철, 동절기 등)에 맞추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전교육을 통하여 공사장, 축대, 옹벽 등 안전점검 요령 및 대처방법 등을 숙지함으로써 사고 최소화
- 사업 위치 : 15개 시·군 및 건설공사장 안전관리자 등
- 사업 기간 : 2021. 1. 1. ~ 12. 31. (다년도 계속사업)
- 예 산 액 : **5,100천원**
- 사 업 량 : 연 3회(해빙기 대비, 우기 대비, 동절기 대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도지사
- 사업 내용 : 지자체 및 관련분야 업무 공무원 및 건설공사 현장 안전관리자 등을 위한 계절별 맞춤형 안전교육
- 지원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75조

### 충청남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제39조(재난안전분야 종사자의 교육 및 훈련)

도지사는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지역주민, 관련단체를 대상으로 재난 및 안전과 관련한 교육을 시행할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안전관련 기관 및 단체에 교육 및 훈련을 위탁할수 있다.

##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	비 고
산출 기초	<b>■ 안전교육수행</b> ○ 강사료, 보상금, 원고료 등(3회중 2회는 무료 강의) · 강사료 (2시간 강사료 강사A 370천원 * 1명 + 강사B 220천원 * 1명) = 590천원 · 보상금 60천원(일비+식비+교통비) * 2명 * 1회 = 120천원 · 원고료 6매 * 5천원 * 2시간 * 2명 * 1회 = 120천원 ○ 홍보물 제작 및 교육교재 인쇄비 등 · 교육교재(8천원 * 150부 * 3회) + 현수막 등 (250천원 * 3회) = 4,350천원 ※ 총 금액 : 5,180천원 (≒ 5,100천원)	
총사업비	5,100천원(도비 5,100)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예산액(A)	전년도 당초예산액(B)	증감(A-B)		
계	5,100	-	5,100	6,300	△1,200	-	계속
국 비	-	-	-	-	-	-	
도 비	5,100	-	5,100	6,300	△1,200	-	
시군비	-	-	-	-	-	-	
기 타	-	-	-	-	-	-	

\* :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6,300	6,300	-	100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1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재난안전실	사회재난과	시설안전점검팀	김상태 (행) 2180	구기명 (행) 3272	강동훈 (행) 3275

<b>안전관리자문단 운영</b>	정책사업	시설물재난예방
	단위사업	시설물안전관리
	세부사업	취약시설물 안전점검 등
	통 계 목	사무관리비 (201-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시설물안전법 대상시설 및 생활주변 안전사고 사전예방을 위한 정기, 수시, 특별 점검 등을 시행함에 있어 공공·민간 전문가를 안전점검 등 참여시켜 점검의 내실화를 도모함과 아울러, 유사시 안전 분야에 대한 정책 자문 등을 구함으로서 안전충남 건설
- 사업 위치 : 충남도내 15개 시·군
- 사업 기간 : 2021. 1. 1. ~ 12. 31. (다년도 계속사업)
- 예 산 액 : **8,500천원**
- 사 업 량 : 시설물안전법 대상시설, 재난취약계층 소규모시설 점검 참여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도지사
- 사업 내용 : 시설물안전법 대상시설, 계절별(해빙기,우기,동절기,명절,행락철,여름철 등), 도민안전점검 청구에 따른 합동안전점검
- 지원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75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75조(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운영)**  
 ① 지방자치단체의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기술적 자문을 위하여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안전관리자문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충청남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제33조(안전관리자문단의 설치)**  
 도지사는 법 제75조 제2항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기술적인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안전관리자문단 (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	비 고
산출 기초	■ 안전관리자문단 참여수당 ○ 재난취약시기별 대상시설 안전점검 등 · 안전자문단 {(1명 * 5일) * 6회} * 19,4천원 = 5,820천원 ○ 도민안전점검 청구제에 따른 안전점검 등 · 안전자문단 {(1명 * 1일) * 14회} * 19.4천원 = 2,716천원 ※ 총 금액 : 8,536천원 (= 8,500천원)	
총사업비	8,500천원(도비 8,500)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예산액(A)	전년도 당초예산액(B)	증감(A-B)		
계	8,500	-	8,500	9,900	△1,400	-	계속
국 비	-	-	-	-	-	-	
도 비	8,500	-	8,500	9,900	△1,400	-	
시군비	-	-	-	-	-	-	
기 타	-	-	-	-	-	-	

\* :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9,900	9,897	2.7	99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1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재난안전실	사회재난과	시설안전점검팀	김상태 (행) 2180	구기명 (행) 3272	김남석 (행) 2182

<b>시설물 안전점검 업무수행여비</b>	정책사업	시설물재난예방
	단위사업	시설물안전관리
	세부사업	취약시설물 안전점검 등
	통 계 목	국내여비 (202-01)

##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거 정기 안전점검 및 긴급 안전점검 등 업무 수행을 원활히 추진함으로써 안전 충남 구현
- 사업 위치 : 충남도내 15개 시.군
- 사업 기간 : 2021. 1. 1. ~ 12. 31. (다년도 계속사업)
- 예 산 액 : **7,650천원**
- 사 업 량 : 시설물안전법 1, 2종대상 3,309개소, 3종 대상 1,449개소 등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도지사
- 사업 내용 : 시설물안전법 대상시설 및 다중이용시설, 물놀이시설 등에 대한 법적 정기 안전점검 및 행정지도를 수행하고, 생활주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승강기 및 시설물 안전관리 등록업체에 대한 행정지도 감독 업무 수행 등을 통한 안전사고 미연 방지
- 지원근거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시행령 8조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안전점검의 실시)

① 관리주체는 소관 시설물의 안전과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시설물의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 (안전점검의 실시 등)

① 법 제11조1항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는 안전점검의 수준은 시설물의 종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 :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2. 제3종시설물 : 정기안전점검

##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	비 고
산출 기초	<input checked="" type="checkbox"/> 안전점검 추진 국내여비 ○ 638천원 × 12개월 = 7,650천원	
총사업비	7,650천원(도비 7,650)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예산액(A)	전년도 당초예산액(B)	증감(A-B)		
계	7,650	-	7,650	9,000	△1,350	-	계속
국 비	-	-	-	-	-	-	
도 비	7,650	-	7,650	9,000	△1,350	-	
시군비	-	-	-	-	-	-	
기 타	-	-	-	-	-	-	

\* :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9,000	9,000	-	100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1년 (2021~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재난안전실	사회재난과	시설안전점검팀	김상태 (행) 2180	구기명 (행) 3272	김남석 (행) 2182

<b>안전점검 장비 구입</b>	정책사업	시설물재난예방
	단위사업	시설물안전관리
	세부사업	취약시설물 안전점검 등
	통 계 목	자산취득비 (405-01)

##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시설물 안전점검을 위해 보유하고 있던 안전점검 장비의 내구연한 초과로 인한 장비 미작동 등으로 검·교정이 불가한 장비를 새로 구입하여 시설안전점검을 통한 시설물의 효율을 증진시킴으로써 도민의 안전을 확보
- 사업 위치 : 충청남도 전역
- 사업 기간 : 2021. 1. 1. ~ 12. 31. (단년도 사업)
- 예 산 액 : **1,500천원**
- 사 업 량 : 1 식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도지사
- 사업 내용 : 복합가스측정기, 거리측정기 구입(가스 누출 여부 검사 등 안전점검 업무 효율 증진)
- 지원 근거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0조(재난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점검 등)제1항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긴급안전점검의 실시)제1항 및 제2항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0조(재난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점검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재난관리책임기관(행정기관만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지역에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긴급한 사유가 있으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긴급안전점검을 하게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다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긴급안전점검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긴급안전점검의 실시)

①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붕괴·전도 등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시설물의 구조상 공중의 안전한 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긴급안전점검을 하게 하거나 해당 관리주체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를 따라야 한다.

<개정 2020. 6. 9.>

##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	비 고
산출 기초	<input checked="" type="checkbox"/> 안전점검 장비 구입 · 복합가스측정기 ≍ 1,000천원 · 거 리 측 정 기 ≍ 500천원	
총사업비	1,500천원(도비 1,500)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예산액(A)	전년도 당초예산액 (B)	증감(A-B)		
계	1,500	-	1,500	-	1,500	-	신규
국 비	-	-	-	-	-	-	
도 비	1,500	-	1,500	-	1,500	-	
시군비	-	-	-	-	-	-	
기 타	-	-	-	-	-	-	

\* :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	-	-	-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1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재난안전실	사회재난과	시설안전점검팀	김상태 (행) 2180	구기명 (행) 3272	김남석 (행) 2182

<b>물놀이 안전시설 설치</b>	정책사업	생활재난예방
	단위사업	생활안전관리
	세부사업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
	통 계 목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08-01

##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물놀이 관리지역 및 위험구역(내수면)에 대하여 물놀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 시설 정비 및 확충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감으로써 인명피해 최소화
- 사업 위치 : 6개 시·군(천안,공주,서산,논산,금산,청양) / 내수면
- 사업 기간 : 2021.1월 ~ 9월(다년도 계속사업)
- 예 산 액 : **15,212천원**
- 사 업 량 : 물놀이 안전시설물 정비 및 보강(116점)
-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시장군수
- 사업 내용 : 물놀이 위험표지판, 이동식 거치대, 인명구조함, 구조봉 등 안전시설 설치
- 지원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28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8조(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 등)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7조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조치 등에 필요한 지원 및 지도를 할 수 있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	비 고
산출 기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li> <li>○ 천안시 : 4점*462.5 ≒1,850(위험표지판2,인명구조함2)</li> <li>○ 공주시 : 9점*442.2 ≒3,980(인명구조함2,이동식거치대3,구조봉4)</li> <li>○ 서산시 : 2점*900 =1,800(위험표지판1, 인명구조함1)</li> <li>○ 논산시 : 15점*371 =5,566(인명구조함4,이동식거치대3,구조봉8)</li> <li>○ 금산군 : 68점*82.8 ≒5,630(위험표지판23,인명구조함27,이동식거치대13,구조봉5)</li> <li>○ 청양군 : 18점*254.2 ≒4,576(인명구조함3,구조봉15)</li> </ul>	
총사업비	23,402천원(국비 11,701, 도비 3,511, 시군비 8,190)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예산액(A)	전년도 당초예산액 (B)	증감(A-B)		
계	23,402	-	23,402	28,224	△4,822	-	계속
국 비	11,701	-	11,701	14,112	△2,411	-	
도 비	3,511	-	3,511	4,234	△723	-	
시군비	8,190	-	8,190	9,878	△1,688	-	
기 타	-	-	-	-	-	-	

\* : 50%, 15%, 35%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23,130	23,130	-	100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1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사회재난과	생활안전점검팀	김상태 (행) 2180	김희수 (행) 3273	윤용희 (행) 3276

<b>물놀이 안전관리요원 인건비</b>	정책사업	생활재난예방
	단위사업	생활안전관리
	세부사업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인건비
	통 계 목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08-01

##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물놀이 관리지역 및 위험구역(내수면)에 대하여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관리요원을 고정배치하여 순찰 및 익수사고 발생 시 즉시 대처토록 함으로써 인명피해 최소화
- 사업 위치 : 6개 시·군(천안,공주,서산,논산,금산,청양) / 내수면
- 사업 기간 : 2021.1월 ~ 9월(다년도 계속사업)
- 예 산 액 : **61,000천원**
- 사 업 량 : 물놀이 관리지역 32개소, 위험구역 13개소 / 안전관리요원 54명
-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시장군수
- 사업 내용 : 물놀이 관리지역에 물놀이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요원을 고정배치하여 지역 순찰 및 제한 구역 통제 활동 등 전개
- 지원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28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8조(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 등)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7조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조치 등에 필요한 지원 및 지도를 할 수 있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	비 고
산출 기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배치(안전관리대책기간 6.1.~8.31.)</li> <li>○ 천안시 : {(2명×2개소) × 78,100원 = 312,400원} × 50일 ≙ 15,633천원</li> <li>○ 공주시 : [(2명×2개소)+(1명×8개소)] × 78,100원 = 937,200원] × 50일 ≙ 46,867천원</li> <li>○ 서산시 : [(5명×1개소)+(4명×1개소)] × 78,100원 = 702,900원] × 39일 ≙ 27,433천원</li> <li>○ 논산시 : [(2명×2개소)+(1명×5개소)] × 78,100원 = 708,900원] × 50일 ≙ 35,147천원</li> <li>○ 금산군 : [(3명×2개소)+(2명×1개소)+(1명×3개소)] × 78,100원 = 859,100원] × 50일 ≙ 43,087천원</li> <li>○ 청양군 : [(5명×1개소)+(4명×1개소)] × 78,100원 = 708,900원] × 60일 ≙ 35,167천원</li> </ul>	
총사업비	203,333천원(도비 61,000, 시군비 142,333)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예산액(A)	전년도 당초예산액 (B)	증감(A-B)		
계	203,333	-	203,333	218,970	△15,637	-	계속
국 비	-	-	-	-	-	-	
도 비	61,000	-	61,000	65,691	△4,691	-	
시군비	142,333	-	142,333	153,279	△10,946	-	
기 타	-	-	-	-	-	-	

\* : 30%, 7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63,126	60,940	2,186	96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1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사회재난과	생활안전점검팀	김상대 (행) 2180	김희수 (행) 3273	윤용희 (행) 3276

<b>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b>	정책사업	생활재난예방
	단위사업	생활안전관리
	세부사업	승강기사고대응 합동훈련
	통 계 목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08-01)

##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생활주변 승강기에 대한 기계적 이해, 운용요령 및 승강기 간힘사고 발생 시 대처방법 등을 체험형 실전 모의 구조훈련을 통하여 숙지함으로써 인명피해 최소화
- 사업 위치 : 6개 시·군(보령, 서산, 계룡, 금산, 홍성, 태안)
- 사업 기간 : 2021.1월 ~ 12월(다년도 계속사업)
- 예 산 액 : **39,000천원**
- 사 업 량 : 승강기 사고 대응 훈련 6개 시·군
-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시장군수
- 사업 내용 : 생활주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승강기 사고를 대비하여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민·관 합동 훈련을 실시
- 지원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28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8조(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 등)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7조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조치 등에 필요한 지원 및 지도를 할 수 있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	비 고
산출 기초	■ 승강기 사고대응 훈련 ○ 보령시 : 1식 * 10,000 = 10,000,      ○ 서산시 : 1식 * 10,000 = 10,000 ○ 계룡시 : 1식 * 10,000 = 10,000,      ○ 금산군 : 1식 * 10,000 = 10,000 ○ 홍성군 : 1식 * 10,000 = 10,000,      ○ 태안군 : 1식 * 10,000 = 10,000	
총사업비	60,000천원(국비 30,000, 도비 9,000, 시군비 21,000)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예산액(A)	전년도 당초예산액 (B)	증감(A-B)		
계	60,000	-	60,000	90,000	△30,000	-	계속
국 비	30,000	-	30,000	45,000	△15,000	-	
도 비	9,000	-	9,000	18,000	△9,000	-	
시군비	21,000	-	21,000	27,000	△6,000	-	
기 타	-	-	-	-	-	-	

\* : 50%, 15%, 35%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30,000	28,253	1,747	94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1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사회재난과	생활안전점검팀	김상대 (행) 2180	김희수 (행) 3273	박순성 (행) 2183

<b>안전점검의 날 홍보물 구입 및 리플릿 인쇄 등</b>	정책사업	생활재난예방
	단위사업	생활안전관리
	세부사업	생활 안전점검 홍보
	통 계 목	사무관리비 (201-01)

##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안전점검의 날 인식제고 및 도민 안전의식 분기별 안전테마를 선정하여 재난취약요소 안전점검 및 도민 안전의식 고취
- 사업 위치 : 충청남도
- 사업 기간 : 2021.1월 ~ 12월(다년도 계속사업)
- 예 산 액 : **7,650천원**
- 사 업 량 : 매월 안전점검의 날 추진에 따른 도 합동 행사 분기별 추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도지사
- 사업 내용 : 안전점검의 날(매월 4일)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홍보자료 등 제작
- 지원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7 및 동법 시행령 제73조의6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7(국민안전의 날 등)

- ① 국가는 국민의 안전의식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4월 16일을 국민안전의 날로 정하여 필요한 행사 등을 한다.
- ② 국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의 안전의식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안전점검의 날과 방재의 날을 정하여 필요한 행사 등을 할 수 있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3조의6(안전점검의 날 등)

- ① 법 제66조의7에 따른 안전점검의 날은 매월 4일로 하고, 방재의 날은 매년 5월 25일로 한다.
- 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은 안전점검의 날에는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일제점검, 안전의식고취 등 안전관련 행사를 실시하고, 방재의 날에는 자연재난에 대한 주민의 방재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재난에 대한 교육·홍보 등의 관련 행사를 실시한다.
- ③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점검의 날 및 방재의 날 행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민안전처장관이 각각 정한다.

##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	비 고
산출 기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전점검의 날 행사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전점검의 날 홍보용품 및 시기별 안전관리 리플릿 인쇄 : 6,850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원(리플릿) × 6,000부 = 1,200천원</li> <li>· 10천원(생활안전용품 등 홍보용품) × 565개 = 5,650천원</li> </ul> </li> <li>○ 안전점검의 날 행사 용품 제작 : 800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400천원(현수막, 어깨띠 등) × 2회 = 800천원</li> </ul> </li> </ul> </li> </ul>	
총사업비	7,650천원(도비 7,650)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예산액(A)	전년도 당초예산액 (B)	증감(A-B)		
계	7,650	-	7,650	9,000	△1,350	-	
국 비	-	-	-	-	-	-	
도 비	7,650	-	7,650	9,000	△1,350	-	
시군비	-	-	-	-	-	-	
기 타	-	-	-	-	-	-	

\* :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4,500	4,500	-	100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1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사회재난과	생활안전점검팀	김상대 (행) 2180	김희수 (행) 3273	박순성 (행) 2183



# 자 연 재 난 과



# 자 연 재 난 과

1.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 146
2.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 .....148
3.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150
4. 조기경보 시스템 구축사업 .....152
5.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154
6. 자연재난대응훈련 추진 .....156
7. 자율방재단 장비보강 및 운영지원 .....158
8. 재해예방교육자료 인쇄 및 리플렛 제작 등 .....160
9. 재해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수당 등 .....162
10. 방재협회비 .....164
11. 풍수해보험사업 홍보 .....166
12. 풍수해보험료 지원 .....168

13. 우수저류시설 설치 .....	170
14. 시도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운영지원 ...	172
15. 재난안전대책본부상황실 일반수용비 ....	174
16. 재난안전관제시스템 유지보수 .....	176
17. 스마트 재난상황 통합 전파시스템 구축 보조 ...	178
18. 저희가 가려드릴게요(도민참여) .....	180
19.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지원사업 .....	182
20. 재난정보통신 장비 및 차량유지비 ....	184
21.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 구입 .....	186
22. 충청남도 재난안전포털 및 모바일 앱 홍보 ...	188
23. 재난관리기금 법정적립금 .....	190
24.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이자 상환 ....	192
25.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이자 상환 ....	194



<b>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b>	정책사업	자연재난 예방 및 복구지원
	단위사업	자연재난 예방 및 복구지원
	세부사업	재해위험지역정비 (시군자본)
	통 계 목	자치단체자본보조 (403-01)

##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재해발생 우려지역을 체계적으로 정비·관리하여 재해 사전예방 및 경감
- 사업 위치 : 도내 15개 시·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 사업 기간 : 1998년 ~ (다년도 계속사업)
- 예 산 액 : 38,058,800천원(전체 사업비 16,570억원)
- 사 업 량 : 재해위험 개선지구 28개소 (전체 154지구)
-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시장·군수
- 사업 내용 : 하천정비, 제방축조, 배수펌프장 설치 등
- 지원근거 :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제13조, 제14조

##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	비 고
산출 기초	<b>■ 재해위험지역 정비 (24지구) : 34,028,800(국·도비) / 18,323,200(시군비)</b> - 천안 마정지구 : 하천정비 4.4km = 1,950,000 / 1,050,000 - 천안 봉명지구 : 하천정비 4.15km, 펌프장 증설 1개소 = 1,950,000 / 1,050,000 - 천안 광기지구 : 하천정비 6.46km, 교량 7개소 = 1,950,000 / 1,050,000 - 천안 일봉중앙지구 : 우수관로 3.6km, 펌프장 1개소 = 1,950,000 / 1,050,000 - 천안 백석지구 : 하천정비 0.36km, 교량 2개소 = 2,164,500 / 1,165,500 - 공주 연암지구 : 하천정비 4.1km, 펌프장증설 1개소 = 637,000 / 343,000 - 공주 반촌지구 : 하천정비 1.8km, 교량 2개소, 취수보1개소 = 325,000 / 175,000 - 보령 송학지구 : 하천정비 2.1km, 펌프장 4개소 = 3,250,000 / 1,750,000 - 보령 두룡지구 : 하천정비 3.7km, 소하천 3개소, 우수관로 1km=1,040,000 / 560,000 - 보령 내항지구 : 교량 L=225m, 연결도로 L=885m = 585,000 / 315,000 - 보령 소성지구 : 해일방호벽 0.5km, 방호벽,방조제 1.08km, 예경보시설 1개소 = 910,000 / 490,000 - 아산 장재지구 : 배수펌프장(Q=300m <sup>3</sup> /분), 관거 L=125m = 390,000 / 210,000 - 아산 둔포2지구 : 배수펌프장2개소, 유입관거 1식 = 975,000 / 525,000 - 서산 소정지구 : 하천정비 6.1km 교량 12개소 = 1,300,000 / 700,000 - 서산 방길지구 : 하천정비 3.27km, 교량 7개소 = 780,000 / 420,000 - 논산 지산지구 : 배수관로정비 3.0km, 펌프증설 4개 = 1,950,000 / 1,050,000 - 당진 장고항지구 : 호안정비 L=1.5km = 715,000 / 385,000 - 금산 양지지구 : 하천정비 2.3km, 교량 2개소 = 812,500 / 437,500 - 서천 도마지구 : 하천정비 2.13km, 교량 5개소 = 1,950,000 / 1,050,000 - 청양 농소천지구 : 하천정비 5.0km, 교량 11개소 = 2,600,000 / 1,400,000 - 청양 산정지구 : 하천정비 5.0km, 교량 13개소 = 1,950,000 / 1,050,000 - 홍성 웅암지구 : 하천정비 0.6km, 교량 2개소 = 254,800 / 137,200 - 예산 시왕지구 : 하천정비 4.0km, 교량 7개소 = 3,250,000 / 1,750,000 - 예산 만사지구 : 하천정비 3.3km, 교량 8개소 = 390,000 / 210,000	

산출 기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풍수해 생활권 정비사업 (4지구) : 4,030,000(국·도비) / 2,170,000(시군비)</li> <li>- 천안 삼룡천지구 : 하천정비 L=1.0km, 소하천정비 2개소, 우수저류시설 18,000㎡, 토석류유입방지시설, 이주보상, 예경보시설 1식 = 1,300,000 / 700,000</li> <li>- 금산 금산지구 : 우수저류조 46,500㎡, 제방정비 490m, 우수관거 3,935m, 방재시설 1식= 1,300,000 / 700,000</li> <li>- 서산 반양지구 : 제방 7,261m, 교량 13개소, 배수펌프장·유수지 1개소, 용수관 1식, 소규모다목적방재시설 3개소 = 1,300,000 / 700,000</li> <li>- 예산 예산천지구 : 하천정비 L=2.01km, 교량 10개소, 배수펌프장 1개소, 우수관로 L=1.0km= 130,000 / 70,000</li> </ul>	
총사업비	58,552,000천원(국비 29,276,000, 도비 782,800, 시군비 20,493,200, 지역개발채권 8,000,000)	

###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본예산(A)	전년도본예산(B)	증감(A-B)		
계	652,701,000	81,653,000	58,552,000	47,584,000	10,968,000	512,496,000	
국 비	326,350,500	40,826,500	29,276,000	23,792,000	5,484,000	256,248,000	국고
도 비	89,905,150	12,247,950	782,800	7,136,200	△6,353,400	76,874,400	
시군비	228,445,350	28,578,550	20,493,200	16,655,800	3,837,400	179,373,600	
지역개발채권	8,000,000	-	8,000,000	-	8,000,000	-	

\* 보조율 : 국비 50%, 도비 15%, 시군비 35%

###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A)	집행액(B)	집행잔액(C=A-B)	집행률(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34,227,000	34,227,000	-	100%	-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1년 (2021~2025)	-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재난안전실	자연재난과	자연재난대응팀	김두기 (행) 2185	박상용 (행) 3242	김정주 (행) 3253

<b>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b>	정책사업	자연재난 예방 및 복구지원
	단위사업	자연재난 예방 및 복구지원
	세부사업	재해위험지역정비 (시군자본)
	통 계 목	자치단체자본보조 (403-01)

##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노후 저수지의 붕괴 위험으로부터 하류지역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 사업 위치 : 충남 4개 시·군 재해위험저수지(천안, 공주, 부여, 홍성)
- 사업 기간 : 2014년~(다년도 계속사업)
- 예 산 액 : 1,315,000천원(전체 사업비 412억원)
- 사 업 량 : 재해위험저수지(D등급) 정비 6개소(전체 33개소)
-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시장·군수
- 사업 내용 :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
- 지원근거 :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3조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3조(위험저수지·댐 정비사업)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2조제1항에 따라 정비지구로 지정·고시한 경우에는 위험저수지·댐의 정비촉진을 위하여 위험저수지·댐 정비사업(이하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직접 시행하거나,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	비 고
산출 기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해위험저수지 정비(6지구) : 국비 1,315,000, 시군비 1,315,000</li> <li>○ 천안 죽계 재해위험저수지 정비 : 237,000천원(국비) / 237,000천원(시군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체보강(그라우팅) L=88m, 여수토방수로 보강</li> </ul> </li> <li>○ 공주 마암1 재해위험저수지 정비 : 40,000천원(국비) / 40,000천원(시군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해위험저수지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1식</li> <li>- 제당덧쌓기 L=45m / 기초처리공 L=45m</li> <li>- 여방수로 정비 1식 / 취수시설(복통, 사통 정비) 1식</li> </ul> </li> <li>○ 공주 발지울 재해위험저수지 정비 : 40,000천원(국비) / 40,000천원(시군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해위험저수지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1식</li> <li>- 제당덧쌓기 L=64m / 기초처리공 L=64m</li> <li>- 여방수로 정비 1식 / 취수시설(복통, 사통 정비) 1식</li> </ul> </li> <li>○ 부여 현암 재해위험저수지 정비 : 50,000천원(국비) / 50,000천원(시군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독높이기 H=1.5m, 제방 내부 보강(그라우팅공법) L=113.0m</li> <li>- 여수로 보강(방수로 및 감세공 신축), 복통 재설치 L=25.0m</li> <li>- 용지보상 : 1,633㎡(2필지)</li> </ul> </li> </ul>	

산출 기초	○ 홍성 마은 재해위험저수지 정비 : 500,000천원(국비) / 500,000천원(시군비) - 둑 높이기 및 중심 점토 송상 A=8,196㎡ - 사석 보강 A=560㎡, 여방수로 L=125m - 그라우팅 A=105m, 사통 복통 L=65m ○ 홍성 장곡 재해위험저수지 정비 : 448,000천원(국비) / 448,000천원(시군비) - 사통 복통 L=60m - 여방수로 L=120m - 그라우팅 A=120m	
총사업비	2,630,000천원(국비 1,315,000, 시군비 1,315,000)	

##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본예산(A)	전년도본예산(B)	증감(A-B)		
계	14,282,000	818,000	2,630,000	1,706,000	924,000	10,834,000	
국 비	7,141,000	409,000	1,315,000	853,000	462,000	5,417,000	국고
도 비	-	-	-	-	-	-	
시군비	7,141,000	409,000	1,315,000	853,000	462,000	5,417,000	

\* 보조율 : 국비 50%, 시군비 50%

##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A)	집행액(B)	집행잔액(C=A-B)	집행률(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550,000	550,000	-	100%	-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1년 (2021~2025)	-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재난안전실	자연재난과	자연재난대응팀	김두기 (행) 2185	박상용 (행) 3242	박병현 (행) 2187

<b>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b>	정책사업	자연재난 예방 및 복구지원
	단위사업	자연재난 예방 및 복구지원
	세부사업	재해위험지역정비(시군자본) 재해위험지역정비(도)
	통 계 목	자치단체자본보조(403-01) 시설비(401-01)

##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을 통해 인명, 재산피해 사전예방
- 사업 위치 : 도내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 사업 기간 : 2012년 ~ (다년도 계속사업)
- 예산액 : **3,662,000천원**(전체 사업비 877억원)  
\*자치단체자본보조 2,250,000천원+도직접 1,412,000천원
- 사업량 :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7개소 (전체 77개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시행, 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도지사, 시장·군수
- 사업 내용 : 사면정비, 이주보상 등
- 지원근거 :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2조(붕괴위험지역 정비 중기계획의 수립) ① 관리기관은 붕괴위험지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5년 단위의 붕괴위험지역 정비 중기계획(이하 "중기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은 관리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중기계획을 직접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분	산 출 액	비 고
산출 기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 사업소 재배정(2지구) : 1,412,000(국비 706,000, 도비 706,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령(홍성지소) 장곡지구 : 사면정비·보강(L=150m) = 206,000 / 206,000</li> <li>- 서산(홍성지소) 고풍2지구 : 사면정비·보강(L=400m) = 500,000 / 500,000</li> </ul> </li> <li>■ 자치단체자본보조(5지구) : 4,500,000(국비 2,250,000, 시군비 2,250,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령 평라1지구 : 사면정비·보강(L=170m) = 200,000 / 200,000</li> <li>- 태안 마도지구 : 사면정비·보강(L=120m) = 900,000 / 900,000</li> <li>- 서천 당정지구 : 사면정비·보강(L=480m) = 450,000 / 450,000</li> <li>- 계룡 계룡36지구 : 사면정비·보강(L=250m) = 300,000 / 300,000</li> <li>- 예산 예산지구 : 사면정비·보강(L=200m) = 400,000 / 400,000</li> </ul> </li> </ul>	

총사업비	시군자본(자치단체자본보조) : 4,500,000천원(국비 2,250,000, 시군비 2,250,000) 도(시설비) : 1,412,000천원(국비 706,000, 도비 706,000)	
------	---	--

##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본예산(A)	전년도본예산(B)	증감(A-B)		
계	12,720,000	2,708,000	5,912,000	12,278,000	△6,366,000	4,100,000	
국 비	6,360,000	1,354,000	2,956,000	6,139,000	△3,183,000	2,050,000	국고
도 비	1,510,000	554,000	706,000	3,644,000	△2,938,000	250,000	
시군비	4,850,000	800,000	2,250,000	2,495,000	△245,000	1,800,000	

\* 보조율 : 자치단체자본보조-국비 50%, 시군비 50% / 시설비-국비 50%, 도비 50%

##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A)	집행액(B)	집행잔액(C=A-B)	집행률(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13,790,315	9,218,212	4,572,103	66.85%	4,489,534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학술용역비사전심사	물품정수취득	홍보물사전심의	공공기관출연금의회의결	신규 행사성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1년(2021~2025)	-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재난안전실	자연재난과	자연재난대응팀	김두기(행) 2185	박상용(행) 3242	박병현(행) 2187

<b>조기경보 시스템 구축사업</b>	정책사업	자연재난 예방 및 복구지원
	단위사업	자연재난 예방 및 복구지원
	세부사업	재해위험지역정비 (시군자본)
	통 계 목	자치단체자본보조 (403-01)

##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인명피해 우려지역에 예·경보 시스템을 구축으로 신속한 재난대응체계 구축
- 사업 위치 : 도내 15개 시·군 재해 위험지역
- 사업 기간 : 2021년 ~ 2022년(신규사업)
- 예 산 액 : **2,021,500천원**
- 사 업 량 : 조기경보시스템 8개소
-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시장·군수
- 사 업 내 용 : 계측기(강우량·수위·변위계), 옥외무선방송 및 강우·수위 모니터링 시스템 설치
- 지원근거 :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2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 등)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상습침수지역, 산사태위험지역 등 지형적인 여건 등으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고시하고, 그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의 수립)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 대하여 정비 방향의 지침이 될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이하 "정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계획의 수립)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정비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해의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	비 고	
산출 기초	<b>■ 조기경보 시스템(8지구) : 2,021,500(국도비) / 1,088,500(시군비)</b>  ○ 재해위험지역 (4지구) : 1,137,500(국도비) / 612,500(시군비) - 천안 성정1동2지구 : 계측기 설치, 모니터링·상황전파 시스템 = 227,500 / 122,500 - 천안 쌍용2지구 : 계측기 설치, 모니터링·상황전파 시스템 = 227,500 / 122,500 - 보령 진죽지구 : 계측기 설치, 모니터링·상황전파 시스템 = 455,000 / 245,000 - 당진 당진천지구 : 계측기 설치, 모니터링·상황전파 시스템 = 227,500 / 122,500  ○ 재해위험저수지 (3지구) : 780,000(국도비) / 420,000(시군비) - 보령 청천저수지 : 계측기 설치, 모니터링·상황전파 시스템 = 260,000 / 140,000 - 보령 옥서저수지 : 계측기 설치, 모니터링·상황전파 시스템 = 260,000 / 140,000 - 부여 용정저수지 : 계측기 설치, 모니터링·상황전파 시스템 = 260,000 / 140,000  ○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1지구) : 104,000(국도비) / 56,000(시군비) - 천안 석곡지구 : 계측기 설치, 모니터링·상황전파 시스템 = 104,000 / 56,000		
	총사업비	3,110,000천원(국도비 2,021,500, 시군비 1,088,500)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본예산(A)	전년도본예산(B)	증감(A-B)		
계	7,960,000	4,850,000	3,110,000	-	3,110,000	-	신규사업
국 비	3,980,000	2,425,000	1,555,000	-	1,555,000	-	국고
도 비	1,194,000	727,500	466,500	-	466,500	-	
시군비	2,786,000	1,697,500	1,088,500	-	1,088,500	-	

\* 보조율 : 국비 50%, 도비15% 시군비 35%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A)	집행액(B)	집행잔액(C=A-B)	집행률(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	-	-	-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1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재난안전실	자연재난과	자연재난대응팀	김두기 (행) 2185	박상용 (행) 3242	김정주 (행) 3253

<b>공공시설물 내진보강</b>	정책사업	재해·재난예방 및 복구지원
	단위사업	재해·재난예방 및 복구지원
	세부사업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통 계 목	시설비 (401-01)

##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지진발생 대비 공공시설물의 내진성능을 향상하여 도민의 생명과 재산피해 최소화
- 사업 위치 : 도내 15개 시·군 공공시설
- 사업 기간 : 2021. 1. 1. ~ 2021. 12. 31.(다년도 계속사업)
- 예 산 액 : 450,000천원
- 사 업 량 : 2개소 내진보강(기존 공공시설 1,443개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도지사
- 사업 내용 :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 지원근거 :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6조(기존시설물의내진보강 추진등)

제16조(기존 시설물의 내진보강 추진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등은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 시설물에 대한 내진보강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그 추진상황 등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거나 보고하여야 한다.

##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	비 고
산출 기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시설물 내진보강(2개소) : 도비 450,000</li> <li>○ 내진보강공사(2개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주지소 화현교 내진보강공사 200,000</li> <li>· 공주지소 역평교 내진보강공사 250,000</li> </ul> </li> <li>*내진성능평가 용역 결과 산출된 내진보강공사 비용임</li> </ul>	
총사업비	450,000천원(도비 450,000)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본예산(A)	전년도본예산(B)	증감(A-B)		
계	450,000	-	450,000	900,000	△450,000	-	
국 비	-	-	-	-	-	-	
도 비	450,000	-	450,000	900,000	△450,000	-	
시군비	-	-	-	-	-	-	
기 타	-	-	-	-	-	-	

\* :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A)	집행액(B)	집행잔액(C=A-B)	집행률(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4,661,617	2,825,642	1,835,974	60.62%	1,582,513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학술용역비사전심사	물품정수취득	홍보물사전심의	공공기관출연금의회의결	신규 행사성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1년(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재난안전실	자연재난과	자연재난대응팀	김두기(행) 2185	박상용(행) 3242	박병현(행) 2187

<b>자연재난대응훈련 추진</b>	정책사업	자연재난 예방 및 복구지원
	단위사업	자연재난 예방 및 복구지원
	세부사업	재난대응훈련추진
	통 계 목	사무관리비(201-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08-01)

##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민·관 합동 훈련을 통해 재난 대응 역량 및 협조체계 강화
- 사업 위치 : 충청남도
- 사업 기간 : 2021. 1. 1. ~ 2021. 12. 31. (단년도 계속사업)
- 예 산 액 : **15,555천원**
- 사 업 량 : 풍수해 및 폭설대비 현장 재난대응 민·관 합동훈련
-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시장·군수
- 사업 내용 : 여름철 풍수해, 겨울철 폭설 대비 재난대응훈련
- 지원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5조의 2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 25조의 2(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재난예방조치)

-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소관 관리대상 업무의 분야에서 재난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재난예방조치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무관리비 : 2,805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무용품 등 구입 : 305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4(15,000원 × 18BOX) = 270천원</li> <li>· 생수(700원×50EA) = 35천원</li> </ul> </li> <li>○ 책자인쇄비 : 1,000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책자인쇄(10,000원 × 100부) = 1,000천원</li> </ul> </li> <li>○ 훈련 자재·장비 임대 : 1,000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설장비, 굴삭기 등 훈련 자재·장비 임대 = 1,000천원</li> </ul> </li> <li>○ 음향장비, 무대설치 등 임대 : 500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음향장비, 무대설치 비용 = 500천원</li> </ul> </li> </ul> </li> <li>■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 12,750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훈련 개최 사군 경상보조금 : 12,750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2,750천원 × 1식 = 12,750천원</li> </ul> </li> </ul> </li> </ul>	
총사업비	15,555천원(도비 15,555)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본예산(A)	전년도본예산(B)	증감(A-B)		
계	15,555	-	15,555	18,300	△2,745	-	
국 비	-	-	-	-	-	-	
도 비	15,555	-	15,555	18,300	△2,745	-	
시군비	-	-	-	-	-	-	
기 타	-	-	-	-	-	-	

\* 보조율 : 도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A)	집행액(B)	집행잔액(C=A-B)	집행률(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19,500	19,050	450	97.7%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학술용역비사전심사	물품정수취득	홍보물사전심의	공공기관출연금의회의결	신규 행사성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1년(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재난안전실	자연재난과	자연재난대응팀	김두기(행) 2185	박상용(행) 3242	함지호(행) 3254

<b>자율방재단 장비보강 및 운영지원</b>	정책사업	자연재난 예방 및 복구지원
	단위사업	자연재난 예방 및 복구지원
	세부사업	자율방재단 활성화 지원
	통 계 목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08-01)

##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재난피해예상지역 예찰 및 피해지역 복구를 위한 장비, 활동비 및 물품지원
- 사업 위치 : 도내 15개 시·군 지역자율방재단
- 사업 기간 : 2021. 1. ~ 2021. 12.
- 예 산 액 : **153,000천원**
- 사 업 량 : 재난복구장비 구입, 안전장비 및 피복구입, 활동비 등
-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시장·군수
- 사 업 내 용 : 재난발생시 지역자율방재단 주관으로 실질적 역할수행이 가능하도록 장비 및 운영지원
- 지 원 근 거 :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65조

<p>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등)</p> <p>②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자율방재단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원의 재해 예방, 대응, 복구 활동 등 기여도에 따라 복구사업에 우선 참여하게 하는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lt;개정 2013.8.6., 2016.1.27., 2017. 7. 26.&gt;</p> <p>③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운영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5조(예산 지원)</p> <p>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지역자율방재단의 활동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실비(實費)로 지급할 수 있다. &lt;개정 2014.8.6., 2017.1.26., 2017. 7. 26.&gt;</p>
--

##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	비 고
산출 기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자율방재단 장비구입</li> <li>○ 방재단 피복, 안전화 등 : 100천원 × 1,000명 = 100,000천원(도비30,000, 시군비70,000)</li> <li>○ 운영지원 1식 × 62천원 × 6,633명 = 410,000천원(도비123,000 시군비287,000)</li> <li>· 시군별 방재단원 수에 따라 차등배정</li> </ul>	
총사업비	510,000천원(도비 153,000, 시군비 357,000)	

##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본예산(A)	전년도본예산(B)	증감(A-B)		
계	510,000	-	510,000	670,000	△160,000	-	
국 비	-	-	-	-	-	-	
도 비	153,000	-	153,000	200,000	△47,000	-	
시군비	357,000	-	357,000	470,000	△113,000	-	
기 타	-	-	-	-	-	-	

\* 보조율 : 도비 30%, 시군비 70%

##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A)	집행액(B)	집행잔액(C=A-B)	집행률(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210,000	210,000	-	100%	-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학술용역비사전심사	물품정수취득	홍보물사전심의	공공기관출연금의회의결	신규 행사성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1년(2021~2025)	-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재난안전실	자연재난과	자연재난대응팀	김두기(행) 2185	박상용(행) 3242	함지호(행) 3254

<b>재해예방교육자료 인쇄 및 리플렛 제작 등</b>	정책사업	자연재난 예방 및 복구지원
	단위사업	자연재난 예방 및 복구지원
	세부사업	자연재난업무추진
	통 계 목	사무관리비 (201-01)

##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홍보활동 강화
- 사업 위치 : 충청남도
- 사업 기간 : 2021. 1. 1. ~ 2021. 12. 31. 기간 중(단년도 계속사업)
- 예 산 액 : **8,500천원**
- 사 업 량 : 교육자료, 리플렛 제작·배포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도지사
- 사업 내용 : 재난대비 행동요령 및 매뉴얼 책자 인쇄, 교육·홍보자료 제작 등
- 지원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5조의2

제25조의2(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재난예방조치)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소관 관리대상 업무의 분야에서 재난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재난 발생에 대비한 교육·훈련과 재난관리에방에 관한 홍보

##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	비 고
산출 기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무관리비 : 8,000천원</li> <li>○ 자연재난 행동매뉴얼 제작 : 2,000천원 · 10,000원 × 200부 = 2,000천원</li> <li>○ 교육 및 회의 자료 제작 : 2,000천원 · 10,000원 × 200부 = 2,000천원</li> <li>○ 재난예방 홍보물품 및 리플렛 제작 : 4,500천원 · 450원 × 10,000부 = 4,000천원</li> </ul>	
총사업비	8,500천원(도비 8,500)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본예산(A)	전년도본예산(B)	증감(A-B)		
계	8,500	-	8,500	12,150	△3,650	-	
국 비	-	-	-	-	-	-	
도 비	8,500	-	8,500	12,150	△3,650	-	
시군비	-	-	-	-	-	-	
기 타	-	-	-	-	-	-	

\* 보조율 : 도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A)	집행액(B)	집행잔액(C=A-B)	집행률(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12,150	12,150	-	100%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학술용역비사전심사	물품정수취득	홍보물사전심의	공공기관출연금의회의결	신규 행사성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1년(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재난안전실	자연재난과	자연재난대응팀	김두기(행) 2185	박상용(행) 3242	함지호(행) 3254

가	정책사업	자연재난 예방 및 복구지원
	단위사업	자연재난 예방 및 복구지원
	세부사업	자연재난업무 추진
	통 계 목	사무관리비 (201-01)

##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자연재난 예방 및 복구를 위한 재해영향평가 등 위원회 및 자문단 운영
- 사업 위치 : 도내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
- 사업 기간 : 2021.1.1.~2021.12.31.(단년도 계속사업)
- 예 산 액 : **17,000천원**
- 사 업 량 : 재해영향평가 등 위원회 운영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도지사
- 사업 내용 :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재해복구사업 등 사전심의 등
- 지원근거 : 자연재해대책법 4조 5항 등

<p>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p> <p>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요청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고,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73조(권한의 위임)</p> <p>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에 관한 권한 등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권한을 해당 각 호에서 장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한다.</p> <p>충청남도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충청남도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p>
--

##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	비 고
산출 기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연재난 각종 위원회 운영 : 17,000천원</li> <li>○ 재해영향평가(소집) 5회(회당 5~6명) × 800천원 = 4,000천원</li> <li>○ 재해영향성검토 및 소규모 재해영향평가(서면) 18회(회당 5명) × 500천원 = 9,000천원</li> <li>○ 재해영향평가 사업장 이행실태 상시점검단 운영 12회(회당 2명) × 250천원 = 3,000천원</li> <li>○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 2회(회당 4~5명) × 500천원 = 1,000천원</li> </ul>	
총사업비	17,000천원(도비 17,000)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본예산(A)	전년도본예산(B)	증감(A-B)		
계	17,000	-	17,000	11,400	5,600	-	
국 비	-	-	-	-	-	-	
도 비	17,000	-	17,000	11,400	5,600	-	
시군비	-	-	-	-	-	-	
기 타	-	-	-	-	-	-	

\* :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A)	집행액(B)	집행잔액(C=A-B)	집행률(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9,000	9,000	-	100%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학술용역비사전심사	물품정수취득	홍보물사전심의	공공기관출연금의회의결	신규 행사성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1년(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재난안전실	자연재난과	복구지원팀	김두기(행) 2185	최천규(행) 3243	신동명(행) 3257

<b>방재협회비</b>	정책사업	자연재난 예방 및 복구지원
	단위사업	자연재난 예방 및 복구지원
	세부사업	자연재난 업무추진
	통 계 목	공공운영비 (201-02)

##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방재협회비 연회비 납부로 우리 도 방재관련 교육 및 방재전문가 등에 대한 지원을 통한 재난 대비 역량강화
- 사업 위치 : 충청남도
- 사업 기간 : 2021. 1. 1. ~ 2021. 12. 31. (단년도 계속사업)
- 예 산 액 : **3,000천원**
- 사 업 량 : 방재협회비 납부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도지사
- 사업 내용 : 자연재해대책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인 방재협회의 특별회원회비 납부를 통해 방재관련 우리 도 역량강화에 기여
- 지원근거 : 자연재해대책법 제72조, 제73조

제72조(한국방재협회의 설립) ① 재해대책에 관한 연구 및 정보교류의 활성화와 국민방재역량 제고를 위하여 한국방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제73조(협회의 정관 등) ② 협회의 운영 경비는 회비나 그 밖의 사업 수입으로 충당한다.

##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	비 고
산출 기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운영비 : 3,000천원</li> <li>○ 회비 : 3,000천원</li> <li>· 3,000천원 × 1회 = 3,000천원</li> </ul>	
총사업비	3,000천원(도비 3,000)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본예산(A)	전년도본예산(B)	증감(A-B)		
계	3,000	-	3,000	3,000	-	-	
국 비	-	-	-	-	-	-	
도 비	3,000	-	3,000	3,000	-	-	
시군비	-	-	-	-	-	-	
기 타	-	-	-	-	-	-	

\* 보조율 : 도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A)	집행액(B)	집행잔액(C=A-B)	집행률(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3,000	3,000	-	100%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학술용역비사전심사	물품정수취득	홍보물사전심의	공공기관출연금의회의결	신규 행사성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1년(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재난안전실	자연재난과	자연재난대응팀	김두기(행) 2185	박상용(행) 3242	함지호(행) 3254

<b>풍수해보험사업 홍보</b>	정책사업	자연재난 예방 및 복구지원
	단위사업	자연재난 예방 및 복구지원
	세부사업	풍수해보험사업 지원 (국가직접지원)
	통 계 목	사무관리비 (201-01)

##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자연재난에 의한 주택, 온실 등 사유재산 피해 시 주민생활 안전 도모를 위한 풍수해보험 가입 확대 홍보
- 사업 대상 : 주택, 온실, 소상공인
- 사업 기간 : 2021.1.1.~2021.12.31.(단년도 계속사업)
- 예 산 액 : 30,000천원
- 사 업 량 : 홍보물품 및 리플렛 제작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도지사
- 사업 내용 : 풍수해보험사업 홍보자료 제작 등 홍보에 필요한 물품 구입
- 지원근거 : 풍수해보험법 제7조제1항, 풍수해보험 실무편람(행정안전부)

풍수해보험법 제 7조(국가 등의 재정지원)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계약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보험목적물이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른 농어업재해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보험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	비 고
산출 기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무관리비 : 30,000천원</li> <li>○ 홍보물품 및 리플렛 제작 : 30,000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마스크 1,000원 × 20,000개 = 20,000천원</li> <li>· 리플렛 500원 × 20,000부 = 10,000천원</li> </ul> </li> </ul>	
총사업비	30,000천원(도비 30,000)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본예산(A)	전년도본예산(B)	증감(A-B)		
계	30,000	-	30,000	30,000	-	-	
국 비	-	-	-	-	-	-	
도 비	30,000	-	30,000	30,000	-	-	
시군비	-	-	-	-	-	-	
기 타	-	-	-	-	-	-	

\* : 100%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A)	집행액(B)	집행잔액(C=A-B)	집행률(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	-	-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1년 (2021~2025)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재난안전실	자연재난과	복구지원팀	김두기 (행) 2185	최천규 (행) 3243	이준범 (행) 3256

<b>풍수해보험료 지원</b>	정책사업	자연재난 예방 및 복구지원
	단위사업	자연재난 예방 및 복구지원
	세부사업	풍수해보험사업 지원 (국가직접지원)
	통 계 목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08-01)

##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자연재난에 의한 주택, 온실 등 사유재산 피해 시 보험제도를 통한 자율방재체계 구축
- 사업 대상 : 주택,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소상공인
- 사업 기간 : 2021.1.1.~2021.12.31.(단년도 계속사업)
- 예 산 액 : **540,000천원**
- 사 업 량 : 풍수해보험료 지원 70,000가구, 온실 5800㎡, 소상공인 670개소
-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선 보험가입 후 보험사 보험료 지급)
- 사업시행주체 : 시장·군수
- 사업 내용 : 도내 15개 시군의 주택, 온실, 소상공인에 대하여 정부에서 보험료 일부(34~92%)를 지원, 도민 스스로 보험에 가입하여 풍수해 피해에 대하여 능동적으로 대처
- 지원근거 : 풍수해보험법 제7조제1항, 풍수해보험 실무편람(행정안전부)

풍수해보험법 제 7조(국가 등의 재정지원)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계약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보험목적물이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른 농어업재해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보험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	비 고
산출 기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풍수해보험료 지원 : 1,800,000천원(도비 540,000, 시군비 1,260,000)</li> <li>○ 주택 보험료 : 70,000가구 × 15천원 = 1,050,000천원</li> <li>○ 온실 보험료 : 5,800천㎡ × 127천원 = 736,600천원</li> <li>○ 소상공인(상가, 공장) 보험료 : 670개소 × 20천원 = 13,400천원</li> </ul>	
총사업비	1,800,000천원(도비 540,000, 시군비 1,260,000)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본예산(A)	전년도본예산(B)	증감(A-B)		
계	10,089,464	6,599,464	1,800,000	1,700,000	100,000	1,690,000	
국 비	-	-	-	-	-	-	국가직접지원
도 비	3,098,691	2,408,691	540,000	510,000	30,000	150,000	
시군비	6,990,773	4,190,773	1,260,000	1,190,000	70,000	1,540,000	
기 타	-	-	-	-	-	-	

\* : 30%, 7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A)	집행액(B)	집행잔액(C=A-B)	집행률(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300,000	300,000	-	100%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1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재난안전실	자연재난과	복구지원팀	김두기 (행) 2185	최천규 (행) 3243	이준범 (행) 3256

	정책사업	자연재난 예방 및 복구지원
	단위사업	자연재난 예방 및 복구지원
	세부사업	우수저류시설설치
	통 계 목	자치단체자본보조 (403-01)

##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이상기후 등 도시개발로 인해 우수의 직접유출량이 증가됨에 따라 하류에서 수용할 수 있는 용량을 초과하는 홍수량을 우수저류를 통해 감소시켜 피해예방
- 사업 위치 : 공주시 신관동
- 사업 기간 : 2009~2021(다년도 계속사업)
- 예 산 액 : 2,930,000천원
- 사 업 량 : 저류시설 15,000m<sup>3</sup>, 유입관로
-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공주시장
- 사업 내용 : 우수저류시설 설치
- 지원근거 : 자연재해대책법 70조

자연재해대책법 제70조(국고보조 등)

국가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우수유출저감시설사업 등의 자연재해 예방대책, 자연재해 응급대책 또는 자연재해 복구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부담하거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보조할 수 있다.

##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	비 고
산출 기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수저류시설설치</li> <li>○ 공주 신관지구 우수저류시설 (저류용량 15,000m<sup>3</s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총 사업비 15,860,000천원</li> <li>- 기 투자 : 10,000,000천원(국 5,000,000 시 5,000,000)</li> <li>- '21년 : 5,860,000백만원(국 2,930,000 시 2,930,000)</li> </ul> </li> </ul>	
총사업비	5,860,000천원(국비 2,930,000, 시비 2,930,000)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본예산(A)	전년도본예산(B)	증감(A-B)		
계	120,456,000	108,596,000	5,860,000	8,000,000	△2,140,000	6,000,000	
국 비	60,228,000	54,298,000	2,930,000	4,000,000	△1,070,000	3,000,000	국고
도 비	-	-	-	-	-	-	
시군비	60,228,000	54,298,000	2,930,000	4,000,000	△1,070,000	3,000,000	
기 타	-	-	-	-	-	-	

\* : 50%, 5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A)	집행액(B)	집행잔액(C=A-B)	집행률(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6,110,000	6,110,000	-	100%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학술용역비사전심사	물품정수취득	홍보물사전심의	공공기관출연금의회의결	신규 행사성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1년(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재난안전실	자연재난과	복구지원팀	김두기(행) 2185	최천규(행) 3243	신동명(행) 3257

<b>시·도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운영지원</b>	정책사업	자연재난 예방 및 복구지원
	단위사업	자연재난 예방 및 복구지원
	세부사업	시도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운영 지원
	통 계 목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308-10)

##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재난경험자가 겪은 정신적·심리적 피해를 재난 이전의 정상적인 삶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생활안정 도모
- 사업 기간 : 2021.1.1.~2021.12.31.(단년도 계속사업)
- 예 산 액 : **54,000천원**
- 사 업 량 : 도내 재난피해자 심리적 안정을 위한 심리 상담 1,000건
- 사업시행방법 : 민간대행(충남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지정·운영)
  - 2017.1.11. 대한적십자사 충남지사 협약(충남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지정·운영)
- 사업시행주체 : 민간(대한적십자사 충남지사)
- 사업 내용 : 재난피해자와 그 가족, 재난경험자 등을 대상으로 심리치료 활동 전개를 위해 충남재난 심리회복지원센터 운영비를 지원
- 지원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6조 제5항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 제5항(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대하여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체적인 지원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	비 고
산출 기초	■ 시도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운영지원 : 54,000천원 ○ 심리 상담 등 운영지원 : 54,000천원 · 상담비 1건당 20천원 × 1,000건 = 20,000천원 · 인건비 70천원 × 360명 = 25,200천원 · 운영비(출장비, 워크숍, 물품구입 등) 8,800천원	
총사업비	54,000천원(국비 27,000, 도비 27,000)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본예산(A)	전년도본예산(B)	증감(A-B)		
계	54,000	0	54,000	51,200	2,800	-	
국 비	27,000	-	27,000	25,600	1,400	-	국고
도 비	27,000	-	27,000	25,600	1,400	-	
시군비	-	-	-	-	-	-	
기 타	-	-	-	-	-	-	

\* 보조율 : 국비 50%, 도비 5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A)	집행액(B)	집행잔액(C=A-B)	집행률(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44,000	44,000	-	100%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1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재난안전실	자연재난과	복구지원팀	김두기 (행) 2185	최천규 (행) 3243	이준범 (행) 3256

<b>재난안전대책본부상황실 일반수용비</b>	정책사업	자연재난 예방 및 복구지원
	단위사업	자연재난 예방 및 복구지원
	세부사업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 운영
	통 계 목	사무관리비 (201-01)

##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비
- 사업 위치 : 본관 6층 재난안전상황실
- 사업 기간 : 2021. 1. 1. ~ 2021. 12. 31. (단년도 계속사업)
- 예 산 액 : **7,650천원**
- 사 업 량 : 재난안전상황실 일반수용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도지사
- 사업 내용 : 각종 재난에 대비한 충청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운영 및 상황관리(비상근무) 추진
- 지원근거 : 충청남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제21조

충청남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제21조(재난안전대책본부의 설치) 도지사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재난의 대응 및 복구(이하 “수습”이라 한다)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	비 고
산출 기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무관리비 : 7,650천원</li> <li>○ 대책본부 급량비 : 7,650천원</li> <li>· 식비 : 8,000원 × 53명 × 6회 × 3식 = 7,650천원</li> <li>* 3단계 비상근무시 비상근무 및 상황근무자 수 : 53명 이상</li> <li>** 3단계 비상근무에 준하는 재난상황 6회 발생 예상</li> <li>*** 3단계비상근무 발생 시 24시간 이상 근무 예상으로 3식 이상 제공</li> </ul>	
총사업비	7,650천원(도비 7,650)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본예산(A)	전년도본예산(B)	증감(A-B)		
계	7,650	-	7,650	9,000	△1,350	-	
국 비	-	-	-	-	-	-	
도 비	7,650	-	7,650	9,000	△1,350	-	
시군비	-	-	-	-	-	-	
기 타	-	-	-	-	-	-	

\* :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A)	집행액(B)	집행잔액(C=A-B)	집행률(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9,000	8,553	447	95%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1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재난안전실	자연재난과	재난상황통신팀	김두기 (행)2185	서동석 (행)3244	서민원 (행)2189

<b>재난안전관제시스템 유지보수</b>	정책사업	자연재난 예방 및 복구지원
	단위사업	자연재난 예방 및 복구지원
	세부사업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 운영
	통 계 목	공공운영비 (201-02)

##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재난안전관제시스템 유지보수로 재난관리를 지원 체계 연중 운영
- 사업 위치 : 본관 6층 재난안전상황실
- 사업 기간 : 2021. 1. 1. ~ 2021. 12. 31. (단년도 계속사업)
- 예 산 액 : **95,000천원**
- 사 업 량 : 재난안전관제시스템(영상, 음향, 지진계측기, 재난안전포털 등)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도지사
- 사업 내용 : 재난안전상황실 재난안전관제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 지원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8조 1항

<p>■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8조(재난안전상황실)</p> <p>①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재난정보의 수집·전파, 상황관리, 재난발생 시 초동조치 및 지휘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시 재난안전상황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p> <p>2.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 시·도별 및 시·군·구별 재난안전상황실</p> <p>■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6조에 따라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공표하는 ‘SW사업 대가산정가이드’ 적용</p>
--

##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	비 고
산출 기초	<p>총 소요비: <b>95,000천원</b></p> <p>○ 관제시스템 유지보수</p> <p>- 산출금액(HW) : <b>42,680천원</b>(서버 및 영상·음향시스템 등)</p> <p>· 산출식 : 310,444천원 × 12.5% × 1.1(도입가×유지보수요율×부가세)</p> <p>- 산출금액(SW) : <b>2,310천원</b>(재난예경보시스템, 서버운용 SW 등)</p> <p>· 산출식 : 15,000천원 × 14% × 1.1(도입가×유지보수요율×부가세)</p> <p>○ 유지보수(웹사이트)</p> <p>- 산출금액(SW) : <b>50,010천원</b>(재난안전포털)</p> <p>· 산출식 : 355,213천원 × 12.8% × 1.1(도입가×유지보수요율×부가세)</p>	
	총사업비	95,000천원(도비 95,000)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본예산(A)	전년도본예산(B)	증감(A-B)		
계	95,000	-	95,000	90,000	5,000	-	
국 비	-	-	-	-	-	-	
도 비	95,000	-	95,000	90,000	5,000	-	
시군비	-	-	-	-	-	-	
기 타	-	-	-	-	-	-	

\* :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A)	집행액(B)	집행잔액(C=A-B)	집행률(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40,000	39,777	223	99%	0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학술용역비사전심사	물품정수취득	홍보물사전심의	공공기관출연금의회의결	신규 행사성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1년(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재난안전실	자연재난과	재난상황통신팀	김두기(행)2185	서동석(행)3244	서민원, 소현정(행)2189, 3260

<b>스마트 재난상황 통합 전파시스템 구축 보조</b>	정책사업	자연재난 예방 및 복구지원
	단위사업	자연재난 예방 및 복구지원
	세부사업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 운영
	통 계 목	자치단체자본보조 (403-01)

##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통합 재난상황 전파시스템을 구현하여 기존 재난전파매체 연계 및 재난대응 매뉴얼 기반으로 주민에게 신속한 재난상황 전파
- 사업 위치 : 금산군 일원
- 사업 기간 : 2021. 1. 1. ~ 2021. 12. 31.
- 예 산 액 : **200,000천원**
- 사 업 량 : 2식(통합 원클릭 상황전파 솔루션 1식, 경로당 사이니지 패널 증설 60개소)
-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금산군수
- 사업 내용 : 금산군 스마트 재난상황 통합 전파시스템 구축
- 지원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8조 1항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8조(재난안전상황실)

①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재난정보의 수집·전파, 상황관리, 재난발생 시 초동조치 및 지휘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시 재난안전상황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2.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 시·도별 및 시·군·구별 재난안전상황실

##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	비 고
산출 기초	<p>총 소요비: <b>400,000천원</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합 원클릭 상황전파 솔루션 1식 : 200,000천원</li> <li>- 운영H/W, 운영S/W, 기존 운영중인 마을방송, 대형전광판, 홈페이지 등 전파매체 연계</li> <li>○ 60 : 200,000</li> <li>- 경로당 내 주민정보알림시스템(130개소 기 구축) 확대로 신속한 재난상황 전파</li> </ul>	
총사업비	400,000천원(도비 200,000, 군비 200,000)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본예산(A)	전년도본예산(B)	증감(A-B)		
계	400,000	-	400,000	-	400,000	-	신규
국 비	-	-	-	-	-	-	
도 비	200,000	-	200,000	-	200,000	-	
시군비	200,000	-	200,000	-	200,000	-	
기 타	-	-	-	-	-	-	

\* : 50%, 5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A)	집행액(B)	집행잔액(C=A-B)	집행률(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	-	-	-	-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학술용역비사전심사	물품정수취득	홍보물사전심의	공공기관출연금의회의결	신규 행사성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1년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재난안전실	자연재난과	재난상황통신팀	김두기(행)2185	서동석(행)3244	서민원(행)2189

## 저희가 가려드릴게요(도민참여)

정책사업	재해재난예방 및 복구지원
단위사업	재해재난예방 및 복구지원
세부사업	폭염대책비
통 계 목	자치단체자본보조 (403-01)

###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여름철 폭염저감시설물 설치를 통한 도민의 인명 및 재산 피해예방 추진
- 사업 위치 : 보령시
- 사업 기간 : 2021. 1. ~ 2021. 12.(신규사업)
- 예 산 액 : **125,000천원**
- 사 업 량 : 스마트그늘막 34개소
-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보령시장
- 사업 내용 : 횡단보도 주변 폭염저감시설물 설치
- 지원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6조 제5항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 제5항(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체적인 지원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	비 고
산출 기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그늘막 설치</li> <li>○ 스마트그늘막</li> <li>· 7,353천원 × 34개소 = 250,000천원</li> </ul>	
총사업비	250,000천원(도비 125,000, 시군비 125,000)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본예산(A)	전년도본예산(B)	증감(A-B)		
계	250,000	-	250,000	-	250,000	-	신규
국 비	-	-	-	-	-	-	
도 비	125,000	-	125,000	-	125,000	-	
시군비	125,000	-	125,000	-	125,000	-	
기 타	-	-	-	-	-	-	

\* : 50%, 5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A)	집행액(B)	집행잔액(C=A-B)	집행률(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	-	-	-	-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조건부추진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의결	조건부추진
2021년 (2021~2025)	2020. 2월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재난안전실	자연재난과	자연자난대응팀	김두기 (행)2185	박상용 (행)3242	함지호 (행)3254

<b>지진안전시설물 인증지원사업</b>	정책사업	자연재난 예방 및 복구지원
	단위사업	자연재난 예방 및 복구지원
	세부사업	지진안전시설물인증지원사업
	통 계 목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08-01)

##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
- 사업 기간 : 2021. 1. 1. ~ 2021. 12. 31.(단년도 계속사업)
- 예 산 액 : **23,550천원**
- 사 업 량 : 내진성능평가 2건(상세 2), 인증 5건
-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시장·군수
- 사업 내용 : 내진성능평가 및 인증수수료 지원
- 지원근거 :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6조의3

제16조의3(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 및 인증의 취소)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진으로부터 시설물의 안전을 증진하고, 국민이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내진보강이 이루어진 시설물에 대하여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을 할 수 있다.

##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	비 고
산출 기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치단체경상보조금 : 23,550천원(국도비) / 21,450천원(시군비,자부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진성능평가(상세) : 10,000천원 * 2개소 * 69% = 13,800천원 ※대상 시·군 : 보령, 계룡</li> <li>- 인증수수료 : 5,000천원 * 5개소 * 39% = 9,750천원 ※대상 시·군 : 논산, 당진, 서천, 계룡, 보령</li> </ul> </li> <li>☞ 시군별 배정내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령시 6,000천원, 논산시 3,000천원,</li> <li>- 계룡시 7,500천원, 당진시 1,500천원</li> <li>- 서천군 1,500천원</li> </ul> </li> </ul>	
총사업비	45,000천원(국비 19,500, 도비 4,050, 시군비 9,450, 기타 12,000)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본예산(A)	전년도본예산(B)	증감(A-B)		
계	45,000	-	45,000	270,000	△225,000	-	
국 비	19,500	-	19,500	144,000	△124,500	-	국고
도 비	4,050	-	4,050	24,300	△20,250	-	
시군비	9,450	-	9,450	56,700	△47,250	-	
기 타	12,000	-	12,000	45,000	△33,000	-	

\* : 가 ( 60%, 9%, · 21%, 10%)  
 ( 30%, 9%, · 21%, 4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A)	집행액(B)	집행잔액(C=A-B)	집행률(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168,300	168,300	-	100%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1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재난안전실	자연재난과	자연재난대응팀	김두기 (행) 2185	박상용 (행) 3242	박병현 (행) 2187

	정책사업	재난정보통신시스템 운영
	단위사업	재난정보통신시스템 시설구축 및 운영
	세부사업	재난정보통신시스템 관리
	통 계 목	공공운영비 (201-02)

##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국가지도통신 위성통신차량 및 긴급통신 중계차량 및 긴급통신장비(산악중계기 4개소 등) 유지관리
- 사업 위치 : 충청남도
- 사업 기간 : 2021. 1. 1. ~ 2021. 12. 31.(단년도 계속사업)
- 예 산 액 : **12,000천원**
- 사 업 량 : 차량 2대, 긴급통신 산악중계기 4개소, 비상발전기 2대, 위성전화기 4대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도지사
- 사업 내용 : 국가지도통신 위성통신차량 및 긴급통신 중계차량 보험 가입 및 유지관리  
긴급통신 산악중계기 등 긴급통신수단 유지관리
- 지원근거 : 충청남도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19조 및 충청남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제40조

충청남도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19조(차량집중관리 부서 지정)②제1항에 따라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차량집중관리 부서는 사업의 성질상 사업 주무담당 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차량에 한해서는 2차 관리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다만, 통근용 버스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0조(재난현장 긴급통신수단의 마련)① 도지사는 재난현장에서 긴급통신수단을 공동 활용하기 위하여 재난관리책임 기관, 긴급구조기관, 긴급구조지원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긴급통신수단의 보유현황 등을 확인하고, 긴급통신수단을 관리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	비 고
산출 기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명 : 재난정보통신 장비 및 차량 유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긴급통신장비 수리 및 유지비 : <b>8,000천원</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악중계기 수리비 : 1,750천원 × 4개소 = 7,000천원</li> <li>- 비상발전기, 위성전화기 등 유지관리 : 1,000천원</li> </ul> </li> <li>○ 국가지도통신 위성통신 차량 및 긴급통신 중계 차량 유지비 : <b>4,000천원</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험료 : 1,000천원 × 2대 = 2,000천원</li> <li>- 유류비 및 수리비 : 1,000천원 × 2대 = 2,000천원</li> </ul> </li> </ul> </li> </ul>	
총사업비	12,000천원(도비 12,000)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본예산(A)	전년도본예산(B)	증감(A-B)		
계	12,000	-	12,000	12,000	-	-	
국 비	-	-	-	-	-	-	
도 비	12,000	-	12,000	12,000	-	-	
시군비	-	-	-	-	-	-	
기 타	-	-	-	-	-	-	

\* : 100%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A)	집행액(B)	집행잔액(C=A-B)	집행률(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12,000	9,288	2,712	77.4%	0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1년 (2021~2025)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자연재난과	재난상황통신팀	김두기 (행) 2185	서동석 (행) 3244	소현정 (행) 3260

<b>충청남도 재난안전포털 및 모바일앱 홍보</b>	정책사업	재난정보통신시스템 운영
	단위사업	재난정보통신시스템 시설구축 및 운영
	세부사업	충청남도 재난안전포털 및 모바일 앱 홍보
	통 계 목	사무관리비 (201-01)

##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충청남도 재난안전포털, 안전충남지킴이(모바일 앱)의 홍보를 통한 인식률 및 활용성 제고
- 사업 위치 : 충청남도
- 사업 기간 : 2021. 1. 1. ~ 2021. 12. 31.(단년도 계속사업)
- 예 산 액 : **15,300천원**
- 사 업 량 : 인터넷 광고(홍보 배너 1개, 광고 노출 약11,000,000회, 이벤트 페이지 1식)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도지사
- 사업 내용 : 인터넷을 통한 광고 배너 노출, 홍보 이벤트
- 지원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 ①항 2호 및 충청남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시행규칙 제26조 ①항 3호

<p>제66조의4(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의 추진)</p> <p>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 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안전문화활동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p> <p>2.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 및 홍보</p> <p>제26조(재난관리주관부서의 장의 재난 예방조치)</p> <p>① 재난관리주관부서의 장은 소관 관리대상 업무의 분야에서 재난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3. 재난 발생에 대비한 교육·훈련과 재난관리에방에 관한 홍보</p>
---

##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	비 고
산출 기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명 : 충청남도 재난안전포털 및 안전충남지킴이 홍보</li> <li>○ 충청남도 재난안전포털 및 안전충남지킴이 홍보 : 15,300천원</li> <li>· 인터넷 상 노출 11,181,818회 × 1.1원 = 12,300천원</li> <li>· 기획 및 소재 제작 : 3,000천원</li> </ul>	
총사업비	15,300천원(도비 15,300)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본예산(A)	전년도본예산(B)	증감(A-B)		
계	15,300	-	15,300	18,000	△2,700	-	
국 비	-	-	-	-	-	-	
도 비	15,300	-	15,300	18,000	△2,700	-	
시군비	-	-	-	-	-	-	
기 타	-	-	-	-	-	-	

\* :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A)	집행액(B)	집행잔액(C=A-B)	집행률(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18,000	18,000	-	100%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1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자연재난과	재난상황통신팀	김두기 (행) 2185	서동석 (행) 3244	소현정 (행) 3260

<b>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 구입</b>	정책사업	재난정보통신시스템 운영
	단위사업	재난정보통신시스템 시설 구축 및 운영
	세부사업	재난정보통신시스템 관리
	통 계 목	자산및물품취득비 (405-01)

##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재난안전통신망(PS-LTE) 운용 규격에 맞는 단말기 구입
- 사업 위치 : 충청남도
- 사업 기간 : 2021. 1. 1. ~ 2021. 12. 31. (단년도 계속사업)
- 예 산 액 : **7,650천원**
- 사 업 량 : 스마트폰형 단말기 6대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도지사
- 사업 내용 : 재난안전통신망 전용 단말기 6대 구입
- 지원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8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12

제34조의8(재난안전통신망의 구축·운영)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체계적인 재난관리를 위하여 재난안전통신망을 구축·운영하여야 하며, 재난관리책임기관·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이하 이 조에서 "재난관련기관"이라 한다)은 재난관리에 재난안전통신망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재난관련기관은 평상시 또는 재난발생 시를 대비하여 재난안전통신망을 활용한 관련기관 간 재난대응 절차를 마련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관련기관에서 필요한 재난대응 절차를 연구·개발하여 보급할 수 있다.

③ 재난안전통신망의 운영,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동 시행령 제43조의12(재난안전통신망의 운영 및 사용) ③ 재난관리책임기관·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이하 이 조에서 "재난관련기관"이라 한다)은 법 제34조의8제1항에 따라 재난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활동에 재난안전통신망을 사용하여야 한다.

1. 재난관리를 위한 상황의 보고 및 전파
2. 응급조치 등 재난 대응의 지시 및 보고
3. 그 밖에 체계적인 재난관리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안전통신망의 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활동

##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	비 고
산출 기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명 :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 5대 구입(7,650천원)</li> <li>○ 단말기 6대 × 1,275천원 = 7,650천원</li> </ul>	
총사업비	7,650천원(도비 7,650)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본예산(A)	전년도본예산(B)	증감(A-B)		
계	7,650	-	7,650	16,000	△8,350	-	
국 비	-	-	-	-	-	-	
도 비	7,650	-	7,650	16,000	△8,350	-	
시군비	-	-	-	-	-	-	
기 타	-	-	-	-	-	-	

\* : 도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A)	집행액(B)	집행잔액(C=A-B)	집행률(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	-	-	-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학술용역비사전심사	물품정수취득	홍보물사전심의	공공기관출연금의회의결	신규 행사성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1년(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재난안전실	자연재난과	재난상황통신팀	김두기(행)2185	서동석(행)3244	소현정(행) 3260

<b>재난관리기금 법정적립금</b>	정책사업	재무활동
	단위사업	내부거래지출
	세부사업	내부거래지출
	통 계 목	기금전출금 (702-01)

##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근거, 재난관리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 도는 매년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해야 함
- 사업 대상 : 15개 시군 재해사전에방사업 등
- 사업 기간 : 2021. 1. 1. ~ 2021. 12. 31. (단년도 계속사업, 1997년부터 계속)
- 예 산 액 : 14,200,000천원
- 사 업 량 :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1식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도지사, 시장·군수
- 사업 내용 : 일반회계에서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임
- 지원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5조, 재난관리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금조성(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금의 매년도 최저적립액은 최근 3년간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액 평균연액의 1/100에 해당하는 금액</li> </ul> </li> <li>○ 의무예치금액(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5조 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매년 적립액의 15/100 이상의 금액을 금융회사 등에 예치 관리</li> </ul> </li> <li>○ 기금용도(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4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 법 제74조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함</li> </ul> </li> </ul>
---

##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	비 고
산출 기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난관리기금 전출</li> <li>○ 최근 3년간(2016~2019) 지방세 수입 결산액 평균연액 · (1,394,472 + 1,403,897 + 1,460,710) / 3 × 1/100 ≒ 14,200,000천원</li> </ul>	
총사업비	14,200,000천원(도비 14,200,000)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본예산(A)	전년도본예산(B)	증감(A-B)		
계	14,200,000	-	14,200,000	-	14,200,000	-	
국 비	-	-	-	-	-	-	
도 비	14,200,000	-	14,200,000	-	14,200,000	-	
시군비	-	-	-	-	-	-	
기 타	-	-	-	-	-	-	

\* :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A)	집행액(B)	집행잔액(C=A-B)	집행률(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	-	-	-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1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재난안전실	자연재난과	복구지원팀	김두기 (행) 2185	최천규 (행) 3243	이병령 (행) 3255

<b>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이자 상환</b>	정책사업	재무활동
	단위사업	내부거래지출
	세부사업	내부거래지출
	통 계 목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이자상환(705-04)

##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체계적으로 정비·관리하여 자연재해를 사전에 예방 및 경감 사업비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이자상환
- 사업 위치 : 도내 15개 시·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 사업 기간 : 2021. 1. 1. ~ 2021. 12. 31. (신규사업)
- 예 산 액 : 124,884천원
- 사 업 량 : 재해위험 개선지구 27개소 (전체 154지구)
-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시장·군수
- 사업 내용 : 하천정비, 제방축조, 배수펌프장 설치 등
- 지원근거 :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2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 등)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상습침수지역, 산사태위험지역 등 지형적인 여건 등으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고시하고, 그 결과를 시·도지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의 수립)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 대하여 정비 방향의 지침이 될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이하 "정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계획의 수립)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정비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해의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	비 고
산출 기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이자 상환 : 124,884천원</li> <li>○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이자상환 : 124,884천원</li> <li>· 융자금(7,136,200천원) × 이율(1.75%) = 124,884천원</li> <li>※ 5년거치 10년 균분상환</li> </ul>	
총사업비	124,884천원(도비 124,884)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본예산(A)	전년도본예산(B)	증감(A-B)		
계	124,884	-	124,884	-	124,884		
국 비	-	-	-	-	-		
도 비	124,884	-	124,884	-	124,884		
시군비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A)	집행액(B)	집행잔액(C=A-B)	집행률(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	-	-	-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학술용역비사전심사	물품정수취득	홍보물사전심의	공공기관출연금의회의결	신규 행사성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1년(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재난안전실	자연재난과	자연재난대응팀	김두기(행) 2185	박상용(행) 3242	김정주(행) 3253

<b>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이자 상환</b>	정책사업	재우활동
	단위사업	내부거래지출
	세부사업	내부거래지출
	통 계 목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이자상환(705-04)

##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을 통해 인명, 재산피해 사전예방
- 사업 위치 : 도내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 사업 기간 : 2021. 1. 1. ~ 2021. 12. 31. (신규사업)
- 예 산 액 : **63,770천원**
- 사 업 량 :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7개소 (전체 77개소)
-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시장·군수
- 사업 내용 : 사면정비, 이주보상 등
- 지원근거 :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류 제12조

제12조(붕괴위험지역 정비 중기계획의 수립) ① 관리기관은 붕괴위험지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5년 단위의 붕괴위험지역 정비 중기계획(이하 "중기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은 관리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중기계획을 직접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	비 고
산출 기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이자 상환 : 63,770원</li> <li>○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이자상환 : 63,770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융자원금(3,644,000천원) × 이율(1.75%) = 63,770천원</li> <li>※ 5년거치 10년 균분상환</li> </ul> </li> </ul>	
총사업비	63,770원(도비 63,770)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본예산(A)	전년도본예산(B)	증감(A-B)		
계	63,770	-	63,770	-	63,770		
국 비	-	-	-	-	-		
도 비	63,770	-	63,770	-	63,770		
시군비	-	-	-	-	-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A)	집행액(B)	집행잔액(C=A-B)	집행률(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	-	-	-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학술용역비사전심사	물품정수취득	홍보물사전심의	공공기관출연금의회의결	신규 행사성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1년(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재난안전실	자연재난과	자연재난대응팀	김두기(행) 2185	박상용(행) 3242	박병현(행) 2187



# 하 천 과



## 하천과(일반회계)



# 하 천 과

1. 하천기본계획수립 ..... 204
2. 지방하천 정비사업(금강권역)(도) ..... 206
3. 지방하천 정비사업(금강권역)(시군자본) ..... 210
4. 지방하천 정비사업(안성천수계) ..... 214
5. 소색골 소하천변 산책로조성(도민참여) ..... 216
6. 소하천 유지관리 ..... 218
7. 지방하천 상시 유지보수 ..... 220
8. 노랑 창포꽃이 어우러진 제민천 가꾸기(도민참여) ..... 222
9. 중평천 제방정비 및 포장 ..... 224
10. 지천 제방정비 및 포장 ..... 226
11. 하천시설물 정밀점검 및 정비 ..... 228

12. 하도정비 및 관리 .....	230
13. 지방하천 수문(통문) 자동화 및 중앙제어시스템 구축 ...	232
14. 지방하천 퇴적토 정비 .....	234
15. 하천시설 보수·보강사업 .....	236
16. 국가하천 유지보수(금강권역) .....	238
17. 국가하천 유지보수(안성천수계) .....	240
18. 폐천부지 매각에 따른 감정평가 수수료 등	·242
19.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 .....	244
20. 지방하천 편입토지 보상사업 .....	246
21. 위원회 운영 등 .....	248
22. 통화금융기관 차입금 이자상환 .....	250



<b>하천기본계획 수립</b>	정책사업	하천 정비 및 관리
	단위사업	하천 정비 및 관리
	세부사업	하천기본계획 수립
	통 계 목	시설비 및 부대비 (401-01,03)

##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하천의 정비·보전·이용 등을 일관성 있게 시행하기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하천법 제 25조)
- 사업 위치 : 관내 하천기본계획 미수립 지방하천 10개소(29.71km)
- 사업 기간 : 2021. 1. 1. ~ 2021. 12. 31.(연차적 수립)
- 예 산 액 : **1,003,000천 원**
- 사 업 량 : 하천기본계획 수립(하천구역결정)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 13.4km(7개 하천)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지사
- 사업 내용 : 하천 유역의 특성 등 일반현황 조사, 제방 등 홍수방어계획의 연차별 시행방안, 하천공사의 시행에 관한 사항, 하천구역 및 홍수관리구역의 결정 등
- 지원 근거 : 하천법 제25조

### 하천법 제25조(하천기본계획)

- ① 하천관리청은 그가 관리하는 하천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의 이용 및 자연친화적 관리·보전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 등을 내용으로 하는 **10년 단위의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③ 하천관리청은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	비 고
산출 기초	■ 하천기본계획수립 ○ (전체)기본계획 미수립 하천 10개소 29.71km(총 2,228백만원 소요) · (금회수립) 75,000천원×13.4km ≙ 1,000,000천원 ※ 하천기본계획 수립용역(하천구역결정), 전략환경영향평가용역 등 엔지니어링대가 기준에 따른 소요비용 필요 ○ 부대비 : <b>3,000천원</b> · 기본계획 수립 관련법적 절차 이행 비용 등 : 신문공고료 및 부대비비용 등	
총사업비	1,003,000천원(도비 1,003,000천원) 401-01 : 1,000,000천원(도비1,000,000천원) 401-03 : 3,000천원(도비 3,000천원)	

##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본예산(A)	전년도본예산(B)	증감(A-B)		
계	129,003,000	102,850,000	1,003,000	1,003,000	-	25,150,000	계속
국 비	-	-	-	-	-	-	-
도 비	129,003,000	102,850,000	1,003,000	1,003,000	-	25,150,000	-
시군비	-	-	-	-	-	-	-
기 타	-	-	-	-	-	-	-

\* : 100%

##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A)	집행액(B)	집행잔액(C=A-B)	집행률(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1,699,963	1,202,708	497,255	70.7%	494,885	집행시기 미도래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학술용역비사전심사	물품정수취득	홍보물사전심의	공공기관출연금의회의결	신규 행사성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1년(2021~2025)	-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재난안전실	하천과	하천계획팀	조훈구 (행) 2190	이승주 (행) 4704	최양진 (행) 4722

<b>지방하천 정비사업(금강권역)(도)</b>	정책사업	하천 정비 및 관리
	단위사업	하천 정비 및 관리
	세부사업	지방하천정비사업 (금강권역)(도)
	통 계 목	시설비 및 부대비 (401-01,02,03)

##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지방하천의 치수안전성 확보를 위한 하천정비
- 사업 위치 : 충청남도 관내 13시군
- 사업 기간 : 2021. 1. 1. ~ 2021. 12. 31.(중장기 계획사업)
- 예 산 액 : **45,214,000천원(이양재원21,311,700, 도비23,902,300)**
- 사 업 량 : 천안 병천천 등 28개 지방하천 정비사업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지사
- 사업 내용 : 제방·호안 등 치수안전성 확보를 위한 시설 정비
- 지원 근거 : 하천법 59조

### 하천법 제59조(비용부담의 원칙)

하천에 관한 비용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하천에 관한 것은 국고의 부담으로 하고, 지방하천에 관한 것은 해당 시·도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제27조제5항 단서에 따라 시·도지사가 국가하천의 유지·보수를 하는 경우에 필요한 비용은 해당 시·도의 부담으로 한다.

##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					비 고	
산출 기초	■ 지방하천 정비사업(금강권역)(도) ○ 13개 시군 28개소 지방하천 정비사업						
		시군	하천명	계	이양재원	도비	
		<b>합 계</b>	<b>28개지구</b>	<b>45,214,000</b>	<b>21,311,700</b>	<b>23,902,300</b>	
		천안시	병천천	5,000,000	1,500,000	3,500,000	
		"	광기천	3,000,000	1,500,000	1,500,000	
		"	장재천	2,000,000	1,000,000	1,000,000	
		"	판정천(신규)	600,000	300,000	300,000	
		공주시	중산천	1,600,000	800,000	800,000	
		보령시	간치천	1,000,000	500,000	500,000	
		서산시	도당천	1,115,000	557,500	557,500	

	서산시	석남천	4,000,000	1,500,000	2,500,000
	"	명천석림천	1,000,000	500,000	500,000
	"	청지천	500,000	250,000	250,000
	"	성연천(신규)	600,000	300,000	300,000
	논산시	신양천	1,225,000	735,000	490,000
	"	신양천	2,000,000	400,000	1,600,000
	"	왕암천	500,000	250,000	250,000
	"	양촌천(신규)	600,000	300,000	300,000
	계룡시	연산천	6,822,000	4,093,200	2,728,800
	"	왕대천	500,000	250,000	250,000
	당진시	오봉천	500,000	250,000	250,000
	금산군	진산천	200,000	100,000	100,000
	"	유등천	400,000	200,000	200,000
	부여군	주교천	2,000,000	1,000,000	1,000,000
	"	칠산천	200,000	100,000	100,000
	서천군	화산천	2,500,000	1,250,000	1,250,000
	"	도마천	3,000,000	1,500,000	1,500,000
	"	판교천	500,000	250,000	250,000
	청양군	장승천	2,852,000	1,426,000	1,426,000
	홍성군	와룡천	500,000	250,000	250,000
	태안군	용요천	500,000	250,000	250,000
총사업비	45,214,000천원(이양재원 21,311,700, 도비 23,902,300) *(신규지구: 3개 하천) 401-01 : 41,822,950천원(도비 422,950천원, 지방채 41,400,000천원) 401-02 : 3,345,836천원 401-03 : 45,214천원				

##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본예산(A)	전년도본예산(B)	증감(A-B)		
계	605,418,000	225,847,100	45,214,000	52,823,000	-7,609,000	334,356,900	계속
국 비	96,541,750	96,541,750					지방이양
도 비	508,876,250	129,305,350	45,214,000	52,823,000	-7,609,000	334,356,900	이양재원+도비
시군비							
기 타							

\* (2013년 이전 착수) 국비 60%, 지방비(도비) 40% 적용, (2014년 이후 착수) 국비 50%, 지방비(도비) 50% 적용

\* (2020년 이후) 하천정비사업 지방이양(이양재원+도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79,436,937	68,134,058	11,302,879	85.8%	11,270,598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1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재난안전실	하천과	하천계획팀	조훈구 (행) 2190	이승주 (행) 4704	김원식 (행) 2194



<b>지방하천 정비사업(금강권역)(시군자본)</b>	정책사업	하천 정비 및 관리
	단위사업	하천 정비 및 관리
	세부사업	지방하천정비사업 (금강권역)(시군)
	통 계 목	자치단체자본보조 (403-01)

##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지방하천의 치수안전성 확보를 위한 하천정비
- 사업 위치 : 충청남도 관내 10시군
- 사업 기간 : 2021. 1. 1. ~ 2021. 12. 31.(중장기 계획사업)
- 예 산 액 : **39,012,690천원(이양재원30,443,300, 도비8,569,390)**
- 사 업 량 : 천안 풍서천 등 17개 지방하천 정비사업
-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시장·군수
- 사업 내용 : 제방·호안 등 치수안전성 확보를 위한 시설 정비
- 지원 근거 : 하천법 59조

### 하천법 제59조(비용부담의 원칙)

하천에 관한 비용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하천에 관한 것은 국고의 부담으로 하고, 지방하천에 관한 것은 해당 시·도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제27조제5항 단서에 따라 시·도지사가 국가하천의 유지·보수를 하는 경우에 필요한 비용은 해당 시·도의 부담으로 한다.

##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						비 고	
산출 기초	■ 지방하천 정비사업(금강권역)(시군자본) ○ 10개 시군 17개소 지방하천 정비사업							
		시군	하천명	계	이양재원	도비	시군비	
		<b>합 계</b>	<b>17개지구</b>	<b>58,483,121</b>	<b>30,443,300</b>	<b>8,569,390</b>	<b>19,470,431</b>	
		천안시	풍서천	2,500,000	1,250,000	375,000	875,000	
		"	지장천(신규)	100,000	50,000	15,000	35,000	
		공주시	용수천	624,300	374,580	74,916	174,804	
		"	대학천	2,000,000	1,000,000	300,000	700,000	
		"	제민천	3,000,000	1,500,000	450,000	1,050,000	
		"	청룡천(신규)	100,000	50,000	15,000	35,000	

	보령시	진죽천	5,500,000	2,750,000	825,000	1,925,000	
	아산시	초사천	9,000,000	4,500,000	1,350,000	3,150,000	
	"	온양천(신규)	100,000	50,000	15,000	35,000	
	논산시	중교천	8,760,600	5,256,750	1,051,350	2,452,500	
	당진시	서원천	4,000,000	2,000,000	600,000	1,400,000	
	금산군	조정천	1,579,000	1,052,359	315,241	211,400	
	"	추풍천	5,500,000	2,750,000	825,000	1,925,000	
	서천군	길산천	493,000	246,500	73,950	172,550	
	홍성군	삼교천	6,826,221	3,413,111	1,023,933	2,389,177	
	예산군	용굴천	7,000,000	3,500,000	1,050,000	2,450,000	
	"	성리천	1,400,000	700,000	210,000	490,000	
총사업비	58,483,121천원[도비 39,012,690천원(이양채원 30,443,300, 도비 8,569,390) 시군비 : 19,470,431천원] 403-01 : 39,012,690천원(도비 1,012,690천원, 지방채 38,000,000천원)						

##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본예산(A)	전년도본예산(B)	증감(A-B)		
계	340,013,000	182,372,700	58,483,121	38,842,000	13,434,690	99,157,179	계속
국 비	77,719,920	77,719,920				-	지방이양
도 비	147,786,800	45,321,234	39,012,690	25,578,000	13,434,690	63,452,876	이양채원,도비
시군비	114,506,280	59,331,546	19,470,431	13,264,000		35,704,303	
기 타							

\* (2013년 이전 착수) 국비 60%, 지방비 40% 적용, (2014년 이후 착수) 국비 50%, 도비 15%, 시군비 35% 적용

\* (2020년 이후) 하천정비사업 지방이양 도비 65%, 시군비 35%

##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A)	집행액(B)	집행잔액(C=A-B)	집행률(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27,606,210	27,594,799	11,411	99.96%	11,411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1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재난안전실	하천과	하천계획팀	조훈구 (행) 2190	이승주 (행) 4704	김원식 (행) 2194



<b>지방하천 정비사업(안성천수계)</b>	정책사업	하천 정비 및 관리
	단위사업	하천 정비 및 관리
	세부사업	지방하천정비사업 (안성천수계)
	통 계 목	시설비 및 부대비 (401-01,401-02,401-03)

##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지방하천의 치수안전성 확보를 위한 하천정비
- 사업 위치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일원
- 사업 기간 : 2021. 1. 1. ~ 2021. 12. 31.(중장기 계획사업)
- 예 산 액 : **2,000,000천 원(도비2,000,000)**
- 사 업 량 : 천안 성환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 사업시행방법 : **직접시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지사
- 사업 내용 : 제방·호안 등 치수안전성 확보를 위한 시설 정비
- 지원 근거 : 하천법 59조

### 하천법 제59조(비용부담의 원칙)

하천에 관한 비용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하천에 관한 것은 국고의 부담으로 하고, 지방하천에 관한 것은 해당 시·도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제27조제5항 단서에 따라 시·도지사가 국가하천의 유지·보수를 하는 경우에 필요한 비용은 해당 시·도의 부담으로 한다.

##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					비 고
산출 기초	■ 지방하천 정비사업(안성천수계) ○ 성환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시군	하천명	계	이양재원	도비	
	합 계	1개지구	2,000,000	-	2,000,000	
	천안시	성환천	2,000,000	-	2,000,000	
총사업비	2,000,000천원(이양재원 0, 도비 2,000,000)					

##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본예산(A)	전년도본예산(B)	증감(A-B)		
계	49,731,000	49,760,000	2,000,000	9,029,000	-7,029,000	-	계속
국 비	20,351,000	20,380,000	-	-	-	-	지방이양
도 비	29,380,000	29,380,000	2,000,000	9,029,000	-7,029,000	-	이양재원,도비
시군비	-	-	-	-	-	-	-
기 타	-	-	-	-	-	-	-

\* (2013년 이전 착수) 국비 60%, 지방비(도비) 40% 적용, (2014년 이후 착수) 국비 50%, 지방비(도비) 50% 적용

\* (2020년 이후) 하천정비사업 지방이양(이양재원+도비 100%)

##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A)	집행액(B)	집행잔액(C=A-B)	집행률(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14,951,567	13,468,707	1,482,861	90.1%	1,482,861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학술용역비사전심사	물품정수취득	홍보물사전심의	공공기관출연금의회의결	신규 행사성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1년(2021~2025)	-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재난안전실	하천과	하천계획팀	조훈구(행) 2190	이승주(행) 4704	김원식(행) 2194

<b>소색골 소하천변 산책로조성(도민참여)</b>	정책사업	하천 정비 및 관리
	단위사업	하천 정비 및 관리
	세부사업	소하천 유지관리 사업
	통 계 목	자치단체자본보조 (403-01)

##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소색골소하천 도심구간에 친수환경을 조성하여 지역주민 친수활동에 기여
- 사업 위치 : 충남 홍성군 홍성읍 소색골 소하천변 일원
- 사업 기간 : 2021. 1. 1. ~ 2021. 12. 31.
- 예 산 액 : **10,000천원**
- 사 업 량 : 산책로조성 및 수목식재
-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홍성군수
- 사업 내용 : 산책로조성 및 수목식재
- 지원 근거 : 소하천정비법 13조

소하천정비법 제13조(비용 보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소하천등 정비 등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관리청에 보조할 수 있다

##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	비 고
산출 기초	■ 소색골 소하천변 산책로조성 ○ 코스모스 4,000㎡, 배롱나무 100주, 이팝나무 100주 식재 = 20,000천원	
총사업비	20,000천원(도비 10,000, 시비 10,000)	

##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본예산(A)	전년도본예산(B)	증감(A-B)		
계	20,000	-	20,000	-	20,000	-	
국 비	-	-	-	-	-	-	
도 비	10,000	-	10,000	-	10,000	-	
시군비	10,000	-	10,000	-	10,000	-	
기 타	-	-	-	-	-	-	

\* 보조율 : 도비 50%, 시군비 50%

##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A)	집행액(B)	집행잔액(C=A-B)	집행률(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	-	-		-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1년 (2021~2025)	-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재난안전실	하천과	하천관리팀	조훈구 (행) 2190	김성환 (행) 4705	문서연 (행) 2195

	정책사업	하천 정비 및 관리
	단위사업	하천 정비 및 관리
	세부사업	소하천 유지관리 사업
	통 계 목	자치단체자본보조 (403-01)

##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홍수피해 및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한 하천환경 조성 등 지역현안사업 추진
- 사업 위치 : 충청남도 관내 소하천
- 사업 기간 : 2021. 1. 1. ~ 2021. 12. 31.
- 예 산 액 : **395,000천원**
- 사 업 량 : 5개 시군 8개 소하천
-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시장·군수
- 사업 내용 : 제방·호안 등 물길의 안정을 위한 시설 및 하천수위의 조절을 위한 시설 등 정비
- 지원근거 : 소하천정비법 제13조

소하천정비법 제13조(비용 보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소하천등 정비 등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관리청에 보조할 수 있다

##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	비 고
산출 기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하천 유지관리(현안사업)</li> <li>○ 5개 시군 8개 소하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천안 3개소 : 도비 255,000 + 시비 255,000 = 510,000</li> <li>· 공주 1개소 : 도비 20,000 + 시비 20,000 = 40,000</li> <li>· 보령 1개소 : 도비 50,000 + 시비 50,000 = 100,000</li> <li>· 당진 2개소 : 도비 50,000 + 시비 50,000 = 100,000</li> <li>· 청양 1개소 : 도비 20,000 + 군비 20,000 = 40,000</li> </ul> </li> </ul>	
총사업비	790,000천원(도비 395,000 시군비 395,000)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본예산(A)	전년도본예산(B)	증감(A-B)		
계	790,000	-	790,000	909,000	△119,000	-	-
국 비	-	-	-	-	-	-	-
도 비	395,000	-	395,000	454,500	△59,500	-	-
시군비	395,000	-	395,000	454,500	△59,500	-	-
기 타	-	-	-	-	-	-	-

\* 보조율 : 도비 50%, 시군비 5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A)	집행액(B)	집행잔액(C=A-B)	집행률(D=B/A)	다음연도 이월액(E=A-B-C)	비 고
2019	-	-	-	-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결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1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재난안전실	하천과	하천관리팀	조훈구 (행) 2190	김성환 (행) 4705	문서연 (행) 2195

	정책사업	하천 정비 및 관리
	단위사업	하천 정비 및 관리
	세부사업	지방하천 유지관리
	통 계 목	자치단체자본보조 (403-01)

##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지방하천의 주요 하천시설물이 적정 기능을 유지하도록 상시 유지보수하여 하천재해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 사업 위치 : 충청남도
- 사업 기간 : 2021. 1. 1. ~ 2021. 12. 31.(매년 상시 추진)
- 예산액 : **1,105,000천원**
- 사업량 : 지방하천 491개소
-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시장·군수
- 사업내용 : 지방하천 상시 유지보수(제방, 수문 등 하천시설물 정비)
- 지원 근거 : 하천법 제27조 5항, 충청남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

### 하천법 제27조(하천관리청의 하천공사 및 유지·보수)

⑤ 하천공사와 하천의 유지·보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천관리청**이 시행한다.

1. 제방(호안 및 배수시설을 포함한다) 2. 저수로 3. 보 4. 1~3호의 시설과 연계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시설(홍수조절지·저류지·수문·선착장 등)

**하천법 제59조(비용부담의 원칙)**하천에 관한 비용은 국가하천에 관한 것은 국고의 부담으로 하고, **지방하천**에 관한 것은 시·도의 부담으로 한다

**충청남도 사무위임조례 2조** 도지사가 관장하는 사무 중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2와 같다.

##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분	산출액	비고
산출기초	<input checked="" type="checkbox"/> 지방하천유지관리 ○ (40,000천원 × 491개 지방하천) × 11.2% ≙ 2,210,000천원	
총사업비	2,210,000천원(도비 1,105,000, 시군비 1,105,000)	

##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본예산(A)	전년도본예산(B)	증감(A-B)		
계	2,210,000	-	2,210,000	2,500,000	△290,000	-	
국 비	-	-	-	-	-	-	
도 비	1,105,000	-	1,105,000	1,250,000	△145,000	-	
시군비	1,105,000	-	1,105,000	1,250,000	△145,000	-	
기 타	-	-	-	-	-	-	

\* 보조율 : 도비 50%, 시군비 50%

##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A)	집행액(B)	집행잔액(C=A-B)	집행률(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1,000,000	1,000,000	-	100%	-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1년 (2021~2025)	-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재난안전실	하천과	하천관리팀	조훈구 (행) 2190	김성환 (행) 4705	가두순 (행) 4724

가 ( )	정책사업	하천 정비 및 관리
	단위사업	하천 정비 및 관리
	세부사업	지방하천 유지관리
	통 계 목	자치단체자본보조 (403-01)

##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제민천변 도심구간에 친수환경을 조성하여 지역주민 친수활동에 기여
- 사업 위치 : 충남 공주시 교동 제민천변 일원
- 사업 기간 : 2021. 1. 1. ~ 2021. 12. 31.
- 예 산 액 : 10,000천원
- 사 업 량 : 산책로 조성 및 창포꽃 식재
-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공주시장
- 사업 내용 : 산책로 조성 및 창포꽃 식재
- 지원 근거 : 하천법 제27조 5항, 충청남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

### 하천법 제27조(하천관리청의 하천공사 및 유지·보수)

⑤ 하천공사와 하천의 유지·보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천관리청**이 시행한다.

1. 제방(호안 및 배수시설을 포함한다) 2. 저수로 3. 보 4. 1~3호의 시설과 연계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시설

**하천법 제59조(비용부담의 원칙)** 하천에 관한 비용은 국가하천에 관한 것은 국고의 부담으로 하고, **지방하천**에 관한 것은 사·도의 부담으로 한다

**충청남도 사무위임조례 2조** 도지사가 관장하는 사무 중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2와 같다.

##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분	산출액	비고
산출 기초	<input checked="" type="checkbox"/> 노랑 창포꽃이 어우러진 제민천 가꾸기 <input type="checkbox"/> 창포꽃 1,000원(1본) * 20,000본 = 20,000천원	
총사업비	20,000천원(도비 10,000, 시비 10,000)	

##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본예산(A)	전년도본예산(B)	증감(A-B)		
계	20,000	-	20,000	-	20,000	-	
국 비	-	-	-	-	-	-	
도 비	10,000	-	10,000	-	10,000	-	
시군비	10,000	-	10,000	-	10,000	-	
기 타	-	-	-	-	-	-	

\* 보조율 : 도비 50%, 시군비 50%

##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A)	집행액(B)	집행잔액(C=A-B)	집행률(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	-	-	-	-	-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1년 (2021~2025)	-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재난안전실	하천과	하천관리팀	조훈구 (행) 2190	김성환 (행) 4705	가두순 (행) 4724

	정책사업	하천 정비 및 관리
	단위사업	하천 정비 및 관리
	세부사업	지방하천 유지관리
	통 계 목	자치단체자본보조 (403-01)

##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주요 하천시설물의 적정 기능을 유지하여 하천재해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 사업 위치 : 충남 공주시 탄천면 중평천 일원
- 사업 기간 : 2021. 1. 1. ~ 2021. 12. 31.
- 예 산 액 : **127,500천원**
- 사 업 량 : 제방정비 및 포장(L=2.5km)
-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공주시장
- 사업 내용 : 제방정비 및 포장(L=2.5km)
- 지원 근거 : 하천법 제27조 5항, 충청남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

### 하천법 제27조(하천관리청의 하천공사 및 유지·보수)

⑤ 하천공사와 하천의 유지·보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천관리청**이 시행한다.

1. 제방(호안 및 배수시설을 포함한다) 2. 저수로 3. 보 4. 1~3호의 시설과 연계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시설

**하천법 제59조(비용부담의 원칙)**하천에 관한 비용은 국가하천에 관한 것은 국고의 부담으로 하고, **지방하천**에 관한 것은 사·도의 부담으로 한다

**충청남도 사무위임조례 2조** 도지사가 관장하는 사무 중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2와 같다.

##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분	산출액	비고
산출 기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평천 제방정비 및 포장</li> <li>○ 제방정비 및 포장(L=2.5km) = 255,000천원</li> </ul>	
총사업비	255,000천원(도비 127,500, 시군비 127,500)	

##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본예산(A)	전년도본예산(B)	증감(A-B)		
계	255,000	-	255,000	-	255,000	-	
국 비	-	-	-	-	-	-	
도 비	127,500	-	127,500	-	127,500	-	
시군비	127,500	-	127,500	-	127,500	-	
기 타	-	-	-	-	-	-	

\* 보조율 : 도비 50%, 시군비 50%

##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A)	집행액(B)	집행잔액(C=A-B)	집행률(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	-	-		-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학술용역비사전심사	물품정수취득	홍보물사전심의	공공기관출연금의회의결	신규 행사성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1년(2021~2025)	-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재난안전실	하천과	하천관리팀	조훈구 (행) 2190	김성환 (행) 4705	가두순 (행) 4724

	정책사업	하천 정비 및 관리
	단위사업	하천 정비 및 관리
	세부사업	지방하천 유지관리
	통 계 목	자치단체자본보조 (403-01)

##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주요 하천시설물의 적정 기능을 유지하여 하천재해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 사업 위치 : 충남 부여군 규암면 지천 일원
- 사업 기간 : 2021. 1. 1. ~ 2021. 12. 31.
- 예 산 액 : **85,000천원**
- 사 업 량 : 제방정비 및 포장(L=1.2km)
-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부여군수
- 사업 내용 : 제방정비 및 포장(L=1.2km)
- 지원 근거 : 하천법 제27조 5항, 충청남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

### 하천법 제27조(하천관리청의 하천공사 및 유지·보수)

⑤ 하천공사와 하천의 유지·보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천관리청**이 시행한다.

1. 제방(호안 및 배수시설을 포함한다) 2. 저수로 3. 보 4. 1~3호의 시설과 연계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시설

**하천법 제59조(비용부담의 원칙)** 하천에 관한 비용은 국가하천에 관한 것은 국고의 부담으로 하고, **지방하천**에 관한 것은 사·도의 부담으로 한다

**충청남도 사무위임조례 2조** 도지사가 관장하는 사무 중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2와 같다.

##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분	산출액	비고
산출 기초	<input checked="" type="checkbox"/> 지천 제방정비 및 포장 <input type="checkbox"/> 제방정비 및 포장(L=1.2km) = 170,000천원	
총사업비	170,000천원(도비 85,000, 시군비 85,000)	

##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본예산(A)	전년도본예산(B)	증감(A-B)		
계	170,000	-	170,000	-	170,000	-	
국 비	-	-	-	-	-	-	
도 비	85,000	-	85,000	-	85,000	-	
시군비	85,000	-	85,000	-	85,000	-	
기 타	-	-	-	-	-	-	

\* 보조율 : 도비 50%, 시군비 50%

##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A)	집행액(B)	집행잔액(C=A-B)	집행률(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	-	-		-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1년 (2021~2025)	-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재난안전실	하천과	하천관리팀	조훈구 (행) 2190	김성환 (행) 4705	가두순 (행) 4724

	정책사업	하천 정비 및 관리
	단위사업	하천 정비 및 관리
	세부사업	지방하천 유지관리
	통 계 목	자치단체자본보조 (403-01)

##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2종 시설물(2년 주기)의 정밀안전점검  
정밀 안전점검 실시로 하천시설물의 정상기능 유지
- 사업 위치 : '시' 지역 내 지방하천
- 사업 기간 : 2021. 1. 1. ~ 2021. 12. 31.(매년 상시 추진)
- 예 산 액 : **640,000천 원**
- 사 업 량 : 수문 및 통문 90개소
-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시장·군수
- 사업 내용 : 수문 및 통문 정밀점검 및 보수·보강(시특법 대상 하천시설 보수 등)
- 지원 근거 : 하천법 제27조 5항, 충청남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

### 하천법 제27조(하천관리청의 하천공사 및 유지·보수)

⑤ 하천공사와 하천의 유지·보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천관리청**이 시행한다.

1. 제방(호안 및 배수시설을 포함한다) 2. 저수로 3. 보 4. 1~3호의 시설과 연계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시설  
(홍수조절지·저류지·수문·선착장 등)

**하천법 제59조(비용부담의 원칙)**하천에 관한 비용은 국가하천에 관한 것은 국고의 부담으로 하고, **지방하천**에 관한 것은 시·도의 부담으로 한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안전점검의 실시)**시설물의 안전과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충청남도 사무위임조례 2조** 도지사가 관장하는 사무 중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2와 같다.

##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	비 고
산출 기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하천정밀점검 및 정비 : 1,280,000천원</li> <li>○ 수문 및 통문 정밀안전점검 11,000천원 × 90개소 = 990,000천원</li> <li>○ 수문 및 통문 보수보강 14,500천원 × 20개소 = 300,000천원</li> </ul>	
총사업비	1,280,000천원(도비 640,000, 시군비 640,000)	

##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본예산(A)	전년도본예산(B)	증감(A-B)		
계	1,280,000	-	1,280,000	1,520,000	△240,000	-	
국 비	-	-	-	-	-	-	
도 비	640,000	-	640,000	760,000	△120,000	-	
시군비	640,000	-	640,000	760,000	△120,000	-	
기 타	-	-	-	-	-	-	

\* 보조율 : 도비 50%, 시군비 50%

##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A)	집행액(B)	집행잔액(C=A-B)	집행률(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1,100,000	1,100,000	-	100	-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학술용역비사전심사	물품정수취득	홍보물사전심의	공공기관출연금의회의결	신규 행사성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1년(2021~2025)	-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재난안전실	하천과	하천관리팀	조훈구 (행) 2190	김성환 (행) 4705	가두순 (행) 4724

	정책사업	하천 정비 및 관리
	단위사업	하천 정비 및 관리
	세부사업	지방하천 유지관리
	통 계 목	자치단체자본보조 (403-01)

##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지방하천 저수로에 쌓인 토사 및 잡목 등 유수 장애물을 일제 정비하여 하천의 정상 기능 유지
- 사업 위치 : 도내 지방하천
- 사업 기간 : 2021. 1. 1. ~ 2021. 12. 31.(매년 상시 추진)
- 예 산 액 : **1,055,000천 원**
- 사 업 량 : 퇴적토 및 잡목제거
-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시장·군수
- 사업 내용 : 퇴적토 및 잡목제거, 저수로 정비
- 지원 근거 : 하천법 제27조 5항, 충청남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

### 하천법 제27조(하천관리청의 하천공사 및 유지·보수)

⑤ 하천공사와 하천의 유지·보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천관리청**이 시행한다.

1. 제방(호안 및 배수시설을 포함한다) 2. 저수로 3. 보 4. 1~3호의 시설과 연계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시설  
(홍수조절지·저류지·수문·선착장 등)

**하천법 제59조(비용부담의 원칙)**하천에 관한 비용은 국가하천에 관한 것은 국고의 부담으로 하고, **지방하천**에 관한 것은 사·도의 부담으로 한다

**충청남도 사무위임조례 2조** 도지사가 관장하는 사무 중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2와 같다.

##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	비 고
산출 기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하도정비 및 관리</li> <li>○ 잡목제거 120,000㎡ × 20,500원 = 2,460,000천원</li> <li>○ 하도준설 194,000㎡ × 5,500원 ≙ 1,060,000천원</li> </ul>	
총사업비	3,516,667천원(소방안전교부세 1,055,000, 시군비 2,461,667 ⇒ 3 : 7)	

##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본예산(A)	전년도본예산(B)	증감(A-B)		
계	3,516,667	-	3,516,667	3,516,667	-	-	
국 비	1,055,000	-	1,055,000	1,055,000	-	-	소방안전교부세
도 비	-	-	-	-	-	-	
시군비	2,461,667	-	2,461,667	2,461,667	-	-	
기 타	-	-	-	-	-	-	

\* 보조율 : 국비(소방안전교부세) 30%, 시군비 70%('18년까지 50:50, '19년부터 30:70)

##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A)	집행액(B)	집행잔액(C=A-B)	집행률(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1,050,000	1,050,000	-	100	-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학술용역비사전심사	물품정수취득	홍보물사전심의	공공기관출연금의회의결	신규 행사성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1년(2021~2025)	-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재난안전실	하천과	하천관리팀	조훈구 (행) 2190	김성환 (행) 4705	가두순 (행) 4724

( )	정책사업	하천 정비 및 관리
	단위사업	하천 정비 및 관리
	세부사업	지방하천 재해예방
	통 계 목	자치단체자본보조 (403-01)

##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지방하천의 수문·통문의 관리에 IoT 기술을 도입, 중앙제어시스템을 구축하여 홍수 발생시 골든타임 내 수문작동으로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 사업 위치 : 충청남도[총 783개소(국가하천 245, 지방하천 538)]
- 사업 기간 : 2021. 1. 1. ~ 2021. 12. 31.
- 예 산 액 : **1,275,000천원**
- 사 업 량 : 수문자동화 31개소
-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시장·군수
- 사업 내용 : 지방하천 수문(통문) 자동화 및 중앙제어시스템 구축
- 지원 근거 : 하천법 제27조 5항, 충청남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

### 하천법 제27조(하천관리청의 하천공사 및 유지·보수)

⑤ 하천공사와 하천의 유지·보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천관리청**이 시행한다.

1. 제방(호안 및 배수시설을 포함한다) 2. 저수로 3. 보 4. 1~3호의 시설과 연계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시설  
(홍수조절지·저류지·수문·선착장 등)

**하천법 제59조(비용부담의 원칙)**하천에 관한 비용은 국가하천에 관한 것은 국고의 부담으로 하고, **지방하천**에 관한 것은 사·도의 부담으로 한다

**충청남도 사무위임조례 2조** 도지사가 관장하는 사무 중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2와 같다.

##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	비 고
산출 기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하천 수문(통문) 자동화 및 중앙제어시스템 구축 : 2,550,000천원</li> <li>○ 수문전동화(전동식 수문권양기) : 30,000천원 × 31개소 = 930,000천원</li> <li>○ 현장제어반, CCTV, 통신선 등 : 53,000천원 × 31개소 ≙ 1,620,000천원</li> </ul>	
총사업비	2,550,000천원(도비 1,275,000, 시군비 1,275,000)	

##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본예산(A)	전년도본예산(B)	증감(A-B)		
계	52,900,000	2,950,000	2,550,000	950,000	1,600,000	47,400,000	
국 비	-	-	-	-	-	-	
도 비	26,450,000	1,950,000	1,275,000	950,000	325,000	23,225,000	
시군비	26,450,000	1,000,000	1,275,000	-	1,275,000	24,175,000	
기 타	-	-	-	-	-	-	

\* 보조율 : 도비 50%, 시군비 50%

##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A)	집행액(B)	집행잔액(C=A-B)	집행률(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300,000	300,000	-	100%	-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학술용역비사전심사	물품정수취득	홍보물사전심의	공공기관출연금의회의결	신규 행사성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1년(2021~2025)	-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재난안전실	하천과	하천관리팀	조훈구 (행) 2190	김성환 (행) 4705	가두순 (행) 4724

	정책사업	하천 정비 및 관리
	단위사업	하천 정비 및 관리
	세부사업	지방하천 재해예방
	통 계 목	자치단체자본보조 (403-01)

##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지방하천 저수로에 쌓인 토사를 우기 전에 제거하는 등 우수 장애물을 일제 정비하여 하천의 정상 기능 유지
- 사업 위치 : 도내 지방하천
- 사업 기간 : 2021. 1. 1. ~ 2021. 12. 31.(매년 상시 추진)
- 예산액 : **1,600,000천원** ('20년 기금으로 편성)
- 사업량 : 퇴적토 준설
-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시장·군수
- 사업내용 : 퇴적토 준설로 저수로 정비
- 지원 근거 : 하천법 제27조 5항, 충청남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

### 하천법 제27조(하천관리청의 하천공사 및 유지·보수)

⑤ 하천공사와 하천의 유지·보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천관리청**이 시행한다.

1. 제방(호안 및 배수시설을 포함한다) 2. 저수로 3. 보 4. 1~3호의 시설과 연계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시설  
(홍수조절지·저류지·수문·선착장 등)

**하천법 제59조(비용부담의 원칙)**하천에 관한 비용은 국가하천에 관한 것은 국고의 부담으로 하고, **지방하천**에 관한 것은 사·도의 부담으로 한다

**충청남도 사무위임조례 2조** 도지사가 관장하는 사무 중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2와 같다.

##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분	산출액	비고
산출 기초	<input checked="" type="checkbox"/> 퇴적토 정비 <input type="checkbox"/> 하도준설 582,000m <sup>3</sup> × 5,500원 ≙ 3,200,000천원	
총사업비	3,200,000천원(도비 1,600,000, 시군비 1,600,000)	

##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본예산(A)	전년도본예산(B)	증감(A-B)		
계	3,200,000	-	3,200,000	-	3,200,000	-	
국 비	-	-	-	-	-	-	
도 비	1,600,000	-	1,600,000	-	1,600,000	-	
시군비	1,600,000	-	1,600,000	-	1,600,000	-	
기 타	-	-	-	-	-	-	

\* 보조율 : 도비 50%, 시군비 50%

##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A)	집행액(B)	집행잔액(C=A-B)	집행률(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1,025,000	1,025,000	-	100	-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학술용역비사전심사	물품정수취득	홍보물사전심의	공공기관출연금의회의결	신규 행사성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1년(2021~2025)	-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재난안전실	하천과	하천관리팀	조훈구(행) 2190	김성환(행) 4705	가두순(행) 4724

•	정책사업	하천 정비 및 관리
	단위사업	하천 정비 및 관리
	세부사업	지방하천재해예방
	통 계 목	자치단체자본보조 (403-01)

##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재해예방을 위한 제방·호안 등 보수정비와 편익증진 도모 및 친수공간 마련을 위한 환경 정비 등 지역현안사업 추진
- 사업 위치 : 충청남도 관내 하천
- 사업 기간 : 2021. 1. 1. ~ 2021. 12. 31.
- 예 산 액 : **1,192,500천원**
- 사 업 량 : 6개 시군 11개 하천
-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시장·군수
- 사업 내용 : 재해예방을 위한 제방·호안·포장·퇴적토 등 보수 및 정비, 친수공간 조성사업 등
- 지원근거 : 하천법 제27조, 충청남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

### 하천법 제27조(하천관리청의 하천공사 및 유지·보수)

⑤ 하천공사와 하천의 유지·보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천관리청이 시행한다.

1. 제방(호안 및 배수시설을 포함한다) 2. 저수로 3. 보 4. 1~3호의 시설과 연계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시설(홍수조 절지·저류지·수문·선착장 등)

하천법 제59조(비용부담의 원칙)하천에 관한 비용은 국가하천에 관한 것은 국고의 부담으로 하고, 지방하천에 관한 것은 사·도의 부담으로 한다

충청남도 사무위임조례 2조 도지사가 관장하는 사무 중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2와 같다.

##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	비 고	
산출 기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하천시설 보수·보강사업(현안사업)</li> <li>○ 5개 시군 11개 하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천안 3개소: 도비 245,000 + 시비 245,000 = 490,000</li> <li>· 공주 2개소: 도비 500,000 + 시비 500,000 = 1,000,000</li> <li>· 아산 2개소: 도비 160,000 + 시비 160,000 = 320,000</li> <li>· 당진 1개소: 도비 42,500 + 시비 42,500 = 85,000</li> <li>· 부여 1개소: 도비 25,000 + 군비 25,000 = 50,000</li> <li>· 서천 2개소: 도비 220,000 + 군비 220,000 = 440,000</li> </ul> </li> </ul>		
	총사업비	2,385,000천원(도비 1,192,500, 시군비 1,192,500)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본예산(A)	전년도본예산(B)	증감(A-B)		
계	2,385,000	-	2,385,000	4,560,000	△2,175,000	-	
국 비	-	-	-	-	-	-	
도 비	1,192,500	-	1,192,500	2,280,000	△1,087,500	-	
시군비	1,192,500	-	1,192,500	2,280,000	△1,087,500	-	
기 타	-	-	-	-	-	-	

\* 보조율 : 도비 50%, 시군비 5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A)	집행액(B)	집행잔액(C=A-B)	집행률(D=B/A)	다음연도 이월액(E=A-B-C)	비 고
2019	2,960,000	2,960,000	-	100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사업심사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1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재난안전실	하천과	하천관리팀	조훈구 (행) 2190	김성환 (행) 4705	가두순 (행) 4724

가 ( )	정책사업	하천 정비 및 관리
	단위사업	하천 정비 및 관리
	세부사업	국가하천유지보수 (금강권역)
	통 계 목	자치단체자본보조 (403-01)

##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국가하천 친수시설의 안정적 유지관리로 재해예방 및 주민 이용 편의 제공
- 사업 위치 : 금강·삽교천 수계 10개 시군(천안·공주·아산·논산·당진시, 금산·부여·서천·청양·예산군)
- 사업 기간 : 2021. 1. 1. ~ 2021. 12. 31.(매년 상시 추진)
- 예 산 액 : 12,000,000천원
- 사 업 량 : 국가하천 7개소 유지보수(연장 235.54km, 고수부지 16.41km) 및 수문자동화
-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시장·군수
- 사업 내용 : 국가하천 시설물 유지보수(대전청 소관)
- 지원 근거 : 하천법 제27조 5항

하천법 제27조(하천관리청의 하천공사 및 유지·보수)

⑤ 국가하천의 유지·보수는 홍수로 인한 재해의 방지와 수자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국가하천의 시설 및 구간을 제외하고 사·도지사가 시행한다.

1. 제방(호안 및 배수시설을 포함한다)
2. 저수로
3. 보

##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	비 고
산출 기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하천 유지보수</li> <li>○ 금강 등 7개 국가하천 유지보수(대전청소관) 1식 = 6,000,000천원</li> <li>○ 금강 등 7개 국가하천 수문자동화(대전청소관) 70개소 = 6,000,000천원</li> </ul>	
총사업비	12,000,000천원(국비 12,000,000)	

##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본예산(A)	전년도본예산(B)	증감(A-B)		
계	12,000,000	-	12,000,000	6,000,000	6,000,000	-	
국 비	12,000,000	-	12,000,000	6,000,000	6,000,000	-	국고
도 비	-	-	-	-	-	-	
시군비	-	--	-	-	-	-	
기 타	-		-	-	-	-	

\* 보조율 : 국비 100%

##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A)	집행액(B)	집행잔액(C=A-B)	집행률(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5,506,000	5,506,000	-	100	-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1년 (2021~2025)	-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재난안전실	하천과	하천관리팀	조훈구 (행) 2190	김성환 (행) 4705	가두순 (행) 4724

가 ( 가 )	정책사업	하천 정비 및 관리
	단위사업	하천 정비 및 관리
	세부사업	국가하천유지보수 (안성천수계)
	통 계 목	자치단체자본보조 (403-01)

##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국가하천 친수시설의 안정적 유지관리로 재해예방 및 주민 이용 편의 제공
- 사업 위치 : 안성천 (천안시, 아산시)
- 사업 기간 : 2021. 1. 1. ~ 2021. 12. 31.(매년 상시 추진)
- 예 산 액 : 100,000천원
- 사 업 량 : 안성천(국가하천) 12.55km
-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시장·군수
- 사업 내용 : 국가하천 시설물 유지보수(서울청 소관)
- 지원 근거 : 하천법 제27조 5항

하천법 제27조(하천관리청의 하천공사 및 유지·보수)

⑤ 국가하천의 유지·보수는 홍수로 인한 재해의 방지와 수자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국가하천의 시설 및 구간을 제외하고 사·도지사가 시행한다.

1. 제방(호안 및 배수시설을 포함한다)
2. 저수로
3. 보

##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	비 고
산출 기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하천 유지보수</li> <li>○ 안성천 수계 유지보수(서울청 소관) 1식 = 100,000천원</li> </ul>	
총사업비	100,000천원(국비 100,000)	

##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본예산(A)	전년도본예산(B)	증감(A-B)		
계	100,000	-	100,000	160,000	△60,000	-	
국 비	100,000	-	100,000	160,000	△60,000	-	국고
도 비	-	-	-	-	-	-	
시군비	-	--	-	-	-	--	
기 타	-		-	-	-		

\* 보조율 : 국비 100%

##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A)	집행액(B)	집행잔액(C=A-B)	집행률(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180,000	180,000	-	100	-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1년 (2021~2025)	-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재난안전실	하천과	하천관리팀	조훈구 (행) 2190	김성환 (행) 4705	가두순 (행) 4724

<b>폐천부지 매각에 따른 감정평가 수수료 등</b>	정책사업	하천 정비 및 관리
	단위사업	하천 정비 및 관리
	세부사업	하천관리실태조사 지원
	통 계 목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08-01)

##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폐천부지 실태조사 및 매각에 따른 측량, 감정평가 수수료 등 지원
- 사업 위치 : 천안시 등 13개 시·군(계룡시, 태안군 제외)
- 사업 기간 : 2021. 1. 1. ~ 12. 31.(연차적 추진)
- 예 산 액 : 42,500천원
- 사 업 량 : 325필지 감정 평가 및 지적 측량 추진
-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13개 시장·군수
- 사업 내용 : 폐천부지 중 농경지 대부자 등 수요자의 요구에 의거 폐천부지 매각에 필요한 감정평가 등에 소요되는 비용지원
- 지원 근거 : 하천법 84조 및 86조

하천법 제84조(폐천부지등의 관리)

①하천관리청은 하천공사 또는 홍수, 그 밖의 자연현상으로 하천의 유로가 변경되어 하천구역에서 제외된 토지(국유 또는 공유인 토지에 한하며, 이하 "폐천부지등"이라 한다)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천부지등의 발생일부터 3년 이내에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발생한 폐천부지등은 치수 및 하천환경보전 등의 목적에 우선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하천법 제86조(폐천부지등에 관한 비용 등)

폐천부지등의 교환·양여에 필요한 비용 또는 그로부터의 수입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행하는 경우에는 국고의, 시·도지사가 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의 부담 또는 수입으로 한다.

##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	비 고
산출 기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폐천부지 매각에 따른 감정평가 수수료 등</li> <li>◦ 총 대상토지 : 일반재산 3,108필지, 3,726천㎡</li> <li>◦ 2021년 사업량 : 일반재산 278필지 감정평가 및 지적측량 추진</li> <li>- 감정평가수수료 : 194필지 × 190천원/건 = 36,700천원</li> <li>- 지적측량수수료 : 84필지 × 286천원/건 = 24,100천원</li> </ul>	
총사업비	60,800천원(도비 42,500, 시군비 18,300 ⇒ 7 : 3 )	

##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본예산(A)	전년도본예산(B)	증감(A-B)		
계	5,000,000	3,551,740	60,800	67,900	-7,100	1,387,460	-
국 비	-	-	-	-	-	-	-
도 비	3,500,000	2,497,500	42,500	47,500	-5,000	960,000	-
시군비	1,500,000	1,054,240	18,300	20,400	-2,100	427,460	-
기 타	-	-	-	-	-	-	-

\* : 70%, 30%

##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A)	집행액(B)	집행잔액(C=A-B)	집행률(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50,000	50,000	-	100%	-	-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
2021년 (2021~2025)	-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재난안전실	하천과	하천행정팀	조훈구 (행) 2190	조의상 (행) 4701	김화수 (행) 4711

	정책사업	하천 정비 및 관리
	단위사업	하천 정비 및 관리
	세부사업	하천관리실태조사 지원
	통 계 목	징수교부금 (308-02)

##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
- 사업 위치 : 15개 시·군
- 사업 기간 : 2021. 1. 1. ~ 2021. 12. 31.(매년 상시 추진)
- 예 산 액 : **350,000천원**
- 사 업 량 : 징수금액의 50%
- 사업시행방법 : 직접시행
- 사업시행주체 : 시장·군수
- 사업 내용 : 하천사용료 부과·징수에 따른 교부금 지급
- 지원근거 : 충청남도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제8조

충청남도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제8조 (징수의 위임)

- ① 도지사는 점용료등의 징수에 관한 업무를 시장·군수에게 위임 할수 있다.
-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점용허가 업무와 점용료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업무를 동시에 위임한 경우에는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시·군에 교부하여야 한다.

##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	비 고
산출 기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부금 350,000 천원</li> <li>- 15개 시·군 하천사용료 징수금 700,000 천원</li> <li>하천사용료 징수금 700,000 천원의 50% = <u>350,000천원</u></li> </ul>	
총사업비	350,000천원(도비 350,000)	

##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본예산(A)	전년도본예산(B)	증감(A-B)		
계	350,000	-	350,000	350,000	-	-	
국 비	-	-	-	-	-	-	
도 비	350,000	-	350,000	350,000	-	-	
시군비	-	-	-	-	-	-	
기 타	-	-	-	-	-	-	

\* 보조율 : 도비 100%

##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A)	집행액(B)	집행잔액(C=A-B)	집행률(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	350,000	291,080	58,920	83.2	-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학술용역비사전심사	물품정수취득	홍보물사전심의	공공기관출연금의회결	신규 행사성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1년(2021~2025)	-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재난안전실	하천과	하천관리팀	조훈구 (행) 2190	김성환 (행) 4705	가두순 (행) 4724

<b>지방하천 편입토지 보상사업</b>	정책사업	하천 정비 및 관리
	단위사업	하천 정비 및 관리
	세부사업	지방하천편입토지 보상
	통 계 목	시설비 및 부대비 (401-01)

##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하천법에 의하여 지방하천에 편입된 사유토지중 보상을 청구한 하천부지에 대한 보상
- 사업 위치 : 지방하천(15개 시군 / 491개 하천)
- 사업 기간 : 2021. 1. 1. ~ 2021. 12. 31.(연차적 추진사업)
- 예산액 : 1,200,000천원
- 사업량 : 지방하천 미불용지 보상 167필지 182천㎡(전체 9,905필지 5,755천㎡)
- 사업시행방법 : 시군 시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지사
- 사업 내용 : 지방하천 편입토지 보상
- 지원 근거 :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하천법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적용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 「하천구역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소멸시효의 만료로 보상청구권이 소멸되어 보상을 받지 못한 때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동법 제4조(보상재원)** 제2조에 따른 보상금은 국가하천의 경우 국고에서, 지방하천(법을 제8338호 하천법 전부개정법을 시행일 전의 지방1급하천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 특별시·광역시·도가 부담한다.

**하천법 제76조(공용부담 등으로 인한 손실보상)** ①제75조에 따른 처분이나 제한으로 손실을 입은 자가 있거나 하천관리청이 시행하는 하천공사로 손실을 입은 자가 있는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이 행한 처분이나 공사로 인한 것은 국고에서, 시·도지사가 행한 처분이나 공사로 인한 것은 해당 시·도에서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 2013.3.23., 2015.8.11., 2017.1.17., 2018.6.8.>

##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분	산출액	비고
산출 기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1년 편입토지 보상(21년도)</li> <li>· 2021년 계획 : 67필지(73천㎡) = 73,000㎡ × 16,500 ≒ 1,200,000천원</li> <li>※ 전체 지방하천 편입토지 보상시행계획</li> <li>- 지방하천 미지급용지 및 특조법 용지 : 9,905필지(5,755천㎡) = 287,179,000천원(추정액)</li> <li>· 2020년 까지 : 266필지(265천㎡) = 10,746,000천원</li> <li>· 2021년 계획 : 67필지( 73천㎡) = 1,200,000천원</li> <li>· 장래 : 9,572필지(5,437천㎡) = 276,733,000천</li> </ul>	
총사업비	1,200,000천원(도비)	

##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본예산(A)	전년도본예산(B)	증감(A-B)		
계	287,179,000	10,746,000	1,200,000	1,500,000	-300,000	276,733,000	-
국 비	-	-	-	-	-	-	-
도 비	287,179,000	10,746,000	1,200,000	1,500,000	-300,000	276,733,000	-
시군비	-	-	-	-	-	-	-
기 타	-	-	-	-	-	-	-

\* : 100%

##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A)	집행액(B)	집행잔액(C=A-B)	집행률(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1,500,000	1,176,100	323,900	78.4%	-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학술용역비사전심사	물품정수취득	홍보물사전심의	공공기관출연금의회의결	신규 행사성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1년(2021~2025)	-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재난안전실	하천과	하천행정팀	조훈구 (행) 2190	조의상 (행) 4701	김화수 (행) 4711

<b>위원회 운영 등</b>	정책사업	하천 정비 및 관리
	단위사업	하천 정비 및 관리
	세부사업	하천안전업무추진
	통 계 목	사무관리비 (201-01)

##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하천과 소관 위원회 심의수당 및 회의자료 관련 비용
- 사업 위치 : 충청남도
- 사업 기간 : 2021. 1. 1. ~ 2021. 12. 31.(연차적 추진)
- 예 산 액 : **26,010천원**
- 사 업 량 : 하천과 소관 위원회 개최 20회(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 광역소하천관리위원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지사
- 사업 내용 : 하천과 소관 위원회 개최, 회의자료 작성 및 구입
- 지원근거 :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광역소하천관리위원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5조

<p>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7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p> <p>충청남도 광역소하천관리위원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5조(수당 및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로 출장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충청남도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p>
---

##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	비 고
산출 기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원회 운영 등 : 26,010천원</li> <li>○ 충청남도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 : 18,010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원회 심의 수당 및 여비 : 100천원×10명×16회=16,000천원</li> <li>· 위원회 회의자료 인쇄 등 : 402천원×5회=2,010천원</li> </ul> </li> <li>○ 충청남도 광역소하천관리위원회 : 8,000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원회 심의 수당 및 여비 : 100천원×8명×10회=8,000천원</li> </ul> </li> </ul>	
총사업비	26,010천원(도비 26,010)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본예산(A)	전년도본예산(B)	증감(A-B)		
계	30,600	-	30,600	30,600	-	-	
국 비	-	-	-	-	-	-	
도 비	30,600	-	30,600	30,600	-	-	
시군비	-	-	-	-	-	-	
기 타	-	-	-	-	-	-	

\* 보조율 : 도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A)	집행액(B)	집행잔액(C=A-B)	집행률(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30,600	30,600	-	100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1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재난안전실	하천과	하천행정팀	조훈구 (행) 2190	조의상 (행) 4701	최지애 (행) 2191

<b>통화금융기관차입금이자상환</b>	정책사업	재무활동(하천과)
	단위사업	보전지출
	세부사업	통화금융기관 차입금이자상환
	통 계 목	통화금융기관 차입금이자상환 (311-02)

##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통화금융기관 차입금 이자상환
- 사업 위치 : 충청남도
- 사업 기간 : 2021. 1. 1. ~ 2035. 12. 31.(신규)
- 예 산 액 : **776,880천원(도비)**
- 사 업 량 : 통화금융기관 차입금 이자상환 1식
- 사업시행방법 : **직접시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지사
- 사업 내용 : 지방채(지방하천정비사업) 이자상환
- 지원 근거 : 지방재정법 11조

### 지방재정법 제11조(지방채의 발행)

제11조(지방채의 발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를 위한 자금 조달에 필요할 때에는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다만, 제5호 및 제6호는 교육감이 발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1. 공유재산의 조성 등 소관 재정투자사업과 그에 직접적으로 수반되는 경비의 충당
2.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

##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분	산 출 액					비 고	
산출 기초	■ 통화금융기관 차입금 이자상환 ○ 2개사업						
	사업명	이율	발행액	'21년도 편성(이자)	비고		
	<b>합 계</b>			<b>51,400,000</b>	<b>776,880</b>		
	지방하천정비사업 (금강권역)	1.52%	25,000,000	380,000	2회추경시 발행 (5년거치10년상환)		
	지방하천정비사업 (안성천수계)	1.52%	4,400,000	66,880			
지방하천정비사업 (안성천수계)	1.50%	22,000,000	330,000	3회추경시 발행 (5년거치10년상환)			
총사업비	446,880천원(도비)						

##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본예산(A)	전년도본예산(B)	증감(A-B)		
계	4,692,240	-	776,880	-	776,880	3,915,360	신규
국 비	-	-	-	-	-	-	-
도 비	4,692,240	-	776,880	-	776,880	3,915,360	-
시군비	-	-	-	-	-	-	-
기 타	-	-	-	-	-	-	-

\* : 100%

##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A)	집행액(B)	집행잔액(C=A-B)	집행률(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	-	-	-	-	-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1년 (2021~2025)	-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재난안전실	하천과	하천계획팀	조훈구 (행) 2190	이승주 (행) 4704	김원식 (행) 2194



## 하천과(특별회계)



## 하 천 과

1. 유구 색동수국정원 조성(균형발전) … 256
2. 백마강 생태공원 조성사업(균형발전) …… 258

( )	정책사업	하천 정비 및 관리
	단위사업	균형발전사업 추진
	세부사업	하천 균형발전사업
	통 계 목	자치단체자본보조 (403-01)

## □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 유구천 도심구간에 친수환경을 조성하여 지역주민 친수활동에 기여
- 사업 위치 : 충남 공주시 유구읍 유구천변 일원
- 사업 기간 : 2021. 1. 1. ~ 2021. 12. 31.
- 예산액 : **432,000천원**
- 사업량 : 조경식재, 저수호안 및 가동보설치 각1식
-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공주시장
- 사업내용 : 조경식재 등 경관개선, 저수호안 및 가동보 설치
- 지원 근거 : 하천법 제27조 5항, 충청남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

<p><b>하천법 제27조(하천관리청의 하천공사 및 유지·보수)</b>          ⑤ 하천공사와 하천의 유지·보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b>하천관리청</b>이 시행한다.          1. 제방(호안 및 배수시설을 포함한다) 2. 저수로 3. 보 4. 1~3호의 시설과 연계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시설          (홍수조절자·저류지·수문·선착장 등)  <b>하천법 제59조(비용부담의 원칙)</b>하천에 관한 비용은 국가하천에 관한 것은 국고의 부담으로 하고, <b>지방하천</b>에 관한 것은 시·도의 부담으로 한다  <b>충청남도 사무위임조례 2조</b> 도지사가 관장하는 사무 중 <b>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2와 같다.</b></p>
---

##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분	산출액	비고
산출 기초	<input checked="" type="checkbox"/> 유구 색동 수국 정원 조성사업 1식 <input type="checkbox"/> 조경식재 등 경관개선 <input type="checkbox"/> 저수호안 및 가동보 설치	
총사업비	864,000천원(도비 432,000, 시군비 432,000)	

##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본예산(A)	전년도본예산(B)	증감(A-B)		
계	1,972,000	-	864,000	-	864,000	1,108,000	
국 비	-	-	-	-	-	-	
도 비	986,000	-	432,000	-	432,000	554,000	
시군비	986,000	-	432,000	-	432,000	554,000	
기 타	-	-	-	-	-	-	

\* 보조율 : 도비 50%, 시군비 50%

##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A)	집행액(B)	집행잔액(C=A-B)	집행률(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	-	-	-	-	-	-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1년 (2021~2025)	-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재난안전실	하천과	하천관리팀	조훈구 (행) 2190	김성환 (행) 4705	가두순 (행) 4724

( )	정책사업	하천 정비 및 관리
	단위사업	균형발전사업 추진
	세부사업	하천 균형발전사업
	통 계 목	자치단체자본보조 (403-01)

## □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 금강 부여읍 구간(백마강)에 친수환경을 조성하여 지역주민 친수활동에 기여
- 사업 위치 : 충남 부여군 부여읍 금강변 일원
- 사업 기간 : 2021. 1. 1. ~ 2021. 12. 31.
- 예 산 액 : 85,000천원
- 사 업 량 : 초화류 식재, 보행로 포장 각 1식
-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부여군수
- 사업 내용 : 초화류 식재, 보행로 포장
- 지원 근거 : 하천법 제27조 5항, 충청남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

<p><b>하천법 제27조(하천관리청의 하천공사 및 유지·보수)</b></p> <p>⑤ 하천공사와 하천의 유지·보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b>하천관리청</b>이 시행한다.</p> <p>1. 제방(호안 및 배수시설을 포함한다) 2. 저수로 3. 보 4. 1~3호의 시설과 연계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시설 (홍수조절지·저류지·수문·선착장 등)</p> <p><b>하천법 제59조(비용부담의 원칙)</b>하천에 관한 비용은 국가하천에 관한 것은 국고의 부담으로 하고, <b>지방하천</b>에 관한 것은 시·도의 부담으로 한다</p> <p><b>충청남도 사무위임조례 2조</b> 도지사가 관장하는 사무 중 <b>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b>는 별표 2와 같다.</p>
--

##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	비 고
산출 기초	<input checked="" type="checkbox"/> 백마강 생태공원 조성사업 1식 <input type="checkbox"/> 초화류 식재 <input type="checkbox"/> 보행로 포장공사	
총사업비	170,000천원(도비 85,000, 시군비 85,000)	

##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본예산(A)	전년도본예산(B)	증감(A-B)		
계	4,000,000	-	170,000	-	170,000	3,830,000	
국 비	-	-	-	-	-	-	
도 비	2,000,000	-	85,000	-	85,000	1,915,000	
시군비	2,000,000	-	85,000	-	85,000	1,915,000	
기 타	-	-	-	-	-	-	

\* 보조율 : 도비 50%, 시군비 50%

##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A)	집행액(B)	집행잔액(C=A-B)	집행률(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	-	-	-	-	-	-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이행(군)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1년 (2021~2025)	-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재난안전실	하천과	하천관리팀	조훈구 (행) 2190	김성환 (행) 4705	가두순 (행) 4724